

전략연구 2022-07

충남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운영방안

전지훈 · 임다정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7
제2장 제도 추진현황과 선행연구 검토	13
1. 기부인식과 이론적 배경	13
2. 고향사랑기부제도 내용과 추진현황	17
3. 선행연구 고찰	25
제3장 일본 고향납세제도 분석	29
1. 일본 고향납세제도 개요와 현황	29
2. 답례품과 기부금 활용	40
3.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사례	48
4. 사례의 시사점	60
제4장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인식과 수요	62
1. 조사개요	62
2. 제도 인식과 기부 의향	64
3. 기부금 활용과 운영	75
4. 인식조사의 시사점	81
제5장 고향사랑기부제도 충남 재정유입효과 검토	83
1. 분석 개요	83
2. 시나리오 도출 및 시나리오별 기부인원·금액 추정	85
3. 시나리오별 재정유입 효과 추정	97
4. 소결	101

제6장 충남의 정책방향과 대응전략	103
1. 충남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과 운영의 정책방향	103
2. 기부금의 운영과 실행기반 구축	108
3. 기부자 확대와 교류사업	116
4. 기부금의 활용 정책사업	125
5. 답례품 운영 체계화	134
제7장 결론	139
1. 연구결과의 요약	139
2. 연구의 의의와 한계	142
참 고 문 헌	143

표 목 차

〈표 1〉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법률안 검토	2
〈표 2〉 연구방법 제시	11
〈표 3〉 일본 고향납세제도 동기의 비교	16
〈표 4〉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18
〈표 5〉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공제 내역	32
〈표 6〉 일본 고향납세 건수 및 납세액 추이	34
〈표 7〉 일본 고향납세의 지방정부 지출 비용	39
〈표 8〉 고향납세 이유 및 응답 비율(복수응답)	40
〈표 9〉 일본 고향납세 유형별 답례품 현황	41
〈표 10〉 일본 고향납세 인기 답례품 목록	42
〈표 11〉 고향납세 재원 활용의 분야(복수응답)	43
〈표 12〉 분야별 고향납세 기부금 활용 현황	44
〈표 13〉 일본 고향납세 지역활성화정책 활용 및 수요 인식	45
〈표 14〉 고향납세 수입에 대한 지출 비율	45
〈표 15〉 교육 및 돌봄 분야	50
〈표 16〉 마을만들기 분야	51
〈표 17〉 문화체육과 역사분야	52
〈표 18〉 나가노현 답례품 선정 기준	54
〈표 19〉 기부금액대별 답례품 부담액 및 답례품 갯수	56
〈표 20〉 시즈오카현의 기부금 활용사업 내용	58
〈표 21〉 시즈오카현의 답례품 현황	59
〈표 22〉 응답자 분포 특성	63
〈표 23〉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인지도 조사	64
〈표 24〉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시행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7
〈표 25〉 고향사랑기부제도 참여 이유	69
〈표 26〉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의향	71
〈표 27〉 기부할 지방자치단체	73
〈표 28〉 충청남도내 시군에 기부하신다면 어떤 시군	74

〈표 29〉 가장 적절한 기부금액	74
〈표 30〉 기부금 답례품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복수 선택)	79
〈표 31〉 충남 및 타시도 출향주민 산정결과(2020년 기준)	88
〈표 32〉 시나리오별 기부인구 추정 : 충남도 재정유입 시나리오(충남 출향민 기준, 2020년) ..	89
〈표 33〉 시나리오별 기부인구 추정 : 충남도 재정유출 시나리오(충남 거주 타시도 출향민 기준, 2020년)	90
〈표 34〉 시나리오별 기부인구 추정 : 충남도 재정유입 시나리오(충남 제외 전국 경제 활동인구 중 충남에 기부의향 있는 인구 기준, 2020년)	92
〈표 35〉 시나리오별 기부인구 추정 : 충남도 재정유출 시나리오(충남 거주 경제활동인구 중 충남 외 시도에 기부의향 있는 인구 기준, 2020년)	93
〈표 36〉 충남도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재원유입 효과(시나리오1-3안)	98
〈표 37〉 충남도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재원유입 효과(시나리오4-6안)	100
〈표 38〉 충청남도 고향사랑기부팀 인력과 업무(안)	109
〈표 39〉 세대별 고향사랑기부제도 홍보 방안 예시	119
〈표 40〉 고향사랑기부제도 통한 관계인구 형성전략	124
〈표 41〉 고향사랑기부금의 정책활용 선호도 비교	126
〈표 42〉 충남 민선8기 도정과제의 기부금 활용사업(안)	127
〈표 43〉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기부자 시각의 절차	132

그림 목 차

[그림 1] 전국 인구감소지역 현황	4
[그림 2] 연구의 흐름도	12
[그림 3] 고향사랑기부제도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개념	21
[그림 4]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의 답례품 업무 절차	23
[그림 5]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추진 절차	32
[그림 6] 고향납세 원스톱특례제도의 순서	33
[그림 7] 일본 고향사랑기부제도 건수 및 납세 현황	35
[그림 8] 일본 기초 및 광역지자체의 기부건수 종합	36
[그림 9] 일본 2019년 고향납세 기부금 정보공개 현황	37
[그림 10] 일본 고향납세 기부자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	38
[그림 11] 일본 고향납세 단계별 지원조직 현황	48
[그림 12] 일본 시즈오카현 고향납세 실적	57
[그림 13] 연령별 고향사랑기부제도 인식 비교	65
[그림 14] 소득에 따른 고향사랑기부제도 인식 정도	66
[그림 15] 연령별 제도 시행 목적의 인식	68
[그림 16] 소득에 따른 기부제도 시행목적의 인식	68
[그림 17] 연령별 고향사랑기부제도 참여 이유	70
[그림 18] 소득에 따른 고향사랑기부제도 참여 이유	70
[그림 19] 연령별 기부 참여 의향	72
[그림 20] 소득에 따른 기부 참여 의식	72
[그림 21] 기부금 활용 사업의 필요성 인식	76
[그림 22] 기부금 활용 사업의 불필요성 인식	77
[그림 23]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 필요 인식	78
[그림 24]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이후의 재원구조 변화	96
[그림 25] 충남 고향사랑기부제도 정책영역 제시	105
[그림 26] 충청남도 고향사랑기부제도 시기별 추진방안	106
[그림 27] 기부에 의한 답례품 제공 역할과 절차	111
[그림 28] 충남 고향사랑기부제도 주체간 협력체계(안)	115
[그림 29] 영월군 고향사랑기부제도 홍보물 사례	117

[그림 30] 일본의 관계인구에 대한 개념도	122
[그림 31] 고향납세자와 지자체의 관계 개념도	123
[그림 32] 일본 고향납세제도와 연계한 GCF 사례	131
[그림 33] 충남 농사랑과 따숨몰 온라인 플랫폼	136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지난 2021년 9월 28일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제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시점이다.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최근 논의된 제도가 아니며 일본에서는 이미 2006년 시행되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안이 2009년 3월 최초 발의되어 20대 국회까지 15건의 법률안이 발의된 많은 고민의 시간을 거쳤다. 또한 2016년 전국 시도의회 협의회는 고향기부제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표하였고 이에 2017년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과제로도 채택되었다. 따라서 본 제도는 10년 이상의 논의결과를 기반으로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국내에서 제도도입을 위한 다양한 주체와 이해관계자들의 10년 넘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충남에서 적실성있는 도입을 위해 본 제도 도입의 과정과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도도입의 과정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된 법률안은 18대 국회에서 2건 20대 국회에서 13건이 발의되었다. 15건 법률안 중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된 새로운 법률제정안은 5건, 기존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한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제안이 10건이다. 이러한 각 법률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법률안 검토

발의자(일시)	법률안	도입목적	주요내용
이주영 의원 (2009.3.1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지역불균형 해소	기초지자체가 지역 밖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로부터 고향투자기부금 모집근거 마련
홍재형 의원 (2011.7.7.)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지역불균형 해소, 수도권 과밀화 해소	비수도권 거주자가 본인인 납부할 소득세액 10% 이내 금액을 본인이 지정하는 지역 세입으로 신청
황주홍 의원 (2016.7.13.)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제정)	농어촌 발전, 국가균형발전	농어촌발전공동모금회를 설립하여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부금품 모집
안호영 의원 (2016.8.1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지방세수증대, 지역균형발전	한지역에 10년이상 거주한 사람 등이 그 지역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고향기부금품으로 접수
전재수 의원 (2017.5.1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지방세수증대 지역균형발전	지방재정자립도가 20%이하 지방자치단체 대상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 모집
홍의락 의원 (2017.6.1.)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비수도권 재정여건 개선, 지역 간 재정 불균형 완화	수도권 거주자가 소득세액의 10%이내를 본인이 지정하는 고향의 세입으로 신청
강효상 의원 (2017.6.27.)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지방재정 확충, 기부문화 활성화	기부자의 출생지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모집하는 기부금품 모집
박덕흠 의원 (2017.8.8.)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지방재정 확충, 지역간 불균형완화	납세자가 지방소득세 30%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때 해당 세입으로 간주
김광림 의원 (2017.8.9.)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애향심 고취, 지방재정 확충	기초지자체는 10년 이상 거주자로부터 기부금을 모집하고 자발적 기탁한 사람에게 특산물 제공
김두관 의원 (2017.9.14.)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지방재정 확충, 지역균형발전	재정자립도 30% 이하 지자체는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연간 3천만원 이하 기부금 모집
이개호 의원 (2017.9.27.)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제정)	기부문화 확산, 지방재정 확충, 국가균형발전	지자체는 해당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고 기부자에게 물품 제공

주승용 의원 (2017.9.29.)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제정)	재정불균형 해소, 지역균형발전	수도권 거주자가 잡부할 소득세 10%한도에서 본인이 지정한 시군 세입으로 이전
이명수 의원 (2017.11.17.)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애항심 고취, 지역재정불균형 완화 지역활성화	대도시로 이전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취득 경우 취득세 일부를 자신 고향에 납부
정인화 의원 (2018.8.27.)	지역균형발전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제정)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지역활성화	지자체는 해당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 기부금 모금하고 기부자들에게 물품 제공
윤영일 의원 (2018.9.13.)	고향발전 기부금법안 (제정)	기부문화 확대, 지역재정불균형 완화 지역균형발전	지자체는 해당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 기부금 모금하고 지역주민 복지확대 용도로 지자체 활용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홍근석 임정빈(2019) 참조

법률안의 도입목적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키워드는 지역불균형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수 증대 및 지방재정 확충을 비롯해 재정불균형 완화와 같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지방재정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도입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 인식적으로는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대의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10년 이상 논의를 통해 구축된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지방재정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확충을 통한 불균형을 완화하고 확보된 재정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전 사회적으로 지역사회 대상 기부문화 확산으로 새로운 재정유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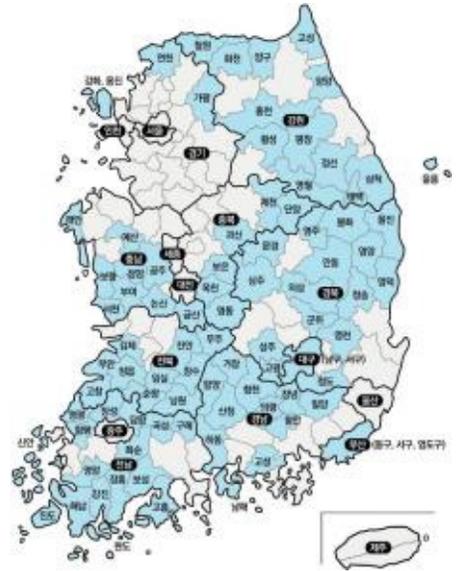
(2) 제도도입의 배경

① 인구규모와 재정 불균형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의 당위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한국사회의 저성장과 함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차원의 인구감소가 본격화된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기인한다는 담론이 일반적이다. 인구감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증가한다는 것이며 이는 다양한 정책적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재정이 감소함에 따라 복지, 환경, 문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하락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악순환 극복의 효과적 수단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본격적인 인구감소시대에 진입하였는데 2021년 출생아와 사망자수에 따른 인구는 8,626명이 감소하였고 사망자수가 증가하는 현상은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 전체 인구중에서 수도권은 46.3%, 비수도권은 53.7% 비중을 차지했지만 2019년 수도권의 총인구는 50.02%로 전체 인구규모의 절반을 넘어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또한 비수도권 인구는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전국 지자체 단위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 고시하였는데 강화, 가평, 연천을 제외하면 모두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그림 1] 전국 인구감소지역 현황

이와 같은 비수도권 중심의 인구감소와 수도권과 불균형은 지방자치단체들간의 재정 불균형을 직접적으로 야기한다. 2020년 예산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격차는 매우 크고, 확대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서울(82.2%)와 전남(26.1%)의 재정자립도는 56%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의 군 지역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는데 82개 군 중에서 95%인 78개 군 재정자립도가 30%미만이다. 따라서 현재의 이와 같은 인구 불균형에서 야기되는 재정불균형의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시급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② 지방재정확충을 통한 지역활성화의 새로운 방향 모색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 수입의 비중이 높을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제도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재정분권으로 세수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8:2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며 지방재정 세입 중 자주재원 비중을 의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추이는 낮을 수 밖에 없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목적에 따라 활용해야 하는 보조금 비중이 높을수록 지방재정의 자율성은 저해되고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은 하락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지방자치제도에서 재정분권의 구조가 변화되지 않는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새로운 제도적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보와 확대는 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활동의 향상을 의미한다. 결국 인구감소의 재정축소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재원창출을 발굴은 침체되어 가는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정책적 시도와 혁신활동의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를 전면으로 개정하고자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재원확보의 방향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3) 충청남도과 시군의 제도 활용 방향

충청남도와 소속 15개 시군은 비수도권지역으로 행정안전부(2021)가 발표한 인구감소 지역에 9개 시군(천안, 아산, 당진, 계룡, 홍성 제외)이 포함되어 있어서 재정확보와 지역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재정위기 극복과 함께 지역과소화로 인해 제기되는 다양한 농어촌 중심의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정부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충청남도는 본 제도의 2023년 1월 도입 이후 직접적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의 보완과 기부를 통해 확충된 세원으로 주민복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 복리 증진사업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간접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는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물 차원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부자에게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여 특산품 구매확대 및 관광객 증가 등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지속적으로 충남 지역의 관계인구로 성장하여 지역활성화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효과 또한 기대한다.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도는 기부금 모금의 주체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인식하는 ‘고향’을 비롯하여 특산물을 포함한 지역사회 특화자원에 대한 인식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효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15개 시군의 상위에 있는 충청남도의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인한 재정확보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방향이 필요한 실정이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본 제도의 실행을 위해 ‘충청남도’의 지역정체성에 대한 확립과 함께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역할과 기능 또한 존재한다는 점에서 충청남도에서 본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전략적 방향과 정책 방안들의 구성 · 도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2) 연구 목적

이러한 연구배경에 따라 본 과제의 연구 목적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에 따른 충청남도의 효과적 제도운영과 재정확충을 위한 거시적, 미시적 정책방향 제시와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충청남도 차원에서 고향사랑기부금 확대를 위한 종합적 정책방향과 추진 로드맵 및 추진체계를 제시한다.
- ② 제도도입에 따른 충청남도에서 답례품을 비롯한 효과적인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확대와 다양한 기부방식의 방안을 도출한다.
- ③ 축적된 기부금 활용을 위한 고향사랑 관점에 부합하는 정책사업을 도출하고 중요도에 따른 추진계획을 제시한다.
- ④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에 따라 충청남도의 재정유입의 규모를 추정하여 제도도입의 효과를 제시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방향

(1) 기초와 광역자치단체의 도입효과 극대화 모색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일본에서 처음 도입에서부터 비수도권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는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과소지역 확대의 대안이자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부자 모집으로 인한 지역간 경쟁을 유인하는 방향도 존재하기 때문에 충청남도를 비롯한 소속 시군의 도입극대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한 도입효과 창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거 일본에서 도입 및 제도 변화의 사례의 검토와 함께 충남의 지역여건 및 특성을 반영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의 철학과 가치를 포함한 종합적 운영방향의 도출을 모색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Bekkers(2007), Shang et al.(2008) 등이 제시하는 기부로 인한 심리적 행복감 및 자기정체성 확보의 동기이론 및 심재승(2017) 등이 제시하는 도시주민들의 지역상생가치접근 등의 이론적 기반에 접근한 정책설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 및 효과적인 피드백을 위한 플랫폼 구축 운영 등의 관리차원의 접근이 함께 수반되는 정책방향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2)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충청남도민 인식 파악

충남에서도 내년부터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탐색적 차원에서 대한 인지도를 비롯하여 제도의 필요성을 포함한 충남도민들의 인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충남지역의 도민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도입 필요성, 예상 기부금액 및 답례품, 기금에 대한 지역활성화 정책의 필요분야 및 기부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사업의 필요요인 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탐색적인 설문조사를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할 충청남도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정책활동에 대한 도출과 함께 기부금 활용의 정책사업을 수요자 관점에서 제시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3)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정책연계와 지역활성화 전략 도출

현재 2023년 1월 제도시행을 앞두고 충청남도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부터 제주도까지 대부분의 광역,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효과적인 제도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남 뿐만 아니라 제도도입을 준비중인 지방(광역)자치단체 정책설계 주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자문 및 상호교류를 통한 다양한 자문 및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한 논의의 확장을 통해 현재 제도 설계중인 시기에서 다양한 방안과 의견들을 종합하고자 한다. 또한 행정안전부 등 정부중심의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활동을 통해 충남에서의 도입효과 극대화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지역 내부 주체들간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외부 주민 및 주체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정책적 차원에서 다양한 충청남도의 자원 및 정책들에 대한 검토를 통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며 유무형의 답례품 구성과 기부자의 접근방식을 비롯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의 다각적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충청남도에서 준비하는 기부자들을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모색하고 문화관광, 농어업, 산업경제, 사회복지, 마을공동체 등의 다양한 분야들과의 협력 모색의 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와 관계된 충청남도 정책관계자 및 공공기관 등의 협력 관계 구축과 정책추진의 설계가 필요하다.

(4) 제도 시행으로 인한 재정유입 규모 추정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시행에 앞서 본 제도로 인한 충청남도 차원의 재정유입이 어느정도 규모일 것인지에 대한 추정을 통한 정책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직 제도 시행 전으로 기부주체 및 기부금액의 실제적인 규모를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추정을 통해 산정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1) 대상 범위

본 연구는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실행되는 충청남도과 소속 시·군을 대상적 범위로 한정하고자 하며 특히 광역자치단체인 충청남도의 시각에서 제도의 효과적 운용과 재정 유입의 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2) 시간 범위

본 연구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법률 제정(2021.9.28.)과 시행(2023.1.1.)의 시점에 부합하는 연구 범위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이에 문헌자료의 검토는 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일본의 선행연구자료를 참조하되 가급적 최근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유의미한 연구범위는 법률 제정 이후 2022년부터 전국적으로 준비중인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정책적 전략방향에 대한 시간적 범위이며 이에 따른 폭넓은 자료수집과 간담회 등의 교류활동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문헌자료의 분석과 함께 관련 제도와 정책분야 전문가 인터뷰 및 타 지방자치단체 정책추진 사례조사의 방법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으로 인한 재원확충의 효과를 추정하여 충청남도에 유입될 재원규모를 살펴볼 것이다.

(1) 문헌 검토 및 사례 연구

문헌검토는 일반적으로 연구주제와 관련된 기존 문헌의 해석과 분석을 의미하며 독립적 연구성으로 활용되거나 연구수행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된다. 문헌검토는 경험적 연구에 기반하여 관련된 가설을 다루는 다수 연과결과들을 종합하여 관심주제의 지식 생태계를

파악하고 주요 이슈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이 기반이 된다. 이러한 문헌검토의 의의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 수행을 위해 문헌조사분석을 수행한다.

첫째, 작년에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검토를 통한 문헌을 통한 제도의 분석을 수행한다. 구체적인 조항에 따른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충청남도의 제도 운영에 대한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둘째, 과거에 제출되었던 관련 법안 내용과 수용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제도의 쟁점부분에 대한 문헌검토를 수행하여 충청남도에서 제정된 제도 수행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한다. 또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과거 수행되었던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의 인식조사 결과를 참고하고자 한다.

셋째, 고향사랑기부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본 사례를 문헌검토를 통해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은 본 제도를 시행한지 10여년의 시간이 지났고 이를 통해 수차례 제도 개선을 통해 활성화를 도모해왔다. 따라서 본 제도를 이제 도입하는 우리나라 상황에 부합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선행 사례로서 일본의 정책과 추진현황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도의 설계 및 실행과 변화, 세수유입과 재정적 효과, 답례품 개발 및 지역활성화 정책 추진 등의 내용을 검토할 것이다.

(2) 양적·질적 조사분석

본 연구는 처음 도입되는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연구로 이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에 대한 탐색적인 파악을 통한 정책지형의 구성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탐색적인 인식파악을 위해 본 연구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샘플링 과정을 거쳐 설문조사를 실행하고 이에 대한 양적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양적분석을 다수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폐쇄적 설문자를 구성하여 응답에 따른 계량분석을 수행함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인식을 탐색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구조화된 설문지에 대해 응답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코딩과정을 거쳐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수행할 것이며 이에 따른 특성별 제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것이다.

질적조사분석은 구성주의 및 해석주의적 접근에 기반하여 경험적인 자료를 토대로 특정 사회 현상 탐구에 대한 맥락적, 해석적 지식을 획득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질적연구에서 사례연구분석의 방법을 활용하는데 이는 사회적 현상을 전체적으로 탐구하고 설명적 질문을 통해 연구를 위한 보다 심층적인 자료들을 습득한다. 특히 사례연구는

사회적 대상의 독특한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관계 자료를 조직화하는 연구방법으로 특정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에 유용하다(Goode & Hatt, 1981).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새로 도입되는 제도 실행을 위한 연구라는 점에서 현재 축적된 통계 및 양적자료가 부족한 특성을 수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격적인 실행은 2023년 1월로 현재는 준비기간이라는 점에서 과거의 자료 축적 활용보다 제도 수행을 설계하는 각 지역의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와 인터뷰를 통한 공유의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을 위해 준비하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연구 및 정책담당자들과의 간담회 및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효과적 제도수행을 위한 의견과 방안을 공유하고자 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추진방안 및 제도 도입이전부터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온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충청남도에서 효과적 정책추진을 위한 심층적인 자료를 습득할 것이다.

(3) 기부금 재정유입 추정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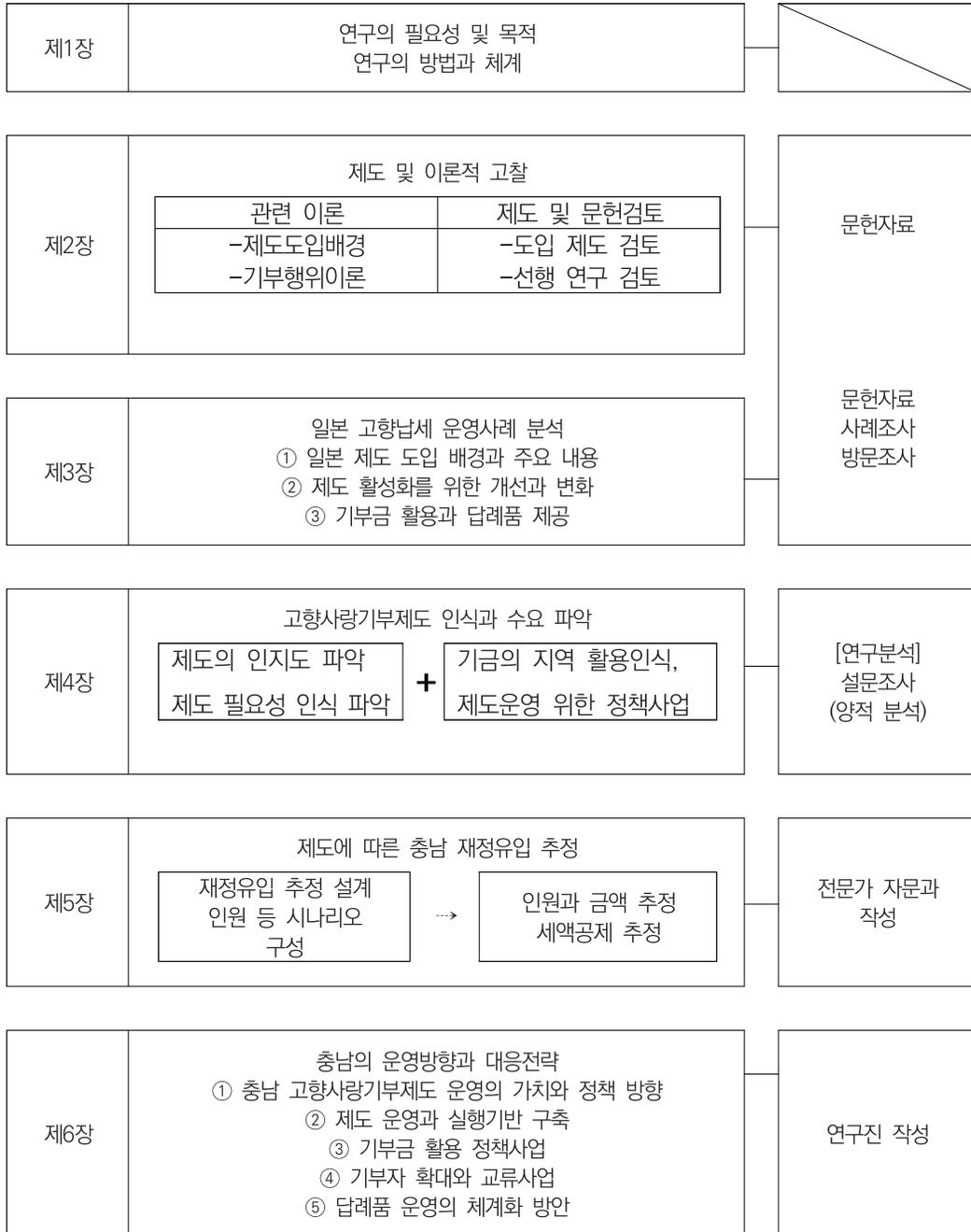
다음으로 충청남도에서 본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실제 유입될 수 있는 기부금인 재정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하지만 아직 본 제도의 시행 전이기 때문에 실제 기부금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으며 통계청 등 기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기부금 유입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

우선 통계청, 국세통계연보 등의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출향주민 및 충남 외 거주하는 인구를 거주인구, 소득세 납부 인구 등의 조건을 달리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기부인원을 산정하고 기부금액을 추정하여 이에 따른 재원확보의 규모를 도출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충청남도의 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규모 및 정부 교부금 규모 추정하여 이를 기부금에서 제외함에 따라 보다 현실적으로 제도도입으로 인한 충청남도의 재정유입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2〉 연구방법 제시

방법	관련 내용	연구 영역
문헌조사	- 제도 및 관련 선행연구들의 검토 - 관련 사례(일본)의 검토와 시사점 분석	이론 및 사례
인터뷰	- 제도도입에 따른 운영, 관리의 정책방안	전략방안 구성
설문조사	- 제도에 대한 충남도민의 인지도 및 인식파악	설문응답 분석
간담회	- 지역별 제도운영 방향 및 실효성 방안 공유	정보수집, 교류
통계조사	- 충남 광역차원의 재원확충 효과 추정	재정유입 분석

다음과 같이 본 연구의 방법과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의 연구 흐름도를 통해 제시한다.



[그림 2] 연구의 흐름도

제2장 제도 추진현황과 선행연구 검토

1. 기부인식과 이론적 배경

1) 기부제도의 인식적 관점

(1) 기부행위의 영향요인

고향사랑기부제도는 단순히 정의하자면 주민들이 태어난 장소 및 관심 있는 지역이나 현재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기부한 경우 조세 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결국 개인이 지역을 선택해 조세를 납부하는 제도가 아니라 지역에 대한 기부를 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조세에서 공제해주는 기부금 제도의 운영원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의 근본적 의미를 고찰하면 중앙중심의 조세재정 배분이 아니라 개인의 자발적 기부라는 행위를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의 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 접근방식인 것이다. 따라서 본 제도의 운영 원리는 기부행위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기부행위의 영향요인을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기부 경험의 유무 및 기부 동기를 중심으로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기부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Clotfelter(1985)는 소득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특히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높은 비율의 기부활동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강철희 외(2017), 조선주 외(2013)는 가구 총수입이나 연간 가구소득 등의 소득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기부금액과 선형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박태규 외(2008)는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기부활동이 증가함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성별로 보면 Mesch(2002)를 비롯해 조선주 외(2013), 강철희 외(2011)의 국내 연구 결과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기부참여와 기부의 규모가 유의한 수준에서 크고 기부행위가 활발하다고 주장하여 여성의 기부참여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연령을

보면 강철희 외(2018), 황창순 외(2002)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정기적인 기부 참여가 활발하며 기부행위가 적극적이지만 일반적으로 75세 이후 기부활동이 감소함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기부경험과 기부행위에 대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Dovidio(1984)와 강철희(2003)은 부모의 기부행위 및 자원봉사의 경험, 가난의 경험 등이 기부자의 기부행위와 규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경험을 가진 사람일수록 기부행위가 많으며 이는 부모의 기부행위와 생활환경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도를 포함한 기부행위는 기부문화의 확산과도 연관관계가 깊으며 사회적 학습행위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기부행위의 동기이론

기부행위의 동기에 대해 살펴본 이론으로는 내적동기와 외적동기로 구분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내적동기는 인간 행위의 내적 요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민으로서 책임감, 종교적 신념, 이타성, 정체성, 동정심, 행복감 등 심리적·인지적 성격의 접근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외적동기는 외부에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의미하며 소득 및 경제적 여건, 세제혜택, 나눔의 전통, 지역문화 등 사회문화적 접근을 의미한다(강철희 외 2011; 신두섭·하혜수, 2017).

내적동기에서 핵심적 요인은 구성원의 사회적 책임감으로 기부자들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사회의 공공가치 실현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기부를 통한 이상향에 동참하는 행위를 의미한다(Bekkers & Wiepking, 2010). 개인의 도덕적 의무의 관점에서 공공선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책임감은 기부 의사 및 기부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이를 방증하고 있다(Cheung & Chan, 2000; Schurt et al., 2010). 이와 함께 심리적 행복감의 연구에서도 기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의 추구는 기부행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동기로 고려되어 왔다. 개인은 이윤추구로 인한 사회적 죄책감을 기부행위를 통해 도덕성 추구의 긍정적 인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부 행위의 지속성이 규명되는 것이다(Bekkers & Wiepking, 2010). 이와 함께 개인이 어떠한 지역사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내적인 정체성 확보와 부각도 중요한 기부행위의 요인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소속되었거나 지지했던 조직과 관련되어 정체성을 형성할 경우 자신의 지역과 조직을 위해 재화를

기부하고 긍정적 홍보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Arnett et al, 2003; Shang et al, 2008). 이러한 부분은 자기정체성의 확보와 자긍심의 효과와 연관된다. 또한 공감과 함께 타인에 대한 동정심도 기부행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지역사회와 이웃의 문제에 대한 인식의 동정심은 기부와 자선행위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강철희 외, 2009).

이와 함께 외적동기는 국가의 기부장려 정책, 금전적 유인효과나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기부문화 등을 거론할 수 있다. 특히 기부정책 중에서 세제혜택의 외부효과가 주어졌을 경우 기부경험이나 기부의향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세제혜택이 없을 때보다 기부규모와 횟수가 확대되는 유인의 효과가 있다. 특히 경제학적으로 세제혜택으로 실제 기부하는 금액이 낮아진다면 세제혜택은 사람들의 기부를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Bekkers & Schuyt, 2005; Karlan & List, 2006). 이에 반해 조선주(2008)는 국내에서 세제혜택은 기부활성화와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나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적동기는 기부행위에 긍정적 효과가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복합적으로 기부동기를 살펴보면, 김주원 외(2008)는 이러한 기부동기를 감성적, 이성적 기부동기와 이타적, 이기적 기부동기로 구분하였는데 자선단체의 개인기부자의 동기 분석결과 경제적 행위가 포함된 이성적 기부동기가 높았지만 내적 동기로는 이타적 동기로 인해 기부행위의 참여하는 인원이 유의하게 많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박종철 외(2017)는 자기중심적 동기와 타인중심적 동기로 기부동기를 구분하였고 자기중심적 기부동기는 심리적 웰빙과 사회적 고양감으로 인해 기부를 하며, 타인중심적 동기는 행복감과 자긍심으로 인해 기부행위가 촉발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일반적인 기부행위에서는 경제적, 이성적, 외적인 기부동기도 영향이 있지만 사회적 자긍심, 행복감, 책임감 등의 심리적이고 내적인 기부동기의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앞서 도입한 일본에서는 본 제도 도입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관점에서 라이프사이클 균형론과 지역사회응원론의 기부동기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재승(2017)은 두 관점을 소개하면서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는데 라이프사이클 균형론적 관점은 과거 지역에서 교육비 등을 투자하여 인재를 육성하였지만 인제는 도시에 취업해서 도시에서 납세하고 있는 상황임을 주장하면서 정작 지방으로는 세금 형태로 재원이 환원되는 것이 미흡하다는 현실적 인식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은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도시에서 일하고 퇴직 후 지역사회로 되돌아간다는 ‘삶의 순환시스템’의 시각에서 지방재정제도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인재를 그동안 육성하여 도시로 공급한 지역사회에 대한 보은의 성격을 갖고 대도시와 지방의 삶의 순환적 관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현재의 개인주민세는 현재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기 때문에 생의 순환시스템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적 비판이 기저에 있다. 납세제도의 개혁이 어렵다는 점에서 고향사랑납세는 납세자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대도시권에서 지방으로 유연한 형태의 세수이전이 진행되는 관점으로 납세자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며 세금 용도에 대한 의식도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를 담보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응원론은 본 제도의 기부행위를 도시주민의 지방주민들에 대한 ‘응원’의 물질적인 표현으로 인식하는 접근을 의미한다. 지역사회에서 활력을 잃고 인구 감소의 과소지역으로 쇠락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 도시주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유인하는 것을 본 제도의 핵심 목적의 하나로 간주한다는 의미이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도는 기부의 지역을 ‘고향’으로 한정하지 않는데, 이는 자원봉사나 과거의 거주를 통해 관심을 갖게 된 지역, 퇴직 후 거주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미래의 고향도 포함하는 인식을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의미에서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의 지역 의미보다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응원하는 기부의 성격과 관점이 강조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을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일본 고향납세제도 동기의 비교

	라이프사이클 균형론	지역사회응원론
고향납세의 성격	인재 육성에 대한 보은 행위	지방 및 지역사회 응원
고향의 정의	사람의 출신 지역	타 지역이나 미래지향의 고향
지역간 경쟁	문제 없음	적극적으로 평가
기부세제와 관계	세제 성격이 강한 기부	기부행위를 강조

자료: 심재승(2017) 참조

결국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일반적인 기부행위의 특성과 기부동기의 관점을 갖고 있지만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따른 지역간 삶의 수준에 대한 격차 확대의 극복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기부동기의 특수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고향사랑기부제도 내용과 추진현황

1)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주요 내용

2009년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최초 발의된 이후 2017년 국정추진과제 채택을 거쳐 2021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현재 거주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예산으로 활용하여 주민 복리증진 활동에 사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기부자는 고향 및 관심 있는 지역을 지원하는 연대감과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등 금전적 혜택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도입의 취지는 비수도권 지역의 고령화 저출산 및 청년 유출에 따른 지역 인구 감소와 심화되는 지역경제 격차의 극복과 함께 열악한 지방재정 보완의 대안으로 기대감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비도시권의 농어촌지역에서 재정보호와 함께 기부자에게 특산물 중심의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홍보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법률은 기부자를 개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기부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의 한도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이나 특수한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고향사랑 기부제도 주요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항목	주요내용	비고
제1조 목적	-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	
제2조 정의	-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해 취득하는 금전	기부자의 거주지의 지방정부 제외
제3조 법률 관계	- 고향사랑기부금의 모금, 접수, 사용 등에 관해 '기부금법' 적용 제외	기부금법 적용 제외
제4조 모금주체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 가능	
제7조 모금방법	-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매체를 통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가능 -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 호별 방문,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권유·독려는 불가능	
제8조 접수 상한액	-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전자 결제·신용카드·전자지급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나 공개된 장소에서 가능하며 단체장 명의의 영수증 발급 - 개인별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	영수증 발급, 개인연간 기부금 500만원 상한액
제9조 답례품	-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답례품)제공 - 답례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관할 구역 내에서 통용될 수 있는 상품권, 유가증권 등을 제공할 수 있음 -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는 제외	답례품 제공 가능
제11조 기금설치	-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기금을 설치해야 함 - 기금은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며 모집·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①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②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③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④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해야 함	의무기금 설치 기금의 목적사용 규정
제12조 제도연구·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함 -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함	
제13조 공개	-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함	
제14조 반환	- 불법·위반한 기부금의 경우 기부자에게 반환하고 교부된 영수증을 회수해야 함	

본 제도는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기부처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핵심부분이라 할 수 있다. 세액공제 비율은 기부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기부액 100%, 10만원 초과 시에는 기부액의 16.5%이다. 이러한 규정에 대해 세액 분담 비율은 국가가 91%, 지방자치단체가 9%이며 지자체 분담으로 인해 수도권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심한 부분이 있었다. 결국 제도상 기부액의 10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10만원 수준의 기부금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부처는 기부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여 기부액의 최대 30%이며 100만원 한도 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규정상 답례품은 관할구역에서 생산하거나 제조된 물품이나 지역 상품권 및 조례로 규정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품목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은 제외하게 된다. 이와 같은 답례품은 기부자의 기부행위 촉진을 유인하기도 하지만 지역상품의 홍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의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제도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본 제도에서 기부금의 모금행위에 대해 개별 방문, 통화 및 서신 송부, 동창회·향우회, 개인 SNS 등 개별 모금활동이 금지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모금행위와 함께 모금한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목적에 부합하도록 활용해야 하는 내용이 법안의 주요한 내용이다. 기금 활용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복지증진사업 시행에 활용해야 함을 법안은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기금활용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지자체, 의회, 민간영역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답례품 품목선정 및 모금행위,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변경,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기부금으로 모인 재원에 대한 활용과 관리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요한 업무로 인식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정부(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과 함께 중앙 차원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TF 구성하여 운영하며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부차원의 홍보 및 국민 소통의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종합정보시스템은 기부자의 기부금 납부와 답례품 선택, 세액공제 원스톱 처리와 같은 기부금 납부 절차의 간소화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수납, 답례품 관리,

세액공제 통보, 기부금 운용결과 공개와 우수사례 홍보 및 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실행의 구체성 마련을 위해 2022년 상반기 중으로 기부절차와 방법 등 법 위임사항을 규정한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을 제정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법적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22년 하반기에 기부금 심의 위원화와 답례품 선정 등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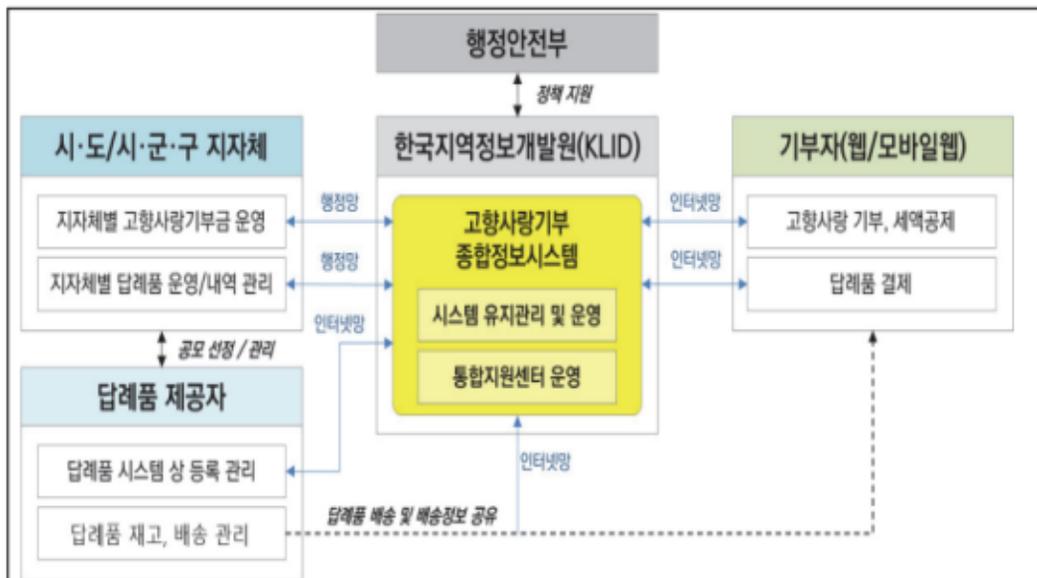
- ① 세수증대: 새로운 세원 발굴로 인한 충남 및 시군의 지방재정 보완이 가능하며 재원을 통해 지역복지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활용 기대
- ② 지역활성화: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 및 지역사회 홍보, 정보제공으로 타 지역주민의 충남 지역 관심 증대와 이를 통한 방문객 유치, 관계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추진 현황

(1) 중앙정부의 추진현황

중앙정부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올해 관련 법률에 대한 시행령을 9월에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하였다. 시행령 제정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을 위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였고 이제는 제도의 운영을 위한 중앙차원의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기부금을 접수하고 답례품과 활용사업을 선택하며 종합적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안전부의 관련 플랫폼 개발과 운영이 가장 주요한 사업 추진현황이라 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한국지역정보 개발원은 고향사랑기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된 정책 추진을 지원할 예정에 있다.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도 운영을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운영은 다음의 기능과 절차를 통해 구성된다.



자료: 행정안전부(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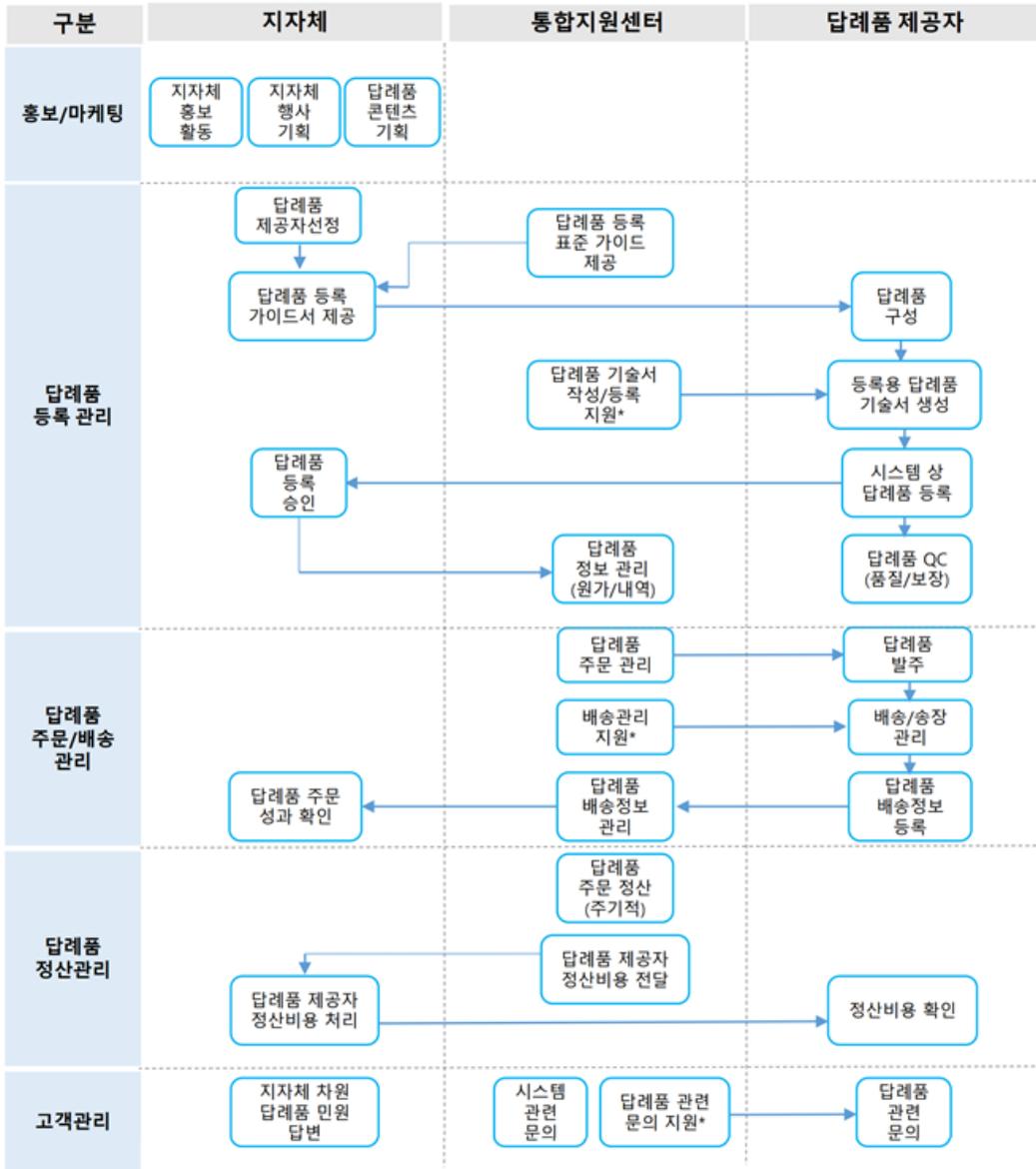
[그림 3] 고향사랑기부제도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개념

이러한 절차에 따르면 제도 이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기부자들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제공한 종합정보시스템의 행정망과 인터넷 망을 통해 기부제도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또한 답례품 제공자(기업)의 경우도 등록관리 및 배송관리 등을 인터넷망을 통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종합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부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종합정보시스템의 서비스를 통해 기부를 하고 이에 따른 세액공제 서비스와 답례품을 신청할 수 있다.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기부금을 수령하고 답례품의 배송 및 운영과 이에 따른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특히 답례품 관련하여 종합정보시스템 안에서는 모두가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추가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서비스 개시 이후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자체 및 기부자, 답례품 제공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수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업무는 기부금의 연말정산 처리 및 운영 간리, 결제 및 지방세수 처리와 운영 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교육기능 수행이 대표적이다(신동철, 2022).

이와 함께 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종합적으로 다음 그림처럼 답례품의 관리를 위해 결재내역, 송정 배송정보 조회, 답례품 소개서 등록, 관련 민원대응, 답례품 홍보행사 정보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그림 4]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의 답례품 업무 절차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의 홍보와 행사를 포함해 답례품 제공자 선정, 답례품 등록 승인 등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추가적으로 통합지원센터는 제도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와 답례품 공급업체에 전달하여 정보시스템에 답례품 등록 및 정산 등의 매뉴얼을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참여자가 고령층도 주요 타겟이라는 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접근에 취약한 디지털 소외계층의 활용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NH농협은행을 대면접수를 수행하는 대표 금융기관으로 지정하여 온라인 플랫폼 활용이 어려운 기부자를 대상으로 기부접수 및 확인, 답례품 신청, 제도에 대한 인식확산과 홍보 등의 사업들을 수행할 것이다.

(2) 충청남도의 추진현황

충청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운영을 위해 2021년 말부터 ‘충청남도 고향사랑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답례품 개발 및 충청남도의 운영전략 등의 추진단 간담회를 3차례 이상 개최하였다. 본 추진단은 행정부지사가 추진단장이며 충청남도 관련부서 과장, 홍보와 마케팅 전문가, 전문가(학계)와 시민단체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충청남도의 고향사랑 추진단은 거시적으로 기획·홍보, 재정, 답례품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다. 가장 많은 충청남도 부서가 포함되어 있는 답례품 분과는 기부자에게 제공할 충남 지역의 답례품을 개발하기 위해 농축수산의 특산물 생산 및 가공업체와 사회적경제, 6차산업, 지역 문화관광상품 및 서비스, 지역 공예품 등의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책지원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들로 구성되어 실행방안과 답례품 구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획홍보분과는 충청남도의 향우회 및 출향민들과 상호교류의 지속적인 방안마련과 함께 충남 차원의 제도 홍보 및 인식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재정분과는 기부로 인해 발생한 기금의 효과적 운용방안을 고민하고 관련 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충청남도 차원의 공식적인 고향사랑 추진단의 운영과 함께 실무적으로는 충청남도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 구성과 운영에 관한 연구용역이 현재 수행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충남의 제도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3. 선행연구 고찰

1)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과 운영 방향

국내에서도 10년 이상 고향사랑기부와 관련된 제도적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되어 제도도입(2021.9) 전에 수행된 제도 도입과 운영 방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홍근석 외(2019)는 ‘기부자 인식조사에 기반한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 연구를 통해 설문조사 방법을 통한 잠재적 기부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제도 도입과 정책목표, 세액공제 비율 등 도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제도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신두섭 외(2017)는 ‘고향발전기부금 제도의 도입가능성 연구’를 통해 본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고향을 둔 국민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지불의사액 추정 및 필요성 등의 인식을 파악하여 제도의 도입방향을 제안하였다. 심재승(2017)은 ‘고향사랑기부제도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활성화의 실행 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제도 도입을 위한 일본 후루사토세 제도와 운영 현황 분석과 이와 연계한 지역활성화 전략을 검토하였고 분석 결과로 정책적 시사점 도출하였다. 신승근(2018)은 ‘지역특성을 살린 충남형 고향사랑 기부제도 활용모델 개발’ 연구를 통해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사례분석 및 지역발전사업과 연계방안을 분석하고 국내 제도도입을 통한 재정분권강화 효과분석과 충남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현우 외(2020)는 ‘자치분권시대의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방안 연구’를 통해 국내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제도도입의 배경을 분석하고 사례로 일본 고향납세제도 사례분석을 수행하여 현재까지 제출된 관련 법안들의 분석을 통한 도입(안) 제시하였다. 염명배(2017)는 ‘우리나라의 고향세제도 법제화 논의와 쟁점사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18대-20대에서 발의된 관련 의원입법안과 문재인 정부 입법안 내용을 분석하고 도입 이후 예상 쟁점을 도출·논의하여 바람직한 제도 도입방안 제안하였다.

2)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 효과 분석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재원창출과 지역 간 재정불균형 해소가 주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실제 제도 도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한 다음의 연구들도 존재한다.

임정빈 외(2017)는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도입효과 분석’ 연구를 통해 본 제도가 실제 지방자치단체 재원확충과 지역간 재정격차 감소 효과 분석하였다. 특히 기부인원 추정과 기부금액 추정에 대해 3가지 시나리오 모형구성을 통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고 시도별 재원확충 금액을 제시하였고 재정불균형 완화 효과를 제시하였다. 홍근석 외(2019)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효과 분석’ 연구를 통해 설문조사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해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고 결과에 따라 3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재정격차 완화효과를 실증적 규명하였다. 이병기 외(2017)는 ‘고향사랑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제도화 방안’ 연구를 통해 고향사랑상품권의 운영원리 분석 및 시나리오 설정에 의한 경제적 효과추정 분석을 수행하였고 제안된 법률(안) 검토를 통해 도입의 시사점 제시하였다.

3) 일본의 고향사랑기부제도 사례 연구

고향사랑기부제도는 2006년 일본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에서 이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제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직접적인 선행 사례인 일본의 제도 도입과 운영 현황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남항우(2017)는 ‘후루사토납세제도에 있어 기부의 기점과 종점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방재정시스템 맥락에서 후루사토납세제도 분석하여 세수이전 시각에서 제도도입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일본 고향납세 실적을 도도부현별 유입액과 유출액을 기준으로 유입단체와 유출단체로 구분하여 실시하였고 재정력과의 상관계수를 도출하였으며 유입은 많은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비해 유출은 소수의 도도부현으로 집중되었다. 염명배(2010)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도입 초창기의 제도적 분석을 수행하였고 2009년 도도부현별 고향납세 수입 내역을 재정자립도와 비교분석하여 고향납세제도가 재정력 격차 해소(형평화 효과)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국중호 외(2021)는

‘일본 고향납세 기부제도의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 연구를 통해 일본 고향납세 기부제도의 성과평가와 10년간 데이터를 활용해 지역간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를 분석하여 재정 재배분 기능의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국중호·염명배(2018)는 일본 고향납세 관련 데이터 및 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인구대비 고향납세 기부자 비율이 증가하면 일인당 기부액도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기부자당 기부액이 증가한다고 하여 일인당 기부액이 크게 늘어나지 못하는 특성을 발견하고 이를 통한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다. 조재욱(2019)은 제도적으로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제시하며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했다. 본 연구는 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라는 정책목표의 실현 가능성,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기반으로 기부금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답례품으로 인한 지역 간 과열 경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간 부패 문제 등을 부작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4) 선행연구 종합과 차별점

우리나라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도입의 논의가 2009년부터 시작되어 이에 대한 제도분석 및 일본사례분석, 재정유입효과의 부분에서 다수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법 제정이 2021년 9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후에 확정된 법률에 의거하여 수행된 선행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그리고 제도 실행은 2023년 1월부터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성공적 제도도입을 방향의 선행연구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본격적 법제정으로 인한 제도시행 전의 법률(안)에 따른 환경조건에서 수행된 연구들과는 차별점을 지니며 현재 제도적 범위 안에서 활용가능한 전략과 정책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지닌다.

또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중앙정부 및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략이나 정책대안을 도출하고 있다. 대부분 일본의 선행 사례들을 중심으로 정책대안이나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청남도 지방자치단체의 시각에서 수행한 선행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시군 차원의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대응 방안과 함께 기초자치단체와 동등한 시각에서 경쟁하는 광역자치체인 충청남도의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 제정으로 인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도를 기반으로 수행된다는 시의성의 측면에서 과거의 다른 선행연구들과 차별점을 가지며, 충청남도에서

새로운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고 도출하는 연구의 목적은 일반적인 제도검토와 사례를 통한 시사점 제안의 선행연구와 차별점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해 일반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방안보다 충청남도의 정책운영 관점에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전략들의 도출에 포커스를 두고자 한다.

제3장 일본 고향납세제도 분석

1. 일본 고향납세제도 개요와 현황

1)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주요 내용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일본에서 2008년 5월부터 시행된 ‘후루사토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본 제도 구상의 발단은 니시카와 후쿠이현지사가 제안하였으며 ‘자신의 성장에 도움을 준 고향에 납세하는 길을 열어 놓는 사고’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후루사토납세제도는 자신이 태어나 성장한 지방자치단체에 보답이나 도움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으며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기부금 공제제도를 확대 개정한 것이다(남향우, 2018). 결국 본 시스템은 과거 지역사회가 어린이 육성에 투자한 비용과 재원들을 현재 도시로부터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형성 근간이 된 지역사회에 대한 ‘보은’의 성격을 갖고 기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인식이 기저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고향이라는 정의에 대해 자신이 태어난 곳을 포함하여 성장한 곳이나 마음의 고향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임의의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었다. 결국 제도 초반의 취지는 퇴색되었다는 비판과 함께 고향을 이용한 측면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부를 활성화하고 공감하는 지역의 사업, 정책에 기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장점도 있다(남향우, 2018).

이와 같은 고향납세에 대한 내용적인 의의와 함께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육동한 외(2017)가 언급한바처럼 일본에서 대도시권과 지방의 세수 격차를 줄이고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의 세수감소와 함께 지역 간 격차 심화로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추진되었다.

이에 2006년 후쿠이현 지사인 니시카와잇세이가 처음으로 ‘고향기부제 공제제도’의 도입을 건의하였으며 후속조치로 2007년 5월 일본총무성에 ‘고향납세연구회’가 설치되었다.

이러한 추진주체의 활동을 통해 2008년 일본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기부금 모집과 이에 따른 세금감면 등 내용을 포함하는 고향납세제도가 제도화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 고향납세제도가 제도 도입초기부터 지지와 긍정적 관심만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일본 도쿄도지사 등 대도시 중심으로 반발의 움직임이 있었고 지역간 갈등과 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적 지점도 있었다. 이처럼 일본에서 고향납세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에서 찬성과 반대의 요지에 대해 이현우 외(2020)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우선 고향납세제도에 대한 찬성의견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① 개인이 태어나고 성장한 고향에 기여하여 애향심 고취와 지역연대의식을 향상
- ② 기부금 방식은 기부자에게 다양한 보상방식 설계가 가능하여 조세저항 불식
- ③ 개인의 기부금 사용 용도를 지역발전에 활용하여 기부자의 자긍심을 확대
- ④ 지방정부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여 지역경제활성화 토대를 마련

이에 반해 고향납세제도에 대한 반대의견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① 고향의 정의의 모호성과 종래적으로 지역주의를 강조하여 갈등과 대립을 초래
- ② 본 제도가 광역자치단체는 소외되고 기초자치단체만 혜택, 적용 여부가 존재
- ③ 현행 서비스 수혜자가 조세를 부담하는 수익자부담원칙 관점의 탈피
- ④ 기부금 수입은 소액규모로 지방세수확보 및 재정격차해소 기여는 과장
- ⑤ 기부자에 답례품제공은 과도한 지자체 경쟁과 기부자 도덕적 해이 우려

이러한 찬반 논쟁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도 제도가 도입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고향납세제도의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후루사토납세에 대해 이현우 외(2020)는 특정 지역에 대한 영향, 환경보전, 봉사활동 등 유의미한 경험을 가진 지역발전에 대해 평소 생각에만 머무르던 기여활동을 통해 개인의 자긍심이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기부금 공헌을 통해 접근하는 미래지향적 주민참여 방식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이는 현재 재정제도에서 납세자의 자율적 의사에 의해 국가에서 지방(고향)으로, 대도시에서 지방 소도시로 세수이전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책임감, 만족도, 관심도 상승을 유인하는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고향을 포함해 도시 주민이 지역성장동력을 상실한 지역과 주민들에게 관심과 지지의 물적, 심적 표현의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기부자의 내적동기를 강조하는 정책수단으로 고려되고 있다.

2) 고향납세의 기부와 신고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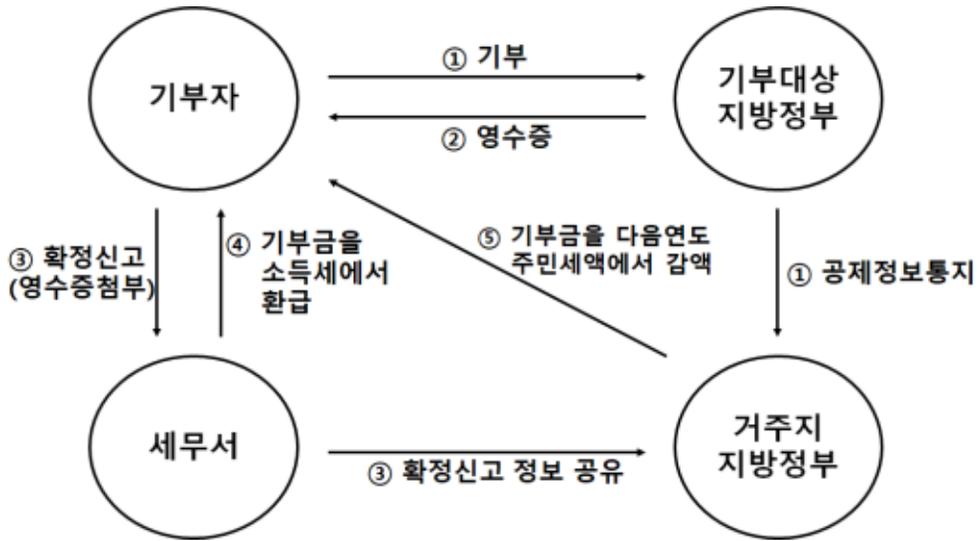
본 제도는 고향 및 지방에 대한 기여의 방법 확대의 인식적 요인과 함께 현실적으로 인구밀집지역인 도시 세수는 높은 반면 지방 세수는 전반적으로 낮은 재정 격차의 확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방편으로 고안되었다. 기본적 운영 체계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납부액의 2,000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일정액의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받는 제도적 틀을 갖추었다. 자기부담금인 2,000엔을 제외한 고향납세분에 대해서 소득세와 개인주민세를 기반으로 공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는 고향납세를 수행한 해당연도 소득세에서 공제가 이루어지는 반면 개인주민세는 고향납세를 수행한 다음 연도의 개인주민세에서 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일본 고향납세의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를 한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주소지의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시 기부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기부증명서, 영수증, 이체 영수증이 필요하다. 세액공제에 대해 소득세분은 다음연도 소득세로부터 공제되며 개인주민세분은 다음 연도의 개인주민세로부터 공제(감액)된다.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기부와 세금감면은 다음의 절차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 ① 주민이 기부할 대상의 지방정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기부한다.
- ② 기부 받은 지방정부는 기부자에게 기부금 수령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자가 거주하는 지방정부에 공제 정보를 통지한다.
- ③ 기부자는 거주지 세무서에 기부금 영수증으로 확정신고 하고, 세무서는 기부자가 거주하는 지방정부에게 확정신고 정보를 공유한다.
- ④ 세무서는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 기부금액 만큼 환급한다.
- ⑤ 기부자가 거주한 지방정부는 연말정산 시 기부금을 다음 연도 주민세액에서 감액시켜 주는 주며 기부 받은 지방정부는 기부자에게 감사의 답례품을 송부한다.

이러한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림 5]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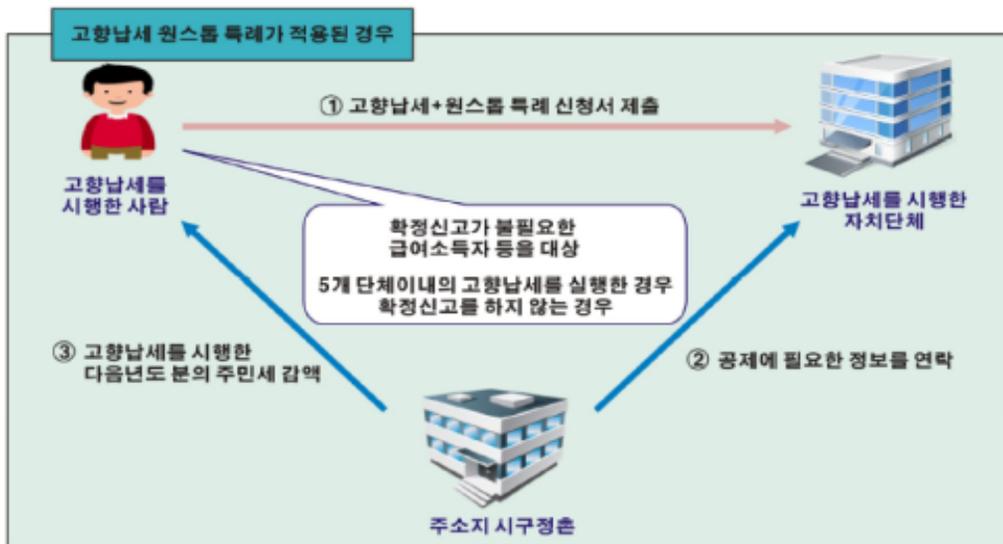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세액공제는 소득세와 주민세의 공제로 구분된다. 납부액의 2,000엔을 제외하고 고향납세 전액이 ①소득세 공제, ②주민세 공제(기본 공제), ③주민세 공제(특례 공제)에서 전액 공제받는 구조이며 소득세와 주민세 기본공제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은 주민세 특례공제에서 전액을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이다.

<표 5>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공제 내역

구성	공제액	공제 여부
최저한도액	2,000엔	공제 외
①소득세 공제액	(기부금-2,000엔)×소득세율	소득공제
②주민세 공제액(기본)	(기부금-2,000엔)×주민세율(10%)	세액공제
③주민세 공제액(특례)	(기부금-2,000엔)×(100%-10%-소득세율)	세액공제

자료: 신승근(2018)

이후 2015년 4월 1일부터 고향납세의 원스톱 특례제도가 마련되었는데, 확정 신고가 불필요한 급여소득자가 5개 이내의 지방자치단체에 고향납세를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확정 신고를 하지 않고 공제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이러한 원스톱특례제도 신청한 경우 소득세로부터 공제가 되지 않고 공제액 전액이 다음 연도의 개인주민세로부터 공제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와 같은 원스톱특례제도가 시작된 2016년부터 기부금에 대한 개인주민세 공제액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2018년 기준 약 110만명으로 전체 기부자의 1/3이상이 본 특례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홍근석 외, 2019).



자료: 육동한 외(2017)

[그림 6] 고향납세 원스톱특례제도의 순서

이러한 일본의 후루사토납세(고향납세)제도의 도입과 실행 대한 다음과 같은 4가지 의의를 거론한다(후지와라, 2008; 국중호·염명배, 2021). 첫째는 고향납세 제도가 기부 대상 선택 시 지출 용도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납세 의식을 높여줄 수 있다. 둘째는 고향납세 기부를 통해 자신이 선택한 지역의 인재육성이나 환경보호 등을 지원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기부를 통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는 고향납세 기부금 유치를 둘러싼 경쟁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충실한 정보제공을 통해 자치의식을 제고시켜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부행위와 세제혜택 등의 절차들을 통해 지역간 재정 형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3)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시기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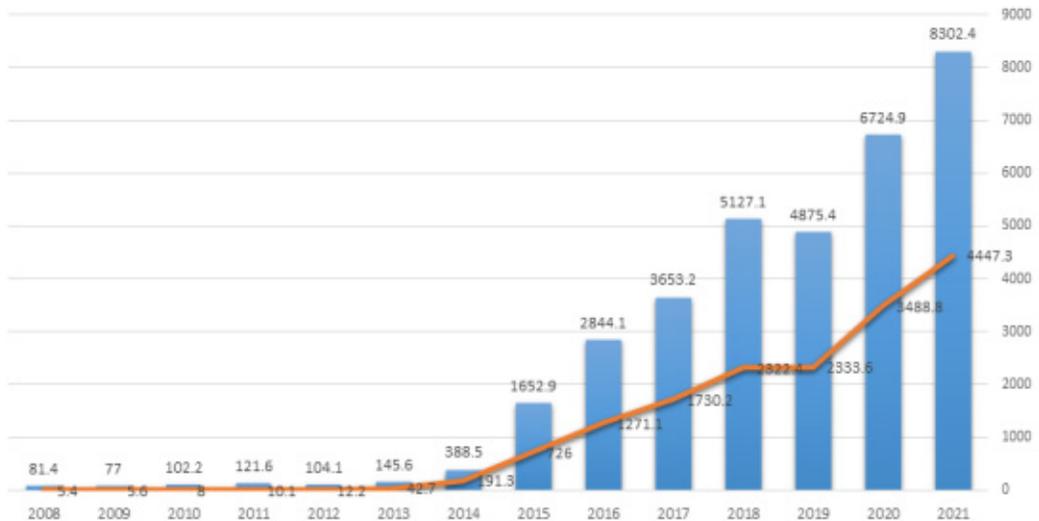
2008년 이후 약 5년간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기부금액이나 건수의 실적에서 전국민적 관심이나 이에 따른 기금실적 확산이 미흡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08년도 실적은 기부행위가 53,671건에 총 납세금액은 81.4억엔 규모였으며 2010년 중반까지는 세계경제위기나 동일본 대지진 등의 영향으로 인해 큰 변화 없이 확대되지 못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제도 도입 초기에는 정책확산이나 효과도출이 미흡하여 개인보다는 법인에 의한 납세가 주로 이루어져서 건당 납세금액이 10만엔 이상으로 비교적 많았다고 볼 수 있다(유학열, 2021).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고향납세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6〉 일본 고향납세 건수 및 납세액 추이

연도	건수	총 납세액 (천엔)	건당금액	연도	건수	총 납세액 (천엔)	건당 금액
2008	53,671	8,139,573	151,656	2015	7,260,093	165,291,021	22,310
2009	56,332	7,697,723	136,649	2016	12,710,780	284,408,875	22,375
2010	79,926	10,217,708	127,839	2017	17,302,000	365,320,000	21,114
2011	100,861	12,162,570	120,587	2018	23,224,000	512,710,000	22,076
2012	122,347	10,410,020	85,086	2019	23,336,077	487,539,000	20,892
2013	427,069	14,563,583	34,101	2020	34,887,898	672,490,000	19,275
2014	1,912,922	38,852,167	20,310	2021	44,473,495	830,241,562	18,668

자료: 유학열(2021)

자료를 보면 2014년이후 기부건수와 총 납세액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2016년부터 또 한번 큰 폭의 확대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와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초기 제도도입을 준비하는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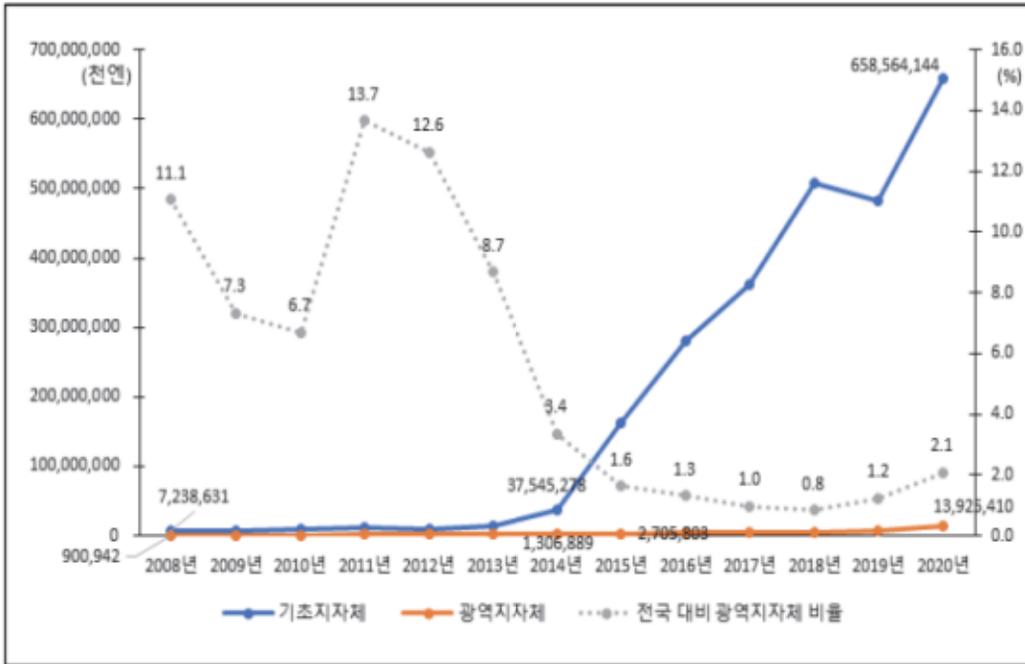


[그림 7] 일본 고향사랑기부제도 건수 및 납세 현황

우선 2008년 제도도입 초기에는 고향의 출향인사나 유명인 중심으로 기부금을 유치하여 다액소건의 형태가 지배적이었으나 2013년 이후에는 일반 도시민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기부자와 기부금액이 증가하였고 소액다건의 기부형태가 자리잡아 갔다. 이러한 변화에는 우선 2013부터 고향납세에 대한 답례품으로 매력적인 지역특산물을 제공하는 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른 답례품의 고품질화가 확산되었다는 점을 거론할 수 있다(유학열, 2021).

종합적인 차원과 함께 일본에서 고향납세에 대한 시정촌과 도도부현 차원을 구분하여 우리나라의 기초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를 추정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신동철(2022)은 일본 총무성을 활용하여 고향납세의 기부건수를 다음과 같음 그리고 같이 비교하였다. 전체 기부건수의 광역지자체는 1-2%로 미미하며 기부금액 또한 2%로 볼 수 있다. 다만 전국대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부건수를 보면 2011년-2012년 사이에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기부행위가 급증하였는데 이는 2011년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으로 광역 차원에서 이에 대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이 급증하였다. 이와 함께 다소 미미하지만 2020년에도 전국대비 광역단위의 기부건수가 상승하였는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평시보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처해야 하는 대규모 재난의 발생시에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기부금이 집중되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에 비해 기부건수나 금액이 크지 않으며 우리나라 또한 제도 시행시 이를 예상할 수 있다.



자료: 신동철(2022) 참조

[그림 8] 일본 기초 및 광역지자체의 기부건수 종합

제도 전체적으로 2015년 이후 기부자의 기부행위가 확대되어 기부횟수 및 기부금의 규모가 대폭 증가하게 된 것은 다음의 제도적 변화들을 거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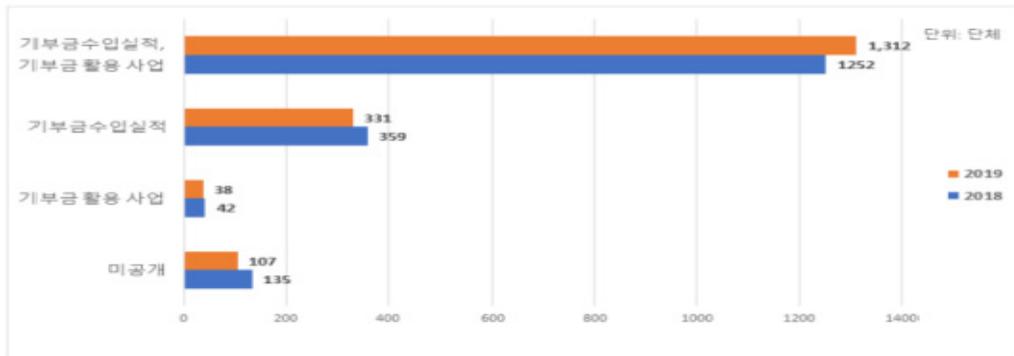
첫째, 일본에서는 징세비 증가와 납세자의 신중한 선택을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납세 제도는 공제적용 최저한도액을 자부담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부담을 제도 도입시에는 당시 소득세 공제 최저한도액과 동일하게 5천엔이었으나 2011년 1월부터 공제적용 최저 한도액을 2천엔으로 인하하였다. 둘째로는 기부금의 공제적용 상한액을 인상하였다. 즉 일본 고향납세제도를 통해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기부금을 2015년 1월 1일부터 개인주민세 소득분 10%에서 20%인상하여 기부 가능액의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셋째는 2015년 4월 1일부터 기부자를 위한 ‘후루사토 원스톱납부특례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존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절차상 기부자는 기부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확정신고까지 보관하다가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는데 기부자가 원스톱특례제도를 통해 기부단체에 신청하면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교환을 통해 세액이 공제되도록 제도를 개정한 것이다. 다만 대상자는 급여소득자나 연금소득자이면서 5개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납세자에 한정된다(남향우, 2017). 이처럼 기부자의 기부절차 불편함을 해소하고 기부행위의 접근성을 높여서 기부행위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특히 이현우 외(2020)는 이전과 달리 2015년 원스톱특례제도의를 도입하면서 고향납세 기부금 규모가 급증하였음을 제시하는데 2015년 기부횟수가 726만건으로 전년도(191.3만건) 대비 3.8배가 급증하였고 2019년도에는 2,333.6만건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기부금도 2014년 388억엔과 비교하여 2015년에는 4.3배가 급증한 1,652.9억엔으로 급증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는 제도적으로 기업도 고향사랑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창생 응원세제’가 도입되었다는 것도 주목할만 하다(심재승, 2017). 과거에는 기업이 지자체에 기부하면 금액의 30% 세액경감효과가 있었지만 지방창생응원세제는 별도의 30%를 세액경감받는 것에서 추가하여 합계 60%의 세액부담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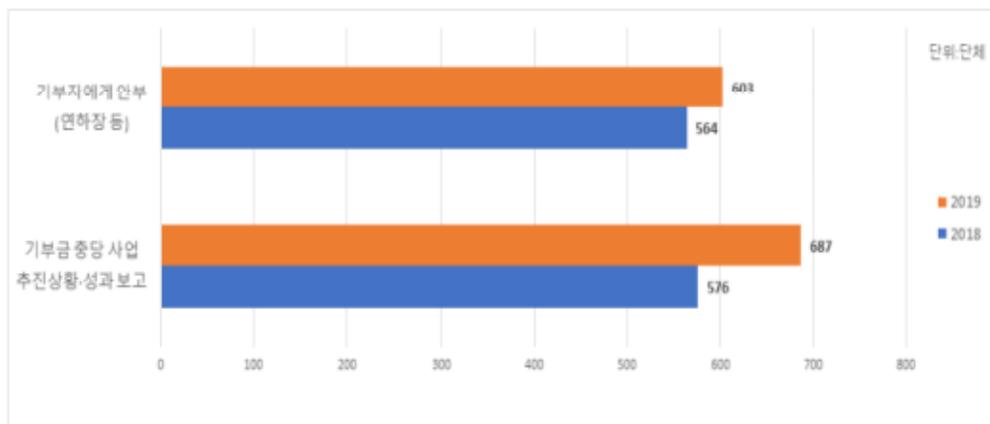
기부금 운영 및 활용에서 기부 촉진을 위해 기부금의 실적과 활용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효과적 활용방안은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기부자들은 자신이 기부한 자원에 대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은 다음의 그림처럼 대부분 고향납세 기부금의 수입실적과 활용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공개하고 있다.



[그림 9] 일본 2019년 고향납세 기부금 정보공개 현황

고향납세 기부금 수입실적과 활용상황을 모두 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312곳으로 전체의 7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기부금에 대해 전혀 공개하지 않는 지방정부도 107곳으로 전체의 6%가 있다. 또한 기부금의 수입실적은 공개하지만 활용사업에 대해서 비공개인 지방자치단체도 331곳으로 18.5%이다. 하지만 미공개인 지방자치단체는 2018년도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직접적으로 기부자에게 기부금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및 성과 보고도 기부자와 기부금액 확대에 매우 중요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고향납세 기부자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0] 일본 고향납세 기부자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

기부금 총당 사업의 추진상황 및 성과 보고는 2019년 687곳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의 38.4%이다. 이는 2018년도에 비해 111개가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연하장 등 기부자에게 안부를 물으며 소통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도 603개로 전체의 33.7%이다. 비록 기부자와 소통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에 못 미치지만 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18년도에 비해 모두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고향납세제도 운영에 대한 지방정부의 비용지출은 대표적으로 답례품 조달 및 배송비, 홍보비, 결제 수수료, 행정사무비 등이 있으며 2019년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7〉 일본 고향납세의 지방정부 지출 비용

지출분야	2019년 비용		2018년 비용
답례품 조달비	137,455	28.2%	35.4%
답례품 배송비	37,677	7.7%	7.7%
홍보비	3,442	0.7%	1%
경제수수료	9,514	2%	2.2%
행정사무비	39,390	8.1%	8.8%
합계	227,479	46.7%	55%

자료: 일본 총무성(2020); 이현우 외(2020) 참조

지방정부에서 기부금 모금을 위해 지출한 항목은 2019년도 기준으로 2,275억엔으로 총 기부금액 대비 46.7%임 2018년도 55%에 비해 감소하였다. 전체 금액에서 고향납세 제도 운영을 위해 활용한 항목을 살펴보면 답례품 조달비가 1,375억엔으로 전체 기부액의 28.2%를 차지하며 행정사무비와 답례품 배송비가 10%내로 활용되고 있어서 답례품 관련 지출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답례품과 기부금 활용

1) 답례품과 지역활성화의 연계

(1) 답례품 개발과 운영

일본에서 시작한 고향납세제도의 독특한 점은 기부자에게 기부처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은 기부 행위 활성화와 기부자 확대에 기여함과 함께 답례품을 지역 특산물 및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결국 심재승(2017)이 지적한 바처럼, 납세자로부터 고향납세의 기부처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답례품이 타 지역보다 매력적이어야 할 것이며 답례품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상품의 질적 제고, 기획 및 판매 역량을 높이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고향납세제도는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답례품을 통해 지방기업을 육성하게 되어 고향납세제도 도입 시 상정하지 않았던 중소기업지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 2016년 실시된 전국설문조사에서 고향납세 기부처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71.8%가 답례품, 20.4%가 지역응원 관점, 16.1%는 자금 사용처의 공감을 거론하고 있다(심재승, 107). 결국 많은 응답자들이 고향납세를 수행하는 이유는 무료로 지역 특산물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재미가 있다는 것이며 또한 이에 따른 세금 공제혜택이 있고 본인의 고향 및 관심지역을 지지할 수 있다는 점이 다수의 선택 이유였다(유학열, 2021).

〈표 8〉 고향납세 이유 및 응답 비율(복수응답)

고향납세 이유	응답비율(%)
실질적으로 무료로 지역 특산품을 받을 수 있음	77.5
매력적인 특전(답례품)이 있음	75.5
세금 공제 혜택	68.5
다양한 답례품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는 재미	65
고향납세가 전국적인 붐과 현상	51
자기의 고향 또는 마음에 다는 지역을 지원	50.5
고향 발전 및 지역활성화에 대한 관심	48

자료: 유학열(2021) 참조

일본 고향납세제도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은 고향납세제도로 인해 기부자들의 기부를 지속유지 및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독특한 특산품이나 문화상품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답례품의 종류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함

- ①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산품 제공형
- ② 관광객과 정주민구 증가를 도모하는 숙박형
- ③ 재난민이나 빈곤층을 돕기 위한 공익성 기부형

특히 2008년 고향납세제도 시행초기에는 농수산물 등 고향 특산품을 주는 일회성 답례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소비 연속성을 지향하는 숙박상품 제공이나 고향주식 제공 등으로 해당 자치단체 방문을 통해 거주를 지향할 수 있는 관계인구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답례품 제공으로 변화하는 추세이기도 하다. 세 번째인 공익성 기부형의 기부형태는 도시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자치단체 중에서 특산품을 제공하지 않고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물품제공 형태의 답례행위를 의미하는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 고향납세에 대한 답례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9〉 일본 고향납세 유형별 답례품 현황

유형	답례품(종류수)
농수산물 식품류	육류(57,755), 곡물류(36,422), 과일류(30,199), 해산물류(39,297), 채소류(16,099), 주류(27,833), 음료류(23,410), 과자류(28,171), 조미료(13,013)
여행	숙박권(9,454), 레저이용권(20,964)
특산품	공예품(49,595)
일용품	주방육실용품, 문방구, 서적, 그림사진 등(93,445)
기타	감사장, 인증서, 회원증 등(495)

자료: 일본 고향납세 포털사이트; 유학열(2021) 참조.

살펴보면 농수산물과 식품류가 가장 많은 종류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일용품이나 공예품도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숙박권등의 여행 레저이용권은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답례품 중에서 인기 있는 답례품 또한 지역 농수산물의 특산물이며 이는 다음 표와 같다. 일본 고향납세 답례품 중에서 인기 품목은 쇠고기, 햄버거, 가리비 등 지역의 농수특산물 및 가공품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일본 고향납세 인기 답례품 목록

순위	지역	답례품	용량
1	홋카이도 몬베츠시	북해도 오후츠크산 가리비	1kg
2	사가현 가미미네초	사가현 와규(쇠고기)	1.6kg
3	후쿠오카현 이이츠키스	후쿠오카현 햄버거	140g×20개
4	오사카후 이즈미시노시	우사카부 와규(쇠고기)	1.8kg
5	사가현 우레시노시	사가현 와규(쇠고기)	400g
6	홋카이도 시라누카초	북해도 연어알	450g
7	사가현 가미미네초	사가현 사가미노리 쌀	17kg
8	홋카이도 스텝초	북해도 연어알	340g
9	미야자키시 고바야시시	미야자키현 돼지고기 햄버거	4.4kg+10개
10	홋카이도 네무로시	북해도 계	1.5kg

자료: 유학열(2021) 참조

하지만 이러한 고향납세의 답례품 제공은 지방자치단체들간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수반하기도 하였다. 2016년 일본 총무성 조사에 의하면 총 기부금액 1,653억엔 중에서 조달비용을 비롯한 답례품 관련 비용으로 47.9%가 지출되고 있어서 기부금의 절반 정도만이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총무성은 2016년 4월 고향납세제도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 자숙과 양식 있는 대응을 요구하였고 2017년도에는 답례품 기준을 기부금의 30% 이내로 할 것을 규정하였고 환금성 높은 상품권, 전자제품 제공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였다(남황우, 2017; 이현우 외 2020).

(2) 기부금 활용 운영 현황

고향납세와 같은 기부제도는 기부금의 확보와 함께 기부금의 활용방안이 지속가능한 기부문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이라 할 수 있다.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액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크기 때문이다.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의 경우에도 고향납세 제도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97.1%인 1,736개 지자체가 고향납세자가 납세 재원의 사용처를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선택 불가능한 지방자치단체는 52개에 불과하다(유학열, 20201). 이러한 고향납세 재원활용의 분야는 아래 표처럼 매우 다양하다.

〈표 11〉 고향납세 재원 활용의 분야(복수응답)

활용 분야	지방자치단체수	비율(%)
건강, 의료, 복지 지원	1,414	79.1
교육, 인재 양성	1,393	77.9
아동, 보육 지원	1,351	75.6
지역 및 산업 진흥	1,285	71.9
환경 및 위생 분야	1,205	67.2
문화 및 스포츠 지원	1,156	64.7
마을만들기와 시민활동 지원	1,107	61.9
관광, 지역교류, 정주촉진 활동	1,053	58.9
안전, 방재, 지역안심	812	45.4
재해지원 및 복구 활동	296	16.6

자료: 유학열(2021)

우선 지역사회의 복지, 건강, 의료 부분에 고향납세 재원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79.1%에 해당하는 1,414개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교육과 인재육성 지원의 분야가 1,393개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고향납세 재원의 활용은 지역사회의 복지, 교육 등의 사회정책지원의 분야에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 산업, 환경,

문화 및 지역환경 분야의 주로 지역주민 삶의 질과 밀접한 정책영역지원에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장 많은 기금 활용분야인 보육 및 교육, 역사문화, 복지 부분에서 활용되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표와 같다. 지역사회 학교 환경개선 및 취약계층 교육을 위한 사업운영이나 전통문화 진흥 및 계승 사업지원 등 지역의 복지활동, 문화 정체성 확립과 같은 사업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표 12〉 분야별 고향납세 기부금 활용 현황

영역	사업내용
보육, 교육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고등학교 환경정비, 공공학원 개설, 드론 및 pc지원 - 무료 보육원 설치, 지역 중학생 국제교류 사업 지원, 지역관광 인재 육성 - 아이 육아용품 세트 지원, 보육원의 어린이 영어 교육 강화, 지역초등학교 책 기부, 차량 이동식 도서관 설치 지원
역사, 문화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중요문화재 수리 보수 지원 - 지역 전통문화축제 비용지원 및 납세자 축제 초청 - 지역 전통건물보존 정비사업 지원 및 인력 육성 사업 - 역사자원 활용한 지역만들기 사업 지원 - 지역 전통 예능 및 기능과 문화 계승 사업 지원 - 지역 아동 교향악단 구성 및 운영 지원
복지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아동보호시설 퇴소자의 생활준비금 지원 - 지역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배달식)지원 - 산간마을 고령자 위한 교통수단 확보 지원(무료 이동 서비스 등) - 폐교시설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 쉼터 시설 조성 지원

자료: 유학열(2021) 재구성

이와 함께 신동철(2022)는 2021년 기준 일본의 각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고향납세로 인한 기부금에 대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업수행 여부와 각 순위별 수요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우선 일본 광역자치단체들은 현재 고향납세를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교육, 인재 양성 부문과 의료·복지·건강분야를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스포츠 및 문화, 육아와 돌봄 영역의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해지원 등의 분야는 가장 활용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실제 기부금 활용의 정책수요도 의료·복지·건강분야가 1순위인 지방자치단체가 22곳으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 교육과

인재양성분야이다. 반면에 재해복구 지원은 현재 기부금으로 활용도가 낮지만 정책수요는 높다고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한 고향납세 기부금 활용이 높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표 13〉 일본 고향납세 지역활성화정책 활용 및 수요 인식

사업 구분	지자체수	정책수요(지자체수)		
		1순위	2순위	3순위
마을만들기, 시민활동	20	1	1	3
스포츠, 문화	29	1	8	2
의료, 복지, 건강	32	22	5	1
환경, 위생	28	0	4	5
교육, 인재양성	35	5	9	9
육아, 돌봄	29	1	5	6
지역 및 산업발전	28	2	3	4
관광, 교류, 정주 촉진	26	1	3	2
안심, 안전, 방재	26	1	1	1
재해복구, 지원	17	5	3	0

*복수응답으로 취합
자료: 산동철(2022)

이와함께 홍근석 외(2019)의 연구에서는 2017년 기준 고향납세 기부제도 운영을 위해 소요된 경비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표를 제시하였다.

〈표 14〉 고향납세 수입에 대한 지출 비율

구분	금액(백만엔)	비율(%)*
답례품 조달 관련 비용	140,615	38.5
답례품 송부 관련 비용	24,098	6.6
홍보 관련 비용	5,570	1.5
기부금, 답례품 결제 등 관련비용	7,752	2.1
기타 사무비용	24,671	6.8
합계	202,707	55.5

*비율은 총 기부금 대비 사용비율을 의미함
자료: 홍근석 외(2019)

위 표를 보면 전체 기부금에서 고향납세 제도 운영을 위해 총 55%정도의 재원이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 답례품 조달 관련비용이 38.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송부 및 사무비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고향납세제도에서 답례품이 매력적인 부분이지만 이에 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비중 또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고향납세제도와 크라우드펀딩 연계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단순한 기부행위에서 나아가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하는 필요한 사업에 기부를 하면 기존의 고향납세제도와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GCF(Government Crowd Funding)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 고향납세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답례품에 대한 경쟁이 과열되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요에 부합하는 답례품을 마련하고 제공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부작용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고향납세와 연계한 GCF 운영이 확산되었는데 GCF는 답례품에 좌우되지 않고 기부금 사용처 및 사업활동에 공감하는 사람들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고향납세제도의 의의에 보다 부합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GCF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목표금액을 설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크라우드 펀딩의 참여자들은 고향납세와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며 일부 사업에 해당해서는 고향납세 제도에서 운영하는 답례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사업도 일부 있다. 이러한 GCF와 고향납세제도의 연계는 실제 지역활성화와 문제해결을 위해 기부자들이 다양한 사업들의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답례품에 치우친 고향납세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고향납세의 근본적인 목적인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부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며 기부제도를 유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GCF가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자 일본 총무성은 GCF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였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고향창업가 지원 프로젝트와 고향이주교류촉진 프로젝트를 거론할 수 있다(홍근석 외, 2019 참조).

우선 고향창업가 지원 프로젝트는 지역 창업지원촉진을 위한 지역 창업가 사업설립 초기자금 제공을 GCF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고향납세와 GCF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면 총무성은 본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특별고부세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지원정책을 수행한다. 지역에 창업을 준비하는 창업가의 사업내용을 공개하여 기부자(고향미래투자가로 명명)가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이를 선택하여 기부하도록 한다. 창업가는 창업활동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보고를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포털 웹사이트에 기부금에 대한 활용상황을 공개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정부지원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창업가 초기투자비용(시설정비비, 기계장치비, 비품비)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재원은 고향납세 재원 보조금액을 상회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고향이주 교류촉진 프로젝트는 고향납세제도가 기부만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지역교류를 통한 관계인구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미래에 기부자들이 지역에 이주·정주로 연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GCF를 통해 지역 이주 및 정주에 공감하는 사람들로부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이들의 이주와 정주에 필요한 주택, 상담, 정보제공, 정착을 위한 경비지원 등을 지원하며 총무성의 경우 본 사업 중 이주정주대책 활동의 필요경비에 대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고향납세와 연계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GCF 도입에 대해 현지에서는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35개 도도부현중에서 24개(68.6%)는 실시하고 있으며 미실시는 11개(31.4%)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GCF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답례품을 제공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기부에서 지역활성화의 정책과 사업내용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신동철, 2022).

3.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사례

1)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

(1) 고향납세 운영 위한 민관협력

일본에서 고향납세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도부현 및 시구정촌에서는 고향세 유치를 위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 활용에 나서고 있다. 특히 고향납세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공 및 민간의 온라인 포털사이트를 활용하여 실행력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일본 고향납세 홍보 전문사이트가 민간중심으로 구축운영되거나 아예 고향납세 관련 홍보 및 유치부터 답례품 배송을 포함한 모든 과정을 대행하는 전문기획사도 출현하는 등의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육동한 외, 2017).



자료: 육동한 외(2017)

[그림 11] 일본 고향납세 단계별 지원조직 현황

위 그림처럼 일본 고향납세의 각 단계별로 실행이 필요한 부분에 중간지원조직들의 역할이 있으며 이를 수행하는 조직들도 매우 상이한데 민관협력의 정도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사이넥스크(우리마을 고향납세)와 SB플레이즈(사토후루)의 경우 일본 지방 자치단체들과 협약을 체결하여 고향납세의 전 과정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이를 통해 고향 납세의 일정 비율 수수료를 받아 운영되는 구조를 보여준다. 이와 달리 부분적으로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로 트러스트뱅크(후루사토초이스), 라쿠텐, 아이모바일(후루나비) 등은 포털 사이트로서 홍보 및 신청자의 수납 대항까지도 수행하고 수익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월 및 연간 단위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관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지방 자치단체는 고향납세 결재 이후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고 고객관리와 배송, 콜센터 등은 지방자치단체 공공 전문기관들을 활용하거나 일부는 직영으로 관리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2) 일본 고향납세기부금 정책활용 사례

일본에서 고향납세제도의 기부금의 지역활성화 사업활용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나 다양한 사업들은 교육·돌봄분야, 마을만들기와 스포츠 분야, 문화와 역사분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 3가지 유형에 대해 우수 활용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광영, 2022).

① 교육 및 돌봄 분야

교육 분야에서는 인구소멸 지역사회의 교육과 육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학교 및 돌봄시설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해외 유학 및 연수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고향납세를 활용하고 있다.

〈표 15〉 교육 및 돌봄 분야

지자체명	활용 사업	주요 내용
홋카이도 유바리시	지역의 과제를 배워서 지역의 미래를 찾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초중학교 통폐합이 진행되어 입학자수 감소에 따라 '유바리 고교 매력화 프로젝트' 추진 - 지역과제를 교재로 교육프로그램 개발, 자주학습 서포트나 지역학습 활용하는 공영학원 설치 운영 비용 활용 - 기부자에게 고교생 도전과 노력 진척상황을 알리고 공영학원 기획에 참여 유도하여 관계인구 증가 연결
홋카이도 엔베쓰정	고향납세로 매력있는 농업학교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베스 농업학교 학생감소 극복 위해 논·밭 상황관측 등 농업분야 드론 활용한 조사연구 활용의 사업으로 고향세 활용 - 기부자에게 본 사업보고와 고등학생 감사메시지 송부
홋카이도 가미시호 로정	육아지원 내실화 인구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세 활용하여 도시 주민 이주를 돕는 기금 설치 - 관내 인가 어린이집 보육료 10년간 완전 무료화와 외국인 강사 배치, 교직원 추가로 학급당 학생수 축소, 공설 민영학원 개설 등 교육 다양성 실현 - 기부자에게 직업안내, 이주체험하우스 소개, 생활체험 이벤트 참가 지원
아키타현 유자와시	국제교류사업 내실화와 고향세설 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세로 지역아동 국제 교류사업 지원: 교류도시인 독일 지크부르크시 중학생 상호파견 비용 활용 - 지역 폭설로 인한 고령자 세대, 빈집 지붕의 제설작업 서비스를 고향세로 활용
야마가타 나가이시	새로운 생명에 축하하는 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으로 인한 육아용품이 들어있는 베이비박스 보내는 경비를 고향세 활용
후쿠이현	학생들 희망을 고향납세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 고교 응원사업'으로 고교 시설정비와 연구활동비, 장학금과 '장기 해외유학지원' 재원으로 고향세 활용 - 기부자에게 활용실적 보고, 감사편지, 유학중 학생들의 생활과 성장내용의 보고서 송부
돗토리현	어린이, 이주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 위한 '어린이 미래기금' 설치하여 도서 증정과 현립학교 운동부 활성화 위해 지역전문가 초청비로 활용 - 2016년 발생한 돗토리현 중부지진 부흥사업 추진하며 기부자는 감사장과 현 정보지 발송
나가노현 하쿠바촌	지역자원 활용한 하쿠바고 존속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교 위기에 처한 하쿠바 현립고교 존속 위해 국제관광과 신설 전국 학생모집, 뉴질랜드 유학지원, 글로벌 인재형성활용 사업으로 고향세 활용 - 기부자에게 유학생의 리포트 송부
교토부 나가오카 쿄시	아이들에게 책 보내기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에게 학교 도서관에서 자유롭게 책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적 구매 비치 지원 - 기부자는 학교와 책 지정이 가능하고 아이들로부터 감사장, 독사감상문 수령
오카야마 와케정	교육마을 와케정 부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마을 목표로 공영학원 설치, 방과후 학습지원, 영어 능통인재육성 사업 - 월 1회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 '공영학원 kids' 운영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까지 영어전문수업 수행 - 기부자에게 감사장과 공영학원활동상황 송부

도쿠시마 이시이정	이동 도서관차 부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 도서관차 이용하여 자원봉사자가 마을 내 유치원, 보육원 순회하며 그림책, 종이연극 읽어주기 사업 수행 필요 - 관련된 신차 구입 비용을 고향세로 충당 - 기부자에게 감사장 송부 및 운행 개시식 참여 유인
나가사키 고토시	ICT로 낙도 핸디캡 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 아이들 교육을 위해 ICT환경을 구축하여 인터넷 활용한 비디오 통화, 원격수업 가능하도록 기반 마련에 고향세 활용 - 기부자에 감사 영상메시지 작성하여 홈페이지 공개
오키나와 기노완시	미래를 짚어질 국제청년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지반환후 유적지 활용을 수행할 전문인력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과 유학 희망하는 시내 학생을 위한 고향세 지원 - 기부자에게 학생 유학생활동, 연수 모습의 보고서와 감사장 송부

② 마을만들기 분야

쇠퇴하는 지역사회 회복을 위해 주민들의 의견들이 적극 반영되는 다양한 형태의 마을 만들기 활동 수행을 위한 재원마련에 고향세를 활용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주민의 참여를 중심으로 역사자원 등의 활용이 특징이다.

〈표 16〉 마을만들기 분야

지자체명	활용 사업	주요 내용
홋카이도 니세코정	떨어져 있지만 마을조성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세 활용하여 목제완구 정비나 자필서한 수집 등 구체적 마을자산 활용 사업 실시 - '니세코정 고향만들기 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결정 - 기부자에게 정기 소식 보내고 마을 최신 정보를 알림
후쿠이현 사카이시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고향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시민참여제도' 2008년부터 실시, 고향납세 활용 정책 및 사업에 대해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의견을 통해 결정 - 기부자에게 10년간 사업보고서 송부, 기부금 활용 보고
나가노현 이다시	마음 편해지는 고향으로 지역을 가깝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 20개 지구 모든 지역에 '마을만들기 위원회' 조직하여 민관협력 마을만들기 추진 - 지역활동을 응원할 수 있도록 '이다시 20개 지역응원대' 시작하여 착수사업이나 활동을 웹사이트에 올리고 각 지역 사업에 찬성하는 사람이 사업비 교부 - 기부자에게 소식지나 초대장 통해서 교류
돗토리현 고토우라 정	다시 살아나는 후나카미산 벚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호우로 나무가 줄어든 후나카미산 벚꽃명소의 부활을 위해 2014년부터 130만그루 벚꽃을 심고 관리비용으로 고향세 활용 - 함께 벚꽃심는 날에 주민 단체 참가자 전원에게 식사대접 등 주민이 모두 마을만들기에 동참하고 있음 - 기부자에게 벚꽃 축제개최 안내를 보내며 관광객 증가

사가현	협동에 의한 마을만들기로 지역문제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고령자 건강 서비스(당뇨병 근절, 이동 서비스 등) 위한 연구자금 조성, 개발활동에 필요자금을 고향세 총당 - 겐카이지구 수산업진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낚시 체험, 생선 해체, 절임생선 만들기 교실 개최하여 기부자 교류
히로시마 현 히로시마 시	평화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는 마을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세를 '히로시마시 원폭 돔 보존사업 등 기금'에 적립하여 원폭 돔 보존사업과 피폭자료 보존계승, 피폭자료 훼손방지 및 청소년 초대 등 사용 - 기부자에게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 도록, 평화기념공원 종이학 재생한 명함, 메모장, 엽서 등 제공
기후현 다카야마	나무의 온기로 연결하는 마을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다카야마 고향기금으로 적립하여 다양한 사업에 활용 - 다카야마시 전통과 자연 활용한 마을조성을 위해 전통 공예품 산업 후계자 육성지원, 고시키기하라모리 숲 정비로 자연 지키기 위한 고향납세 활용 - 기부자에게 공예품 제공 및 숲체험권 제공

③문화·체육과 역사 분야

지역의 축제를 비롯한 문화행사와 체육행사의 개최를 위해 고향세 활용하는 지역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표 17〉 문화체육과 역사분야

지자체명	활용 사업	주요 내용
아오모리현 히로사키	기부자참여 고향납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문화재 히로사키성 이시가기 수리 비용으로 모집 - 기부자에 대해 히로사키성과 이시가기 수리에 관한 체험이벤트 제공
이바라키 기타이바라 키시	국가중요문화재 지정 축하 어선제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히타치오쓰 어선제가 5년에 1번, 이바라키현 이바라키시에서 열리는 축제는 도로에 목재를 깔고 배를 끄는 행사로 높은 배 수선비용 부담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으로 고향세 활용 - 기부자에게 적극적 축제참여 권유하고 축제모습을 웹사이트에 게재하여 시 축제 홍보
도치기현나 스카라스야 마시	전통과 자부심 있는 마을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마아게사이(축제)운영비로 고향세 모집 - 기부자에게 축제 팸플릿 동봉하여 답례장 송부
기후현 구조시	고향납세로 일본 3대 봉오도리 합동공연 이벤트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3대 봉오도리 합동공연 실시비용을 고향세로 활용 - 기부자에게 활용실적 보고서와 광고 팸플릿 송부

아이치현 가리야시	가리야성 복원하여 역사 낭만 넘치는 마을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리야성 복원, 역사박물관 정비를 위해 고향세 활용 - 기부자에게 가리야성 복원과 역사박물관 정비 완료 후 기념 이벤트 개최안내 송부 검토
나라현 오지정	쇼토쿠태자 관련 '달마사 방장' 수리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달마사 방장은 건축 후 350이 경과되어 수복 비용에 많은 지출이 요구되어 고향세 기금 활용 - 수복공사 진척 내용을 마을 홈페이지 게재하고 기부자에게 현장 설명회, 완성 이벤트 초대 개최
시마네현 고쓰시	지역 전통예능, 문화의 전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모토카구라 전통예능과 일본전통종이 제작의 문화보존을 위한 사업에 고향세 활용 - 오모토카구라 전승관 운영, 가치기반시 기술 보존 보급 후계자 육성 활용 - 매년 활동 내용을 홈페이지와 홍보지에 게재
군마현 다카사키시	문화, 스포츠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향악단 포함하여 지역 야구팀, 기업 소프트볼부, 육상부 등 문화 스포츠 단체 활동 지원 - 기부자는 단체를 특정하여 지원가능 하며 활동 상황을 보고
도야마현 히미시	핸드볼로 동경선수권 대회 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학교 전국 핸드볼 우승 도시로 2005년부터 '춘계 전국 중학생 핸드볼 선수권대회' 개최하고 있음 - 대회 지속을 위한 자금 부족 문제해결 위해 고향납세 시행 - 기부자에게 대회 결승전 티켓 발송

2) 일본 도도부현의 고향납세제도 운영 사례

다음으로는 충청남도과 비교적 유사한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에서 운영중인 고향납세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¹⁾

(1) 일본 나가노현 운영 현황

일본 나가노현은 2013년부터 고향납세의 기부실적이 10위권의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나가노현의 지역적 특성은 주로 산악지대이며 이를 활용한 여행 및 관광 서비스업이 경제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나가노현은 고향납세로 인한 답례품의 선정 및 조달에 대해 자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나가노현의 답례품은 지역에서 생산, 제조한 농축수산물과 가공제품, 전통공예품의 상품과 함께 지역의 문화관광체육 등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 18〉 나가노현 답례품 선정 기준

분류			선정기준
대	중	소	
맛있는 신슈 푸드 (프리미엄)	원산지관리제도 인증품	와인	맛있는 신슈 푸드(프리미엄) 인증품
		니혼슈	
		소주	
		과일주	
		쌀	
	신슈 프리미엄 쇠고기		
	지리적표시 보호제도 인증품	단감(이치다시), 비트발효식품	
맛있는 신슈 푸드 (오리지널)	나가노현 오리지널 품목		맛있는 신슈 푸드(오리지널) 인증품
	전국 비중 상위 품목		
맛있는 신슈 푸드 (헤리티지)	나가노 전동 채소 전승지 지배 인증품		맛있는 신슈 푸드(헤리티지) 인증품
	전승지 지배 인증표 사용 승인 가공품		

1) 다음의 일본 도도부현 운영 사례는 신동철(2022)의 연구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생수		수원지 및 제조장소가 나가노현
상기 이외의 농축수산물	정육, 쌀 등	원산지가 나가노현
농축수산물 가공품	음료, 소바, 빵, 피자, 떡, 조미료, 디저트, 햄, 와인, 니혼슈 등	나가노현에서 주요 원재료가 생산된 것 또는 제조 가공 등 주요 공정이 나가노현에서 이루어져 지역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제품
전통 공예품	경제산업성 지정 공예품	경제산업성 장관이 지정
	나가노현 지정 공예품	나가노현 지사가 지정
상기 이외의 제품		제조, 가공 등 주요 공정이 나가노현에서 이루어져 지역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제품
숙박형		지역 내 숙박시설 이용권(숙박시설 내 서비스 이용)을 포함하며 주변 시설 이용권과의 세트도 가능
체험형	스키장 리프트권, 소바만들기 체험, 딸기 수확, 음식점 무료 식사권 등	나가노현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역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으며 주변 시설 이용권과의 세트도 가능

이러한 나가노현의 다양한 답례품은 우선 현의 홍보 및 지역브랜드를 확립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였으며 이에 부합하는 상품들을 중심으로 답례품을 선정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품질 및 수량에 대해서도 공급탄력성을 갖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질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와 생산자를 선정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선정이 비교적 까다롭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식음료 제품의 경우 답례품의 엄격한 품질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다소 답례품 발송에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발송일부터 유통기한까지 변질이 발생하지 않는 제품이나 관련 경험이 없는 공급자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체험형 서비스의 경우 기부자의 이용신청 시에 신청방법이 명확하고 지원센터를 통해 기부자와 논의 및 조정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와 함께 나가노현은 기부금액별로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의 부담금 규모를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기부금액 1만엔 이상부터 답례품의 제공이 가능하며 1만엔부터 1만1천엔 사이의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이 가장 많은 193개이고 기부금액이 높아질수록 답례품의 개수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19〉 기부금액대별 답례품 부담액 및 답례품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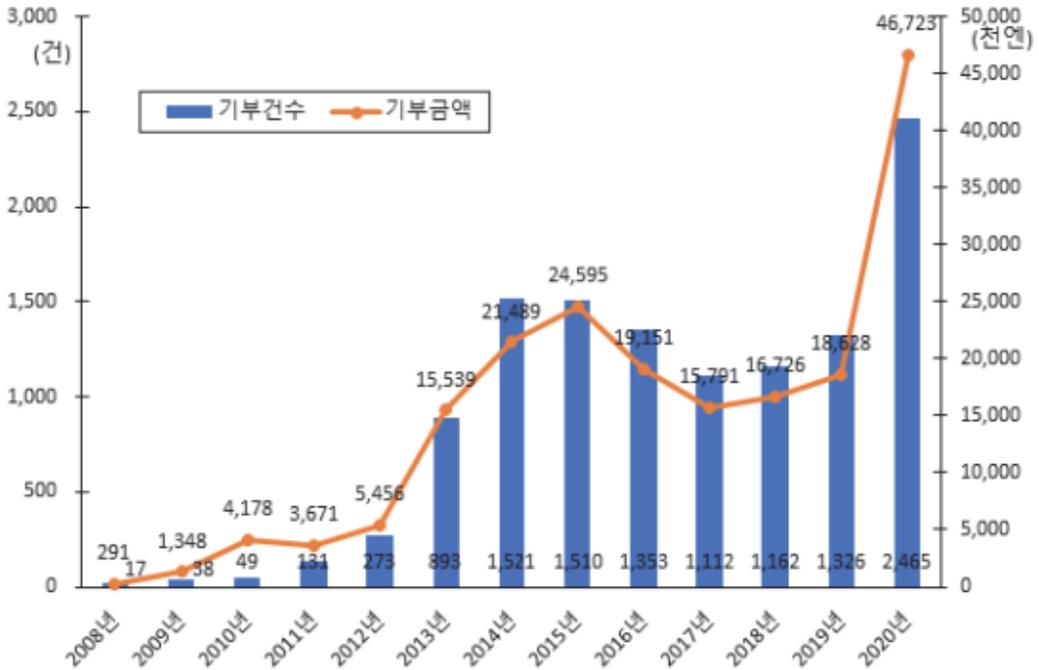
기부금액	부담액	답례품 개수
1만 엔 이상 ~ 1만1천 엔 미만	상품 가격의 70% 또는 3,000엔 중 낮은 금액	193개
1만1천 엔 이상~ 1만 5천 엔 미만	상품 가격의 70% 또는 3,300엔 중 낮은 금액	
1만5천 엔 이상 ~ 2만 엔 미만	상품 가격의 70% 또는 4,500엔 중 낮은 금액	
2만 엔 이상 ~ 2만5천 엔 미만	상품 가격의 70% 또는 6,000엔 중 낮은 금액	85개
2만5천 엔 이상 ~ 3만 엔 미만	상품 가격의 70% 또는 7,500엔 중 낮은 금액	
3만 엔 이상 ~ 5만 엔 미만	상품 가격의 70% 또는 9,000엔 중 낮은 금액	21개
5만 엔 이상 ~ 10만 엔 미만	상품 가격의 70% 또는 15,000엔 중 낮은 금액	22개
10만 엔 이상 ~ 15만 엔 미만	상품 가격의 70% 또는 30,000엔 중 낮은 금액	
15만 엔 이상 ~ 20만 엔 미만	상품 가격의 70% 또는 45,000엔 중 낮은 금액	
20만 엔 이상 ~ 25만 엔 미만	상품 가격의 70% 또는 60,000엔 중 낮은 금액	
25만 엔 이상 ~	상품 가격의 70% 또는 75,000엔 중 낮은 금액	

그리고 이러한 답례품의 구성부터 배송까지의 업무는 별도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업체와 위탁계약을 통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답례품 공급자는 민간위탁업체의 선정기준을 통과한 답례품에 대해 공급계약을 맺고 답례품을 공급하게 되며 이에 대한 기부자의 선택에 따른 답례품은 민간위탁업체를 통해 공급과 배송이 수행된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 및 공급자에 대한 대금지급도 나가노현과 민간위탁업체의 협력을 통해 수행된다. 이처럼 나가노현을 비롯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답례품 구성 및 선택과 발송의 절차를 수행하며 이를 민간업체와 위탁계약을 통해 실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2) 일본 시즈오카현 운영 사례

시즈오카현은 도쿄도 중심의 수도권과 아이치현 사이에 태평양과 인접하여 위치하며 기계장비, 자동차 부품, 조선업 기반의 제조업이 본래 발달하였으며 후지산에 인접한 내륙지역은 여행관광 서비스업과 농업이 발달한 도농 복합의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시즈오카현의 고향납세 기부건수는 2008년 17건에서 2015년 1,51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정체되어 있다가 2020년에는 2,465건으로 급증하였다. 기부금액 또한 2008년 대비 2020년 4,672만엔으로 160배 정도 증가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코로나19의 재난상황을 원인으로 거론할 수 있다.



자료: 신동철(2022)

[그림 12] 일본 시즈오카현 고향납세 실적

다음으로 시즈오카현에서 기부금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및 주민복지 사업을 살펴보면 경관보전, 의료복지, 문화관광, 복지 부문등 다양하게 17개에 걸쳐 기부금이 투입되었다. 2020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기부금이 모인 사업으로는 코로나19 지원 관련된 기부금으로 2,195만엔이며 전체의 47%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 밖에는 일본의 후자산 관리사업과 이를 활용한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부한 금액이 많으며 전체 기부건수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즈오카현의 사업내용과 모금실적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0〉 시즈오카현의 기부금 활용사업 내용

활용 사업 내용	기부건수	기부금액(천엔)
코로나19를 이겨내는 시즈오카현민 지원 기금	669	21,959
시즈오카현 위임	352	4,993
세계유산 후자산 보전관리	251	3,452
안심 의료 추진과 건강 수명 연장	130	2,860
안심 출산 및 아이 돌봄이 가능한 환경 만들기	245	2,740
미나미 알프스 유네스코 파크 보전관리와 매력 발신	171	2,176
쓰나미 대책 추진	125	1,850
환경보전 및 환경교육 추진	129	1,410
스포츠 발전 추진	106	1,350
동물애호활동 추진	79	1,018
관광 진흥사업 추진	53	610
장애인과 공생사회 실현	32	570
이주 및 정주 촉진	34	450
사립과 부의 창출에 의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26	440
지역이 담당하는 장수 사회 만들기	20	350
글로벌 교육 전개	26	320
예술 문화 발전	14	150
합계	2,452	46,723

자료: 시즈오카현 홈페이지, 신동철(2022)

시즈오카현은 기부자들에게 대한 답례품으로는 121개를 준비하고 있으며 우선 농축수산물은 농산물 25개, 축산물 16개, 수산물 18개로 총 59개 인데 대부분 30,000엔 이하 기부금의 답례품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류, 음료는 20,000엔 이하 답례품으로 활용되며 종류는 40여가지에 이른다. 비교적 높은 기부금액인 40,000엔 이상의 기부에 대해서는 공예품, 문화관광상품이 제공되고 있다.

〈표 21〉 시즈오카현의 답례품 현황

	합계	10,000엔	20,000엔	30,000엔	40,000엔	50,000엔	100,000엔
농산물	25	17	7	1			
축산물	16	9	3	4			
수산물	18	12	3	3			
주류음료	13	11	2				
식품	27	20	7				
여행관광	4	2		1		1	
생활잡화	10	5	4	1			
공예품	8		3	3	1		1
합계	121	76	29	13	1	1	1

자료: 신동철(2022)

시즈오카현 답례품 구성을 보면 개수와 양으로 볼 때 기부금 30,000엔 이하에 대한 답례품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주로 낮은 기부금의 경우 농축수산물 및 주류 음료 등 식음료품이 대부분의 답례품을 구성하고 있어서 이후 충청남도 지방자치단체 답례품 구성에 시사점을 보여준다.

4. 사례의 시사점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일본에서 2008년 처음 시행되어 제도 활성화를 위한 변화들이 있었으며 이후 우리나라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을 준비중이라는 점에서 일본 사례의 시사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시의성이 높다고 하겠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운영 사례 현황을 통해 살펴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자들이 손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실행 측면에서 간소화 및 원스톱 서비스 등의 편의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일본 사례에서도 초기 제도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2015년 원스톱 서비스 도입이후 기부활동이 활성화 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 시행 이후라도 지속적인 기부자의 모니터링을 통해 애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이나 중앙정부의 제도개선 건의가 필요하다.

둘째, 일본에서 고향납세제도 도입의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던 지역재정격차 해소와 세수확보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 실행 결과 지방정부에서 매년 기부금 총액의 추정이 어렵고 모집된 기부금 총액이 지방재정 대비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향납세제도로 인한 재정확보의 효과를 도모하기 보다 지역홍보 및 지역 활성화의 도구로 활용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연계된 관계인구의 확보를 통해 과소지역 극복의 수단으로 본 제도의 활용에 시각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부자에 대한 기부금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효과적 활용의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금에 대한 투명하고 세밀한 모집규모 및 활용 등에 대한 상시적 정보공개가 기반 마련이 요구되며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에 대한 정책 목적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목적 중의 하나로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지역사회 복지와 활력 증진의 사업들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증대를 도모하는 등의 활용 목적 제시와 효과적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기부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부금을 활용한 지역 문화관광 연계전략과 지속적인 소식지 등 홍보자료 발간, 이와 연계된 특산품의 답례품 선정 전략과 같은 상호연계된 지방자치단체 특수성이 반영된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답례품 선정과 전달로 인한 기부금 유인의 단편적 전략에서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일본에서는 오히려 과도한 답례품 경쟁으로 인한 본래 제도 개발과 운영의 퇴색으로 인한 경쟁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행납세제도의 유지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체계 구축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부금에 대한 투명한 회계집행과 함께 기부금 운용을 위한 전담조직 구축 및 관련 지역사회 정책 및 답례품과의 연계,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제4장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인식과 수요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과 방법

고향사랑기부제도는 2023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충청남도에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아직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제도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탐색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결과보다는 제도 도입을 위한 탐색적 인식현황 분석은 정책설계에 과학적이고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인식조사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는 양적분석을 위한 1차 기초자료 습득을 위해 수행되며 설문응답을 통계 처리하여 분석을 통해 연구의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양적분석은 조사 가설에 대한 실증적, 과학적 검증과정을 통해 신뢰성 있는 내용의 전달이 용이하며 질적조사에 비해 많은 유효샘플을 확보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본 조사는 충청남도 도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설문응답을 수집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고향사랑기부제도 또한 정부 및 충청남도의 공공적 차원에서 수행되는 제도와 정책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충청남도의 도정과 연관성을 어느정도 갖고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는 보다 구체적인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참여와 시행의 응답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도민참여단 및 청년위원회, 새마을 및 공동체 정책 참여집단을 대상으로 설문 집단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 기간은 2022년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약 10일간 수행하였으며 모바일 및 온라인 참여방식을 통해 설문응답자료를 수집하였고 검수과정을 거쳐 총 339개의 유효표본을 구축하였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인식 파악,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기부의향과 금액, 기부금의 활용사업과 운영방향으로 구성되었다.

2) 조사대상과 특성

설문 조사대상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천안시와 보령시의 응답인원이 가장 많으며 아산시, 부여군의 응답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연령별로는 40-50대의 응답인원 비중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월소득규모는 200-300만원대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학력은 대학졸업 이상이 77%로 다수임을 알 수 있다.

〈표 22〉 응답자 분포 특성

구분	대상	빈도	비율	구분	대상	빈도	비율	
지역	공주시	20	5.9	성별	남성	144	42.5	
	천안시	48	14.2		여성	195	57.5	
	아산시	27	8.0	연령	20대	22	6.5	
	서산시	21	6.2		30대	51	15.0	
	논산시	20	5.9		40대	98	28.9	
	계룡시	23	6.8		50대	95	28.0	
	당진시	31	9.1		60대	63	18.6	
	보령시	42	12.4		70대 이상	10	2.9	
	금산군	5	1.5	직종	농업, 임업, 어업	34	10.0	
	청양군	18	5.3		제조 건설업	10	2.9	
	홍성군	20	5.9		도소매 및 서비스업	31	9.1	
	예산군	8	2.4		관광업	2	0.6	
	부여군	28	8.3		운수통신업	5	1.5	
	서천군	7	2.1		전문직	62	18.3	
	태안군	13	3.8		사무직	113	33.3	
	기타	8	2.4		전업주부	26	7.7	
	월수입	100만원대 미만	49		14.5	학생	3	0.9
		200만원대	112		33.0	교육(교수, 교사)	32	9.4
300만원대		76	22.4	기타	21	6.2		
400만원대		38	11.2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	2.1	
500만원대		33	9.7		고등학교 졸업	69	20.4	
600만원대		9	2.7		대학교 졸업	173	51.0	
700만원대 이상		22	6.5		대학원 졸업	90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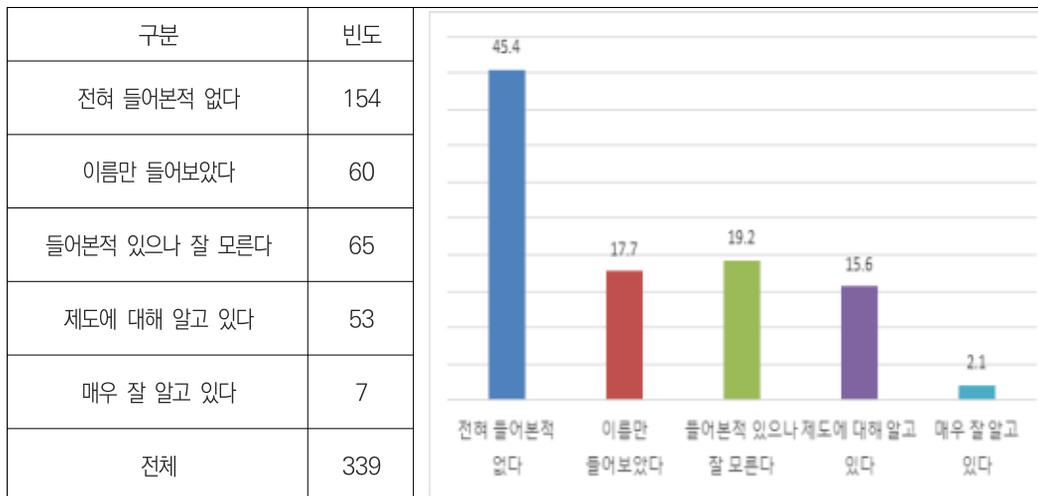
2. 제도 인식과 기부 의향

1) 기부제도의 인식 현황

(1)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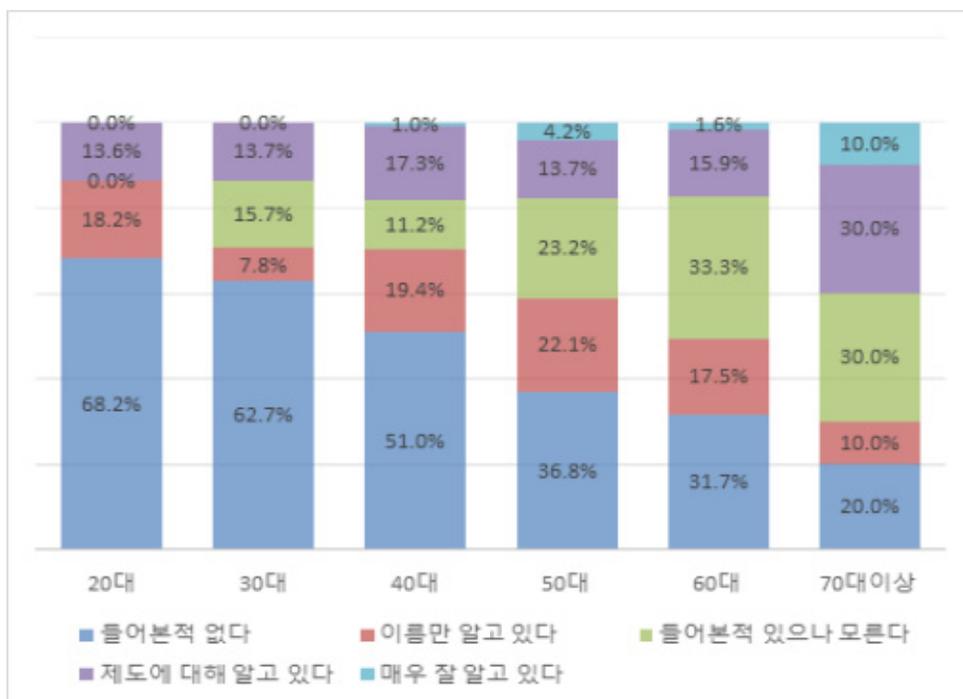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인지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23과 같다. 우선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이 54%로 과반 이상 분포하고 있으며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8%에 그쳐 우선 도내의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며 충청남도에서 적극적인 제도와 정책적 홍보가 시급한 시점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제도적 홍보가 우선시 되어야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부제도의 맞춤형 사업,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도를 높이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표 23〉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인지도 조사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연령별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인식 차이를 다음 그림13처럼 살펴보았다. 우선 20대는 68%가 제도에 대해 전혀 들어본적이 없다고 응답하여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인식이 가장 낮은 연령대로 나타났다. 30대도 62%가 제도를 들어본적 없다고 응답해 20-30대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상태라 볼 수 있다.

반면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인식이 높는데 60대는 50%가 제도에 대해 수준은 다르지만 인지하고 있으며 70대 이상은 70%가 인지하고 있다. 연령이 높을수록 지역이나 고향에 대한 평소의 관심이 높은 부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특히 20-30대 중심으로도 본 제도에 대한 종합적 이해나 인식 확산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세대에 부합하는 본 제도의 취지 이해와 홍보의 방안들이 특색있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중년층 이상에서도 제도에 효과적으로 접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한 인식확산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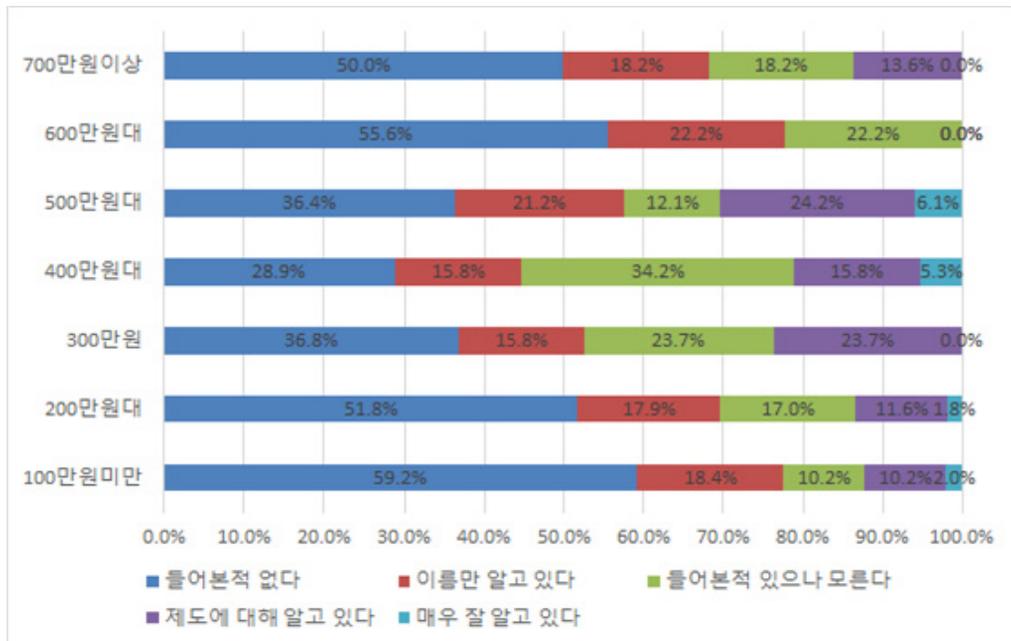


[그림 13] 연령별 고향사랑기부제도 인식 비교

다음으로 응답자들의 소득수준에 따른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인식 차이에 대해 다음 그림14처럼 살펴보았다.

우선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소득수준이 낮거나 높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월소득 200만원 이하 응답자는 들어본적이 없다는 비율이 50%를 넘었으며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50%가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지도가 제일 높은 계층은 월 소득

400만원-500만원대 소득자이며 이는 기부활동에 적극적인 세대와 어느정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기부유인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4] 소득에 따른 고행사랑기부제도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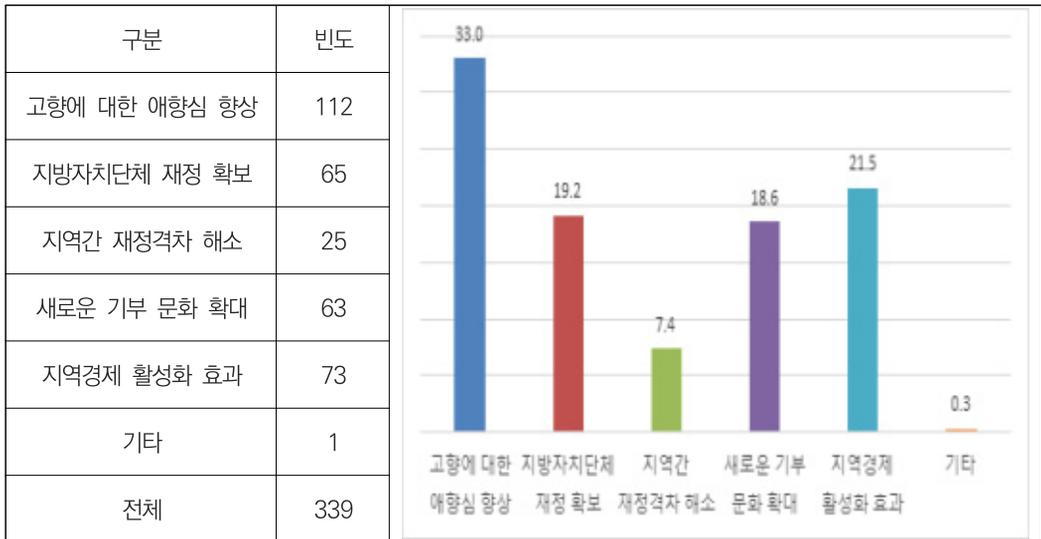
(2)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시행과 참여 목적

다음으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응답자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왜 시행되는지의 목적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24와 같다.

우선 고향에 대한 애향심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다는 인식이 33%로 가장 높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자치단체 재정확보 응답이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다. 제도도입의 본래 취지인 지역간 재정격차해소는 7.4%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실제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본인의 출생지인 고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직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에 대한 구체적으로 정확한 정보와 인식확산이 미흡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의 응답이 20%가 넘는다는 점에서 제도를 통한 답례품 관련산업 및 지역활성화 기금활용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서 본 제도를 인식하고 있는 비율도 비중이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24〉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시행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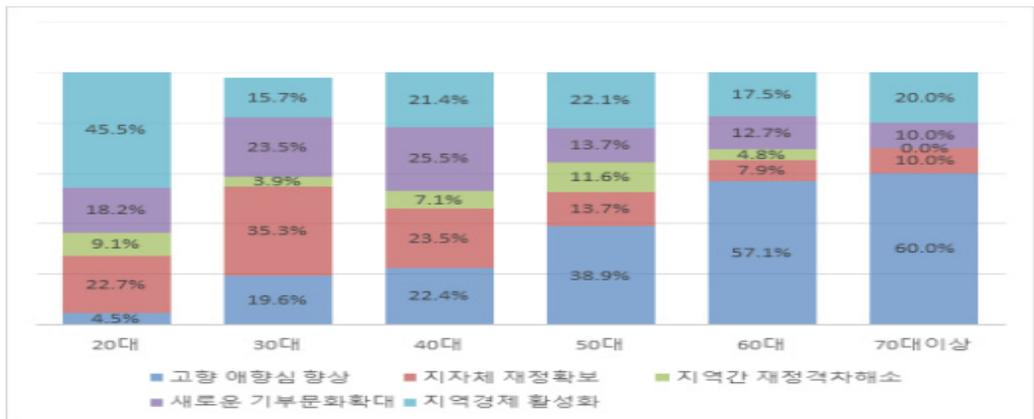


이러한 제도시행의 목적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 15과 같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고향에 대한 애향심 비중이 높고 낮을수록 지역경제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 재정확보의 목적 인식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60대 이상은 고향 애향심 향상 응답이 60%에 근접하며 큰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30대 이하는 고향 애향심

향상은 20%이하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방자치단체 재정보호는 35%가 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기부제도 인식과 종합하여 살펴보면 본 기부제도의 인식과 관심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높지만 제한적 정보에 접근하여 인식내용이 부족하고 30대 이하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있지만 관심과 인지도가 낮은 정도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령별 차별화를 통한 홍보와 인식확산의 접근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5] 연령별 제도 시행 목적의 인식

소득에 따른 시행목적 인식은 모든 소득구간에서 유사하지만 500만원 이상 고소득층 일수록 새로운 기부문화확대와 지역경제활성화와 같은 제도 본연의 목적 이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6] 소득에 따른 기부제도 시행목적의 인식

다음으로 만약 고향사랑기부제도에 참여한다면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의 응답은 다음 표 25과 같다.

우선 고향을 포함한 지역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37.8%로 가장 많으며 고향이라서 참여한다는 응답도 25.1%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부행위의 대표적인 외적동기로 경제적인 이유인 세금공제 혜택은 15%, 답례품 수령은 4.7%로 기부의사로 중요한 선택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거시적인 지역활성화의 차원에서 관심이 높은 반면 본인이 평소 마음에 드는 지역 응원의 인식이나 지역특산물의 답례품에 대한 인식은 낮아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별화된 특색을 갖추어 인식의 반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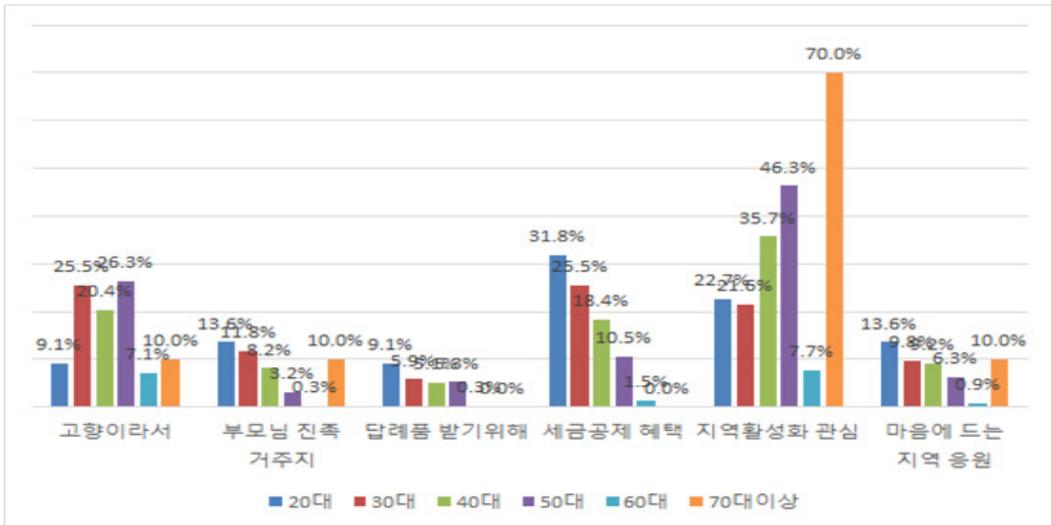
〈표 25〉 고향사랑기부제도 참여 이유

구분	빈도
나의 고향이라서	85
부모님과 친족의 거주지라서	22
기부로 인한 답례품(지역 특산품)을 받기위해	16
세금 공제의 혜택이 있어서	53
지역(고향 포함) 활성화에 평소 관심이 있어서	128
내가 마음에 드는(응원하는) 지역을 지원하려고	27
기타	8
전체	339

이유	비율 (%)
나의 고향이라서	25.1
부모님과 친족의 거주지라서	6.5
기부로 인한 답례품(지역 특산품)을 받기위해	4.7
세금 공제의 혜택이 있어서	15.6
지역(고향포함) 활성화에 평소 관심이 있어서	37.8
내가 마음에 드는(응원하는) 지역을 지원하려고	8.0
기타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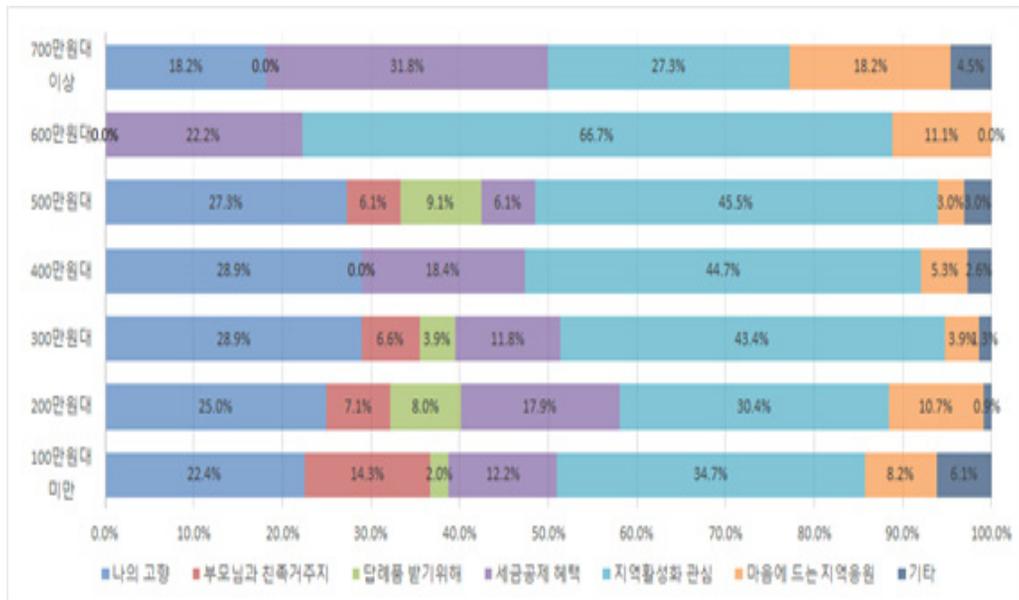
다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참여이유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그림 17과 같다.

우선 20대는 세금공제 혜택이 32%로 가장 많은 반면 30대는 고향에 기부해서라는 응답이 25%로 가장 많고 40-50대 이상은 지역활성화 측면에서 접근하는 인식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도에 대한 효과나 접근 방식도 연령별 차이가 크다고 점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림 17] 연령별 고향사랑기부제도 참여 이유

소득에 따른 참여이유를 살펴보면 600만원대 소득자는 지역활성화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700만원대 고소득자들은 세액공제 혜택이 주요한 이유임을 알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마음에 드는 지역을 응원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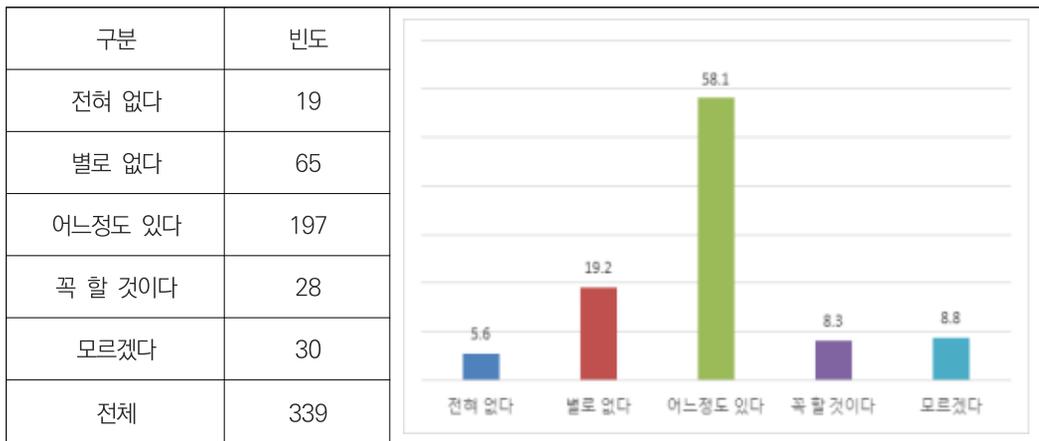
[그림 18] 소득에 따른 고향사랑기부제도 참여 이유

2) 고향사랑기부제도 참여의향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의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결과는 다음 표 26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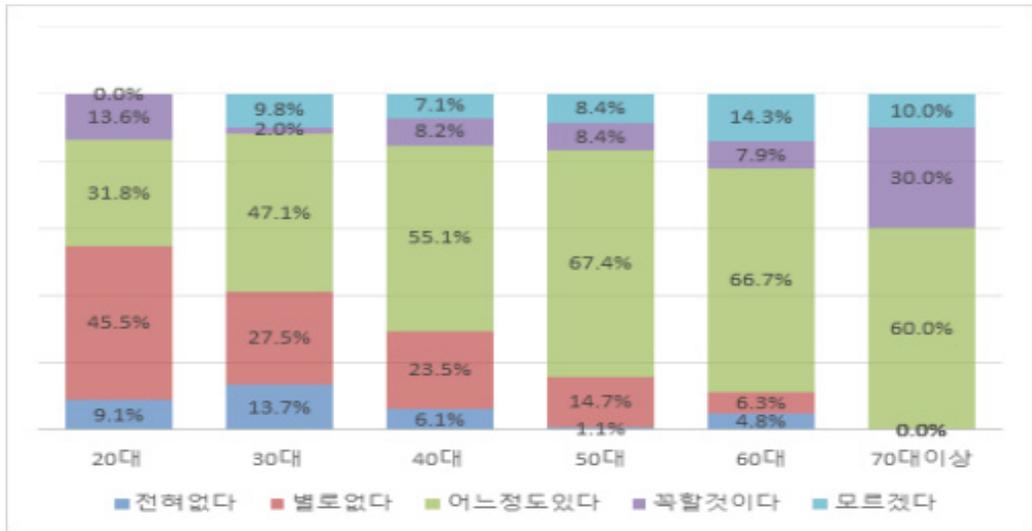
응답자들은 전체적으로 58%로 어느정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의사를 갖고 있으나 기부 의사가 없다는 응답도 25%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부활동은 긍정적 인식이기 때문에 응답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내년부터 기부에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기부제도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제도 관련 홍보와 인식확산이 성공적 제도 안착을 위해 도입 초기에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표 26〉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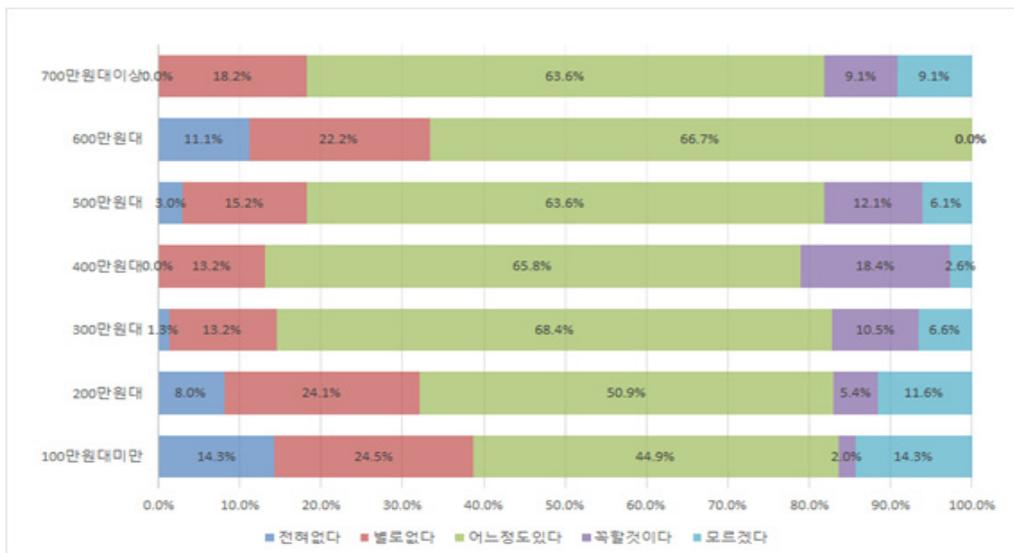
구체적으로 연령별로 기부제도에 참여할지에 대한 의향을 보면 20-30대는 의향이 없다는 응답이 30-50%정도 분포하고 있는 반면 50대 이상은 대부분 어느정도 기부할 것이라는 인식이 대부분이라 볼 수 있다.

아직 20-30대는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활동에 참여의 효과나 의의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기부를 위한 경험이나 경제력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세액공제 및 답례품 등의 경제적 효과를 포함해 기부제도에 대한 구체적 매력도의 홍보와 인식확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9] 연령별 기부 참여 의향

소득에 따른 참여의향을 보면 부정적인 의식은 주로 600만원대와 200만원 미만의 응답자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300-500만원대의 소득자들은 상대적으로 기부 참여에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세액공제 홍보나 고소득층을 위한 지역 활성화의 기부원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서 기부참여 확대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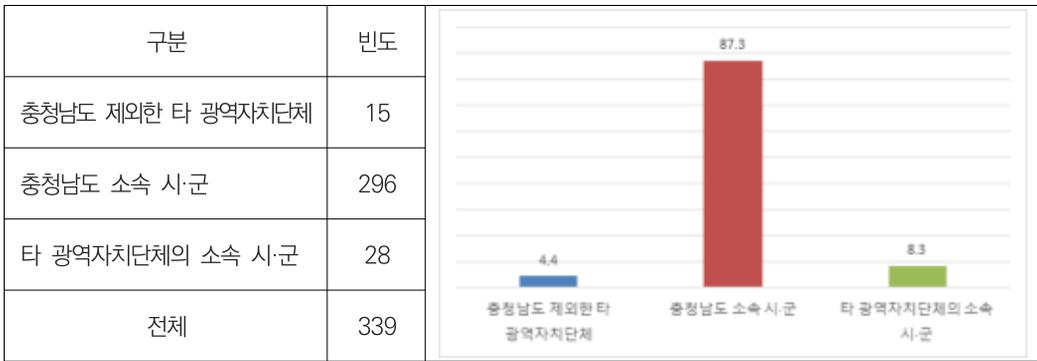


[그림 20] 소득에 따른 기부 참여 의식

다음으로 기부할 지역에 대한 선택에서 우선 전국단위로 기부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27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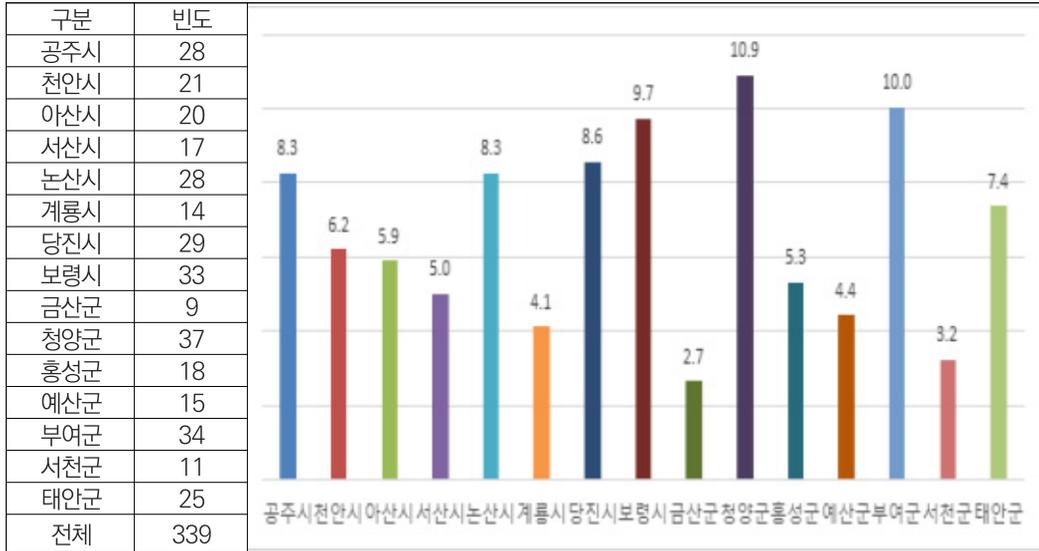
우선 충청남도 소속 시군에 기부할 것이라는 응답이 8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타 광역자치단체 소속 시군이 8.3%로 나타났다. 만약 기부제도에 참여한다면 충남의 도민들은 대부분 충남 소속 시군으로 기부할 의사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충남도민 대상과 함께 충남 외 타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부 확대 전략이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27〉 기부할 지방자치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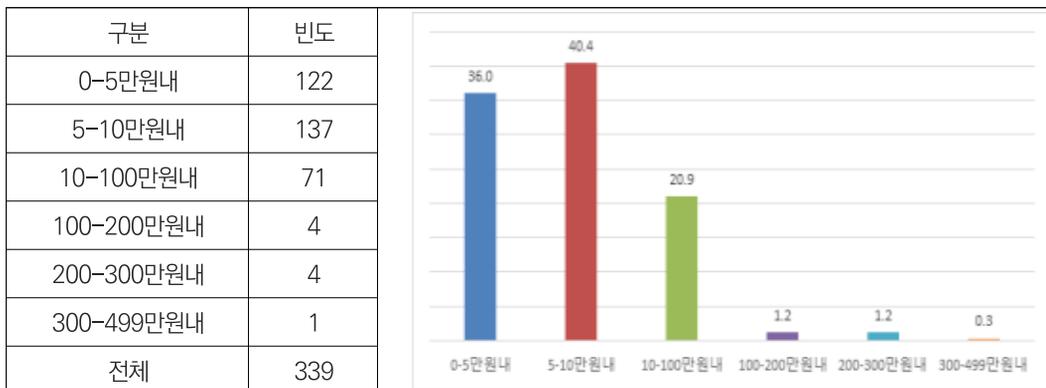
다음으로 충남 내 시군에 기부한다는 어떠한 시군에 기부할 것인지 응답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28과 같다. 우선 청양군과 부여군, 보령시에 기부하겠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천안시 아산시 등 북부 지역보다는 청양군이나 부여군과 같은 인구감소 위기지역에 대한 기부의 의사가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28〉 충청남도내 시군에 기부하신다면 어떤 시군



다음으로 기부제도에 참여할 시에 가장 적절한 기부금액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29과 같다. 우선 제도적으로 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기부의사를 질문하였다. 응답 결과 5-10만원 사이의 기부금액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5만원도 36%로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 100만원 이상의 고액기부자는 전체의 3%도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액기부자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소액기부자의 규모를 어느정도 확산 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 29〉 가장 적절한 기부금액



3. 기부금 활용과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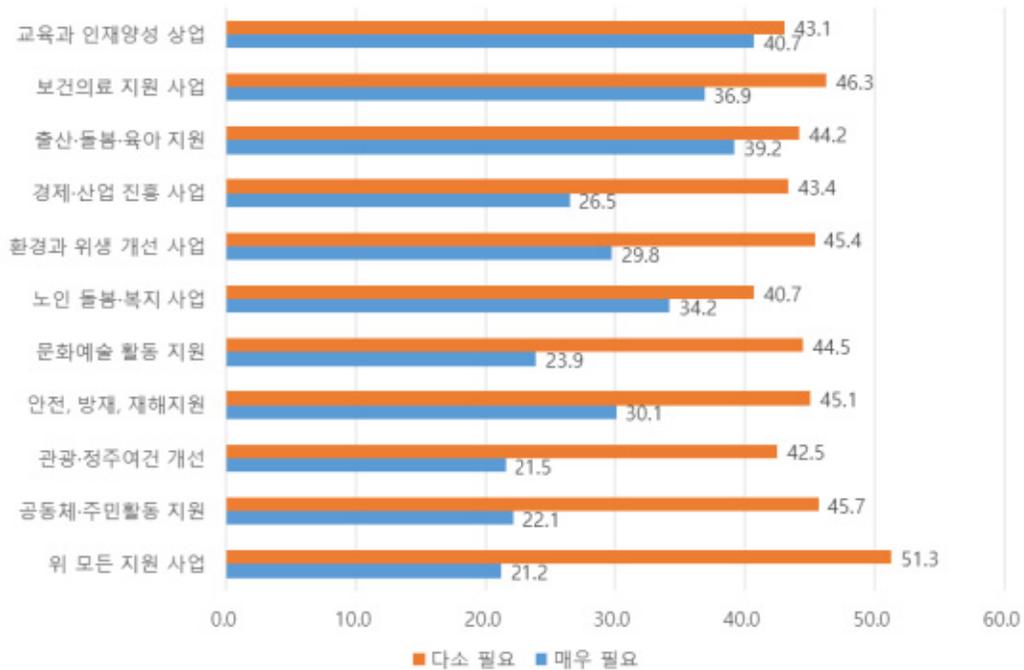
1) 기부금의 정책활용 인식

본 연구에서는 설문과 인식조사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충청남도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인한 기부금의 활용사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결국 기부제도 활성화의 관건은 기부금의 효과적인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책수요자들이 강조하는 활용사업에 대한 인식 파악이 필요하다. 우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에는 기부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다음과 같은 거시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들은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면 10가지의 유형화가 가능하다. 10가지의 정책유형은 교육과 인재양성 사업, 보건의료 지원사업, 출산 돌봄 육아 지원사업, 경제 산업진흥 사업, 환경과 위생개선 사업, 노인돌봄 복지지원 사업, 문화예술 활동지원사업, 안전 방재 재해지원사업, 관광 정주여건 개선사업, 공동체 주민활동 지원사업이다.

이러한 10가지 유형에 대해 기부금의 활용의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필기부금 활용이 필요하다는 응답결과는 다음 그림 2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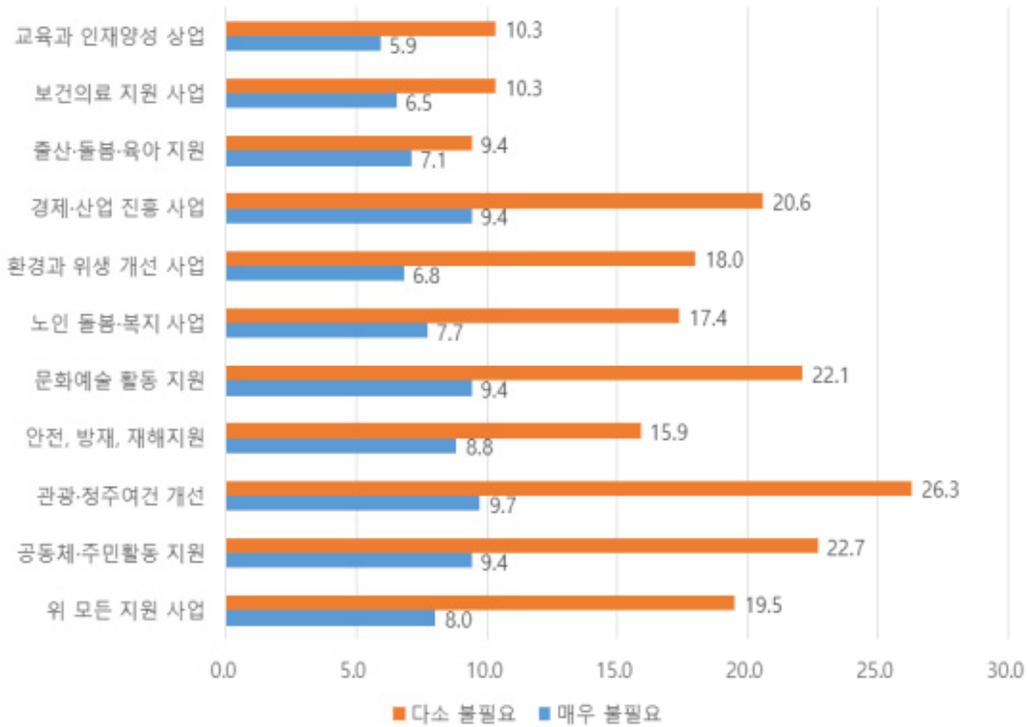


[그림 21] 기부금 활용 사업의 필요성 인식

필요하다는 인식을 종합하면 우선 충남도민은 교육과 인재양성 사업, 출산·돌봄·육아 지원사업, 보건의료 지원사업, 노인돌봄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충남에서 주민의 돌봄복지 및 교육지원사업으로 기부금이 활용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10가지 유형에 대해 기부금 활용의 부정적 인식을 함께 살펴보았다. 본 사업에 기부금 활용이 불필요하다는 응답결과는 다음 그림과 같다.

우선 가장 필요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는 경제산업 진흥사업, 관광 및 정주여건 개선, 공동체 주민활동지원, 문화예술활동지원으로 나타났으며 돌봄 복지 및 교육인재양성의 분야가 가장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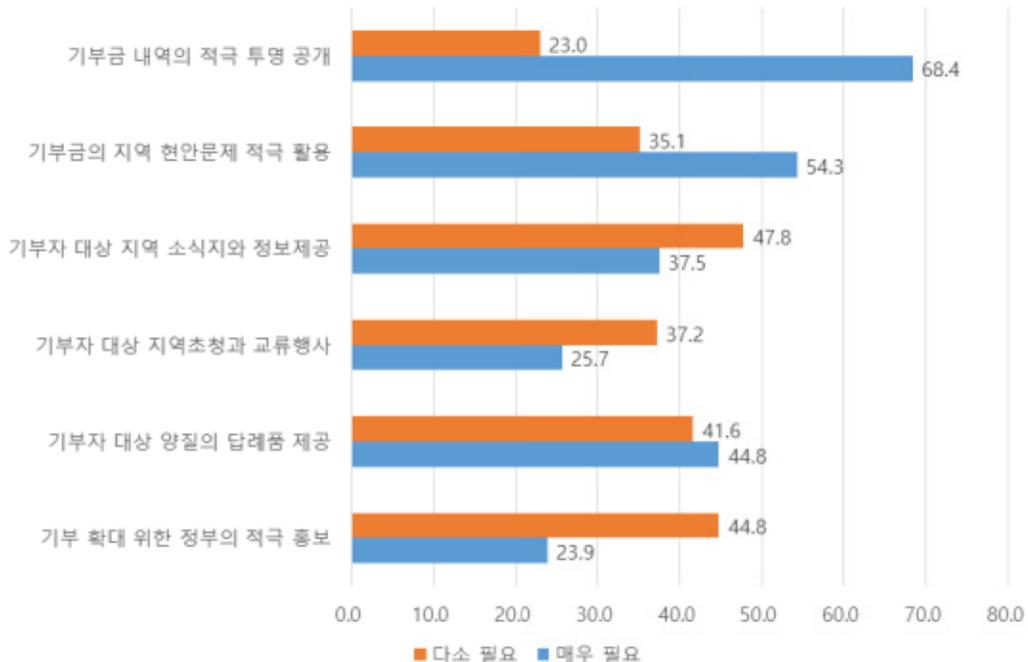
[그림 22] 기부금 활용 사업의 불필요성 인식

2) 기부제도 운영의 인식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부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기부자를 확대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운영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일본사례 및 전문가들의 자문 내용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운영과 정착을 위해 다음의 6가지 방안들이 요구된다.

우선 기부금 내역의 적극적이고 투명한 공개, 기부금에 대한 지역 현안 문제의 적극적인 활용, 기부자 대상으로 지역사회 소식지와 정보제공, 기부자 대상 지역초청 및 교류 행사 수행, 기부자 대상으로 양질의 답례품 제공, 기부제도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방안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우선 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운영방안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3]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 필요 인식

우선 응답자들은 기부한 기부금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내역의 적극적이고 투명한 공개가 가장 필수적이라 인식하고 있다. 또한 기부금의 지역현안문제의 적극 활용과 함께 양질의 답례품 제공이 제도 지속성을 위한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기부자들은 기부금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보다는 기부행위로 인한 지역의 어려운 영역에 도움이 되었다는 기부행위의 내적 효능감 성취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동기라는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에서 다른 기부제도와는 다른 가장 특징적인 요인으로 기부금 답례품을 거론할 수 있다. 만약 충남지역에서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을 제공한다면 어떤 것을 가장 선호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의 결과는 다음 표 30과 같다.

〈표 30〉 기부금 답례품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복수 선택)

구분	빈도	
지역특산품(농어업 생산, 가공품)	185	지역특산품(농어업 생산, 가공품) 18.1
지역특산품(축산업 생산, 가공품)	72	지역특산품(축산업 생산, 가공품) 7.5
지역 숙박업체 숙박권	46	지역 숙박업체 숙박권 4.2
지역 축제 및 문화행사, 이벤트 초대권	52	지역 축제 및 문화행사, 이벤트 초대권 4.2
지역 테마파크 및 문화시설 이용권	41	지역 테마파크 및 문화시설 이용권 7.5
지역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99	지역에서 통용되는 상품권 18.1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감사장, 감사패	23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감사장, 감사패 4.2
지역 중심지 시설에 기부자 명패부착	20	지역 중심지 시설에 기부자 명패부착 3.7
기타	8	기타 1.5
전체	546	지역특산품(농어업 생산, 가공품) 33.9

우선 충남지역의 특산품중에서 농어업생산품 및 가공품의 답례품 선호가 34%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충남 및 시군 지역에서만 통용되어 활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 18%, 축산업 생산 및 가공품이 13%로 나타났다. 반면 또한 지역체험 및 숙박권이나 테마파크 시설 이용 등의 방문인구를 증가시키는 답례품에 대한 답례품의 인식은 낮아서 제품으로의 답례품에 대한 인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직 일반적으로 답례품에 대한 인식이 지역생산 특산품정도로 파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답례품 개발과 함께 홍보를 통한 인식확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인식조사의 시사점

본 인식조사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충청도민의 이해도 및 기금 운영과 활용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을 충청남도 도민으로 한정하여 실시하였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대한 기부금액 및 규모나 답례품과 같은 인식에 대한 조사 보다, 도내에서 기부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함께 충남 및 기초자치단체로 유입될 기부금에 대한 사업 활용도, 기금 운영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충남에서 내년부터 운영될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충남도민의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에 비해 20-30의 청년층 인지도가 매우 낮아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의 장점에 대한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50대 이상 장년층 고령층 세대에서도 구체적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특히 제도 시행의 목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0-30세대는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과 같은 경제적 요인에 따른 고향사랑기부제의 매력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청년층을 중심으로는 기부참여로 인한 경제적 요인의 효과를 홍보하여 참여하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반대로 장년층 이상의 세대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참여로 인한 고향을 포함하여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과 정책 사업들을 통해 참여를 이끌어내는 홍보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세대간 차별적인 전략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홍보 접근이 요구된다.

둘째, 전체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참여이유로는 고향을 포함한 지역활성화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답례품이나 세금공제 혜택보다 응답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추후 기부제도의 운영에서 핵심적인 전략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지속적 확산과 기부금 유입을 위해 답례품을 강조하고 있으나, 기부자들은 기부금에 대한 지역활성화의 효과적인 활용에 대해 관심이 많음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소득수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참여 목적이 구분된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홍보와 참여독려의 전략이 구분될 필요가 있다. 300만원 미만의 계층에서는 답례품을 받을 기회 확대 및 세금공제의 경제적 동기가 비교적 큰 반면 600만원 이상 계층에서는

지역활성화와 마음에 드는 지역 응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기부행위에 대한 내적동기의 원인이 높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홍보나 기부금 활용의 측면에서도 이러한 인식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인해 유입된 기부금의 활용적 측면에서 응답자들은 교육사업 및 인재양성활동과 함께 보건의료 지원사업, 지역 내 출산·돌봄·육아 지원사업, 노인돌봄, 복지사업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기부금을 활용한 정책사업으로 지역내 돌봄, 복지, 교육지원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부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들에 대한 필요성의 응답에서는 기부금 내역의 적극적이고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기부금의 지역 현안문제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과 함께 기부자 대상으로 양질의 답례품 제공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부제도의 확산과 반복적 기부행위 유도를 위해서는 우선 기부내역과 함께 기부금의 활용처에 대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부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와 함께 기부자의 의사에 따른 지역활성화 사업에 활용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도만의 특징인 답례품에 대해 법적 한도인 기부금의 30%안에서 어떠한 양질의 답례품을 발굴하고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5장 고향사랑기부제도 충남 재정유입효과 검토

1. 분석 개요

본 장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충남도가 얼마만큼의 재정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추정해보도록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도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축적된 기부액 데이터를 통하여 추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실측 데이터에 근거한 추계가 불가능한 제도 시행 전 단계에서는 논리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 재정유입 효과를 따져보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충남도가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얻게 되는 재정적 효과를 추정한다는 것은 몇 명의 기부자가, 어떤 수준의 기부의사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금액을, 어디에 기부하는 지를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수적인 영향, 예컨대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원 이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실질적인 재정유입 효과를 따져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기 배경에서 충남도의 고향사랑기부금 규모와 관련된 재정유입 효과를 아래와 같이 분석해보도록 한다. 우선 분석의 시간·공간적 대상은 2020년 충남과 기타 시도로 정한다. 시군의 경우 추계에 필요한 통계데이터를 구득하기 용이하지 않아 분석 대상에서 제외였다. 또한 추계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득함에 있어 최근 시점이면서도 비교적 완비된 데이터를 구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간범위를 2020년으로 정하였다. 단, 자료 구득의 한계로 인해 1인당 기부금액의 경우 2019년을 기준으로 추정하며, 현금기부인구에 대한 자료는 2021년 자료를 활용한다. 우선, 1인당 기부금액의 경우 전체적인 시간범위와 1년의 시차가 존재하나 그 차가 크지 않으며,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경제상황이 경색되었음을 고려하면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의 1인당 기부금액이 크게 증가하였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현금기부자 자료의 경우, 해당 분야의 통계청 사회조사가 홀수 해에 2년마다 실시되어 2021년 자료는 확보 가능하나 2020년

자료의 확보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당 자료의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21년 자료를 활용하기로 한다. 한편, 분석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충남에 고향 사랑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부인구와 1인당 기부금을 추정한다. 특히 기부인구를 추정함에 있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분하여 추정한다. 첫 번째는 출향민들의 애향심이 클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충남의 출향민 수와 국민의 평균적인 현금기부 수준을 기준으로 한 기부인구 추정이다. 두 번째는 일정 수준의 경제력이 있으며 고향사랑 기부금의 직접적 혜택인 세액공제가 가능한 충남 외 거주 지역민들이, 충남에 얼마나 기부할 의향이 있는지를 근거로 한 기부인구 추정이다. 한편, 1인당 기부금의 경우 지방행정연구원(2019)과 행정안전부(2022)가 설문조사를 통해 추정한 기부금액을 활용하였다. 위를 통해 충남도가 확보할 수 있는 1차적인 자원 확충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충남도가 아닌 다른 시도에 기부할 의향이 있는 인원과 금액을 산정하였다. 충남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지방소득세 금액도 추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고 소득세 공제가 이뤄짐으로 인해 중앙정부로부터의 보통교부세가 감액될 수 있는 바, 충남도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보통교부세 감소효과를 추정해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고향사랑 기부제의 시행을 통해 충남도가 얻을 수 있는 전반적인 재정효과를 추정해보도록 한다. 본 분석은 충남도에 초점을 맞춘 것이니만큼, 충남도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재정유입 효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전체 시도 측면에서 살펴본 재정격차 완화효과 등은 검토하지 않았다.²⁾

2)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임정빈 외(2017)의 경우, 재원유입효과에 해당되는 재원확충효과와 시도간 재정격차 완화효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경우 충남도를 대상으로 하므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 재정격차 완화효과 분석은 의의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2. 시나리오 도출 및 시나리오별 기부인원·금액 추정

1) 분석 시나리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경우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어느 정도의 금액을 기부할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정 수준의 구체성을 담보한 시나리오들을 작성한 후, 해당 시나리오대로 제도 활용이 이뤄질 경우 유입되는 재원의 양이 얼마인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향후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유입된 재원을 어떻게 관리할 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적절히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통계청 인구총조사,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등 공신력을 담보한 여러 데이터를 통해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충남도 내외의 기부인원과 기부금액, 보통교부세액을 추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기부인원 추정

우선 기부인원의 추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부인원을 추정한다. 우선, 기부인원의 추정을 함에 있어 충남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충남 출생 출향주민의 일정 비율이 고향인 충남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추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일반인의 비하여 출향민들이 애향심이 클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다. 다음으로 출향민이 아닌 경제력을 갖춘 국내 거주 주민 중 충남도에 기부의사를 가진 주민들의 수를 추정해보도록 한다. 충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충남도에 가지고 있는 기부의사에 대한 지방행정연구원(2019)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기부인원을 추정하도록 한다.³⁾ 지방행정연구원은 2019년 전국 1,002명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여러 쟁점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설문규모가 다소 적은 편이지만 현 시점까지 지역별 기부의향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검토한 유일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충남도에 대한 전국민의 기부의향 조사결과를 활용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두 측면의 기부인원 추정에 있어 각 측면의 주민들이 경제

3) 2022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고향사랑기부제」 지자체 시행 준비 설명회>자료에서도 지방행정연구원(2019)의 조사결과 활용을 제안한 바 있다.

활동인구, 종합소득세 납세자, 현금기부를 하였거나 기부의향이 있는 지에 해당하는 여부를 검토한다. 이는 각 부문 주민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역량을 갖추고,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의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으며, 실제 현금기부를 한 적이 있거나 할 의향이 있을 경우 고향사랑기부금 납부자가 될 가능성이 클 거라는 가정 하에서 이뤄진 판단이다. 위의 경제역량에 대한 가정은 홍근석·임정빈(2019)의 연구에서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상기 전제를 그대로 활용하며 충남에 사는 타 시도 출향민들이 자신의 고향에 기부를 하거나, 출향민이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갖춘 국민이 충남도 외 다른 시도에 기부를 하는 경우에 대한 인원도 추정해보도록 한다. 즉, 충남도 외 타 시도에 대한 기부인원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이후, 충남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지방소득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두 측면에 대해 각각 세 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출향민을 대상으로 한 시나리오는 충남의 출향민이자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주민수(1안), 충남의 출향민이자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주민수(2안), 충남의 출향민이자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주민수(3안)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는 충남의 재정유입 측면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또한 위 세 가지 시나리오 부수되는 시나리오로, 위와 같은 전제에서 타 시도에 기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충남 거주 타시도 출향민의 수를 추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 시나리오의 해당하는 주민 100%가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할 것이라는 비현실적 가정을 배제하고 시나리오들의 주민수를 보다 현실성 있게 추정하기 위해, 2021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도출된 현금기부 비율(13세 이상 취업자 중 25.6%)을 기준으로 삼아 추정을 실시하였다. 통계청 사회조사의 현금기부 비율을 살펴볼 때 0-30% 비율의 인구수준에서 시나리오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해당 범위의 추정 및 해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편, 일정 수준의 경제력이 있으며 고향사랑 기부금의 직접적 혜택인 세액공제가 가능한 충남 외 거주 지역민들이, 충남에 얼마나 기부할 의향이 있는지를 근거로 한 세 가지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충남 제외 전국 경제활동인구 중 충남에 기부하고자 하는 주민수(4안), 충남 제외 전국 근로소득 납세인구 중 충남에 기부하고자 하는 주민수(5안), 충남 제외 전국 종합소득 납세인구 중 충남에 기부하고자 하는 주민수(6안)의 세 가지 안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위 세 가지 시나리오 부수되는 시나리오로,

위와 같은 전제에서 충남 거주 경제활동인구, 근로소득 납세인구, 종합소득 납세인구 중 충남 외 타시도에 기부의회향 있는 인구수를 추정하였다. 이뿐 아니라 이들 세 시나리오의 해당하는 주민 100%가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할 것이라는 비현실적 가정을 배제하고 시나리오들의 주민수를 보다 현실성 있게 추정하기 위해 지방행정연구원(2019)의 설문조사 결과를 준용하였다. 해당 설문조사에서 제시한 충남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의향을 가진 주민 비율(9.1%)을 기준으로 삼아 0-10% 비율의 인구수준에서 시나리오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해당 범위의 추정 및 해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편, 상기 시나리오 작성을 위해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 및 전수부문, 2021년 국세통계연보,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2021년 통계청 사회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20%표본부문 자료의 경우 표본조사의 특징 상 전수조사의 집계 인구와 다소 차이가 나타남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충남의 출향민의 경우 2020년 기준 주민등록인구 중에서 충남에서 출생하였으나 현재의 거주지가 충남이 아닌 사람들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충남에서 출생하였으나 충남이 아닌 국내 다른 시도에 살거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020년을 기준으로 충남 거주 의 출향주민은 846,635명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충남의 전체 출생인원인 2,088,055명 대비 40.54% 수준이다. 이 수치는 전국 평균에 비해 약간 낮은 편이며,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 10번째에 해당한다. 이 출향 주민 수를 기준으로 하여 도출된 3가지 시나리오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재정유입 측면에서 살펴본 시나리오 1안의 기부인구 추정결과를 보면, 출향주민 중 경제활동인구의 5%에서 30%에 해당하는 34,295-205,772명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나리오 2안의 경우, 충남의 출향민이자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주민수의 5%에서 30%에 해당하는 11,259-67,555명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3안의 경우, 충남의 출향민이자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주민수의 5%에서 30%에 해당하는 3,680-22,079명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자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재정유출의 측면에서 살펴본 시나리오 1-3안의 기부인원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1안의 기부인구 추정결과를 보면, 충남에 거주하는 타시도 출향주민이면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주민수의 5%에서 30%에 해당하는 38,434-230,607명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나리오 2안의 경우, 충남에 거주하는 타시도

출향민이자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면서, 동시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주민수의 5%에서 30%에 해당하는 12,618-75,708명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3안의 경우, 충남에 거주하는 타 시도 출향민이자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면서, 종합소득세 또한 납부하는 주민수의 5%에서 30%에 해당하는 4,124-24,744명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자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나리오 1-3안의 결과를 종합하면, 각각의 안 모두 재정유입과 관련된 기부인구수가 재정유출과 관련된 기부인구수보다 작게 추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충남 출생의 출향인구에 비해 타시도에서 출생하여 현재 충남에서 거주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31〉 충남 및 타시도 출향주민 산정결과(2020년 기준)

(단위 : 명)

시도	출생주민 총수(A)	출생지 거주 주민수(B)	출향주민수(C=A-B)	출향주민비율
충남	2,088,055	1,241,620	846,635	40.54%
서울	9,230,846	4,460,667	4,770,179	51.68%
부산	3,289,077	1,837,017	1,452,060	44.15%
대구	2,363,803	1,326,477	1,037,326	43.88%
인천	2,846,663	1,218,200	1,628,463	57.21%
광주	1,440,811	736,689	704,122	48.87%
대전	1,462,072	658,949	803,123	54.93%
울산	1,106,012	539,827	566,185	51.19%
세종	346,613	69,776	276,837	79.87%
경기	12,949,776	5,134,102	7,815,674	60.35%
강원	1,491,535	987,521	504,014	33.79%
충북	1,578,746	991,913	586,833	37.17%
전북	1,762,749	1,414,205	348,544	19.77%
전남	1,745,180	1,385,752	359,428	20.60%
경북	2,571,964	1,865,872	706,092	27.45%
경남	3,238,125	2,241,576	996,549	30.78%
제주	649,789	448,987	200,802	30.90%
전국	50,161,816	26,559,150	2360,2666	47.05%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국세청(2021)

주1.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부분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국 및 지역별 실제 인구수와는 다소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주2. 출향주민은 출생지와 다른 시도에 살거나 해외에 살고 있는 주민을 합한 것임.

〈표 32〉 시나리오별 기부인구 추정 : 충남도 재정유입 시나리오
(충남 출향민 기준, 2020년)

(단위 : 명, %)

구분	시나리오 1안	시나리오 2안	시나리오 3안	
	출향주민 중 경제활동인구	출향출향주민 중 경제활동인구이면서 근로소득 납세인구(출향주민 중 경제활동인구X근로소득 납세자 비율)	출향출향주민 중 경제활동인구이면서 종합소득 납세인구(출향주민 중 경제활동인구X종합소득 납세자 비율)	
충남 출향주민수 ^{주1}	846,635			
출향주민 중 경제활동 인구수 ^{주1}	685,905(전체 출향주민 대비 81.01%)			
경제활동인구 대비 근로소득 납세자 비율 ^{주2} (전국평균치 활용)	-	32.83%	-	
경제활동인구 대비 종합소득 납세자 비율 ^{주2} (전국평균치 활용)	-		10.73%	
시나리오별 기부인구 적용 비율 및 금액	5%	34,295	11,259	3,680
	10%	68,591	22,518	7,360
	15%	102,886	33,777	11,040
	20%	137,181	45,037	14,720
	25% ^{주3}	171,476	56,296	18,399
	30%	205,772	67,555	22,079
	35%	240,067	78,814	25,759
	40%	274,362	90,073	29,439
	45%	308,657	101,332	33,119
	50%	342,953	112,591	36,799
100%	685,905	225,183	73,598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국세청(2021)

주1. 출향주민수와 출향주민 중 경제활동 인구수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부분의 자료를 활용함.

주2.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납세자 비율은 모두 결정세액이 있는 사람 중 결정세액이 0원인 사람을 제외한 수치이며, 종합소득 납세자 중 근로소득을 중복하여 납세한 사람은 종합소득 납세자 수에서 제외하여 계산함.

주3. 2021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현금기부 비율은 25.6%로 나타났으며, 고향사랑 기부금 역시 현금 기부의 일종인 만큼 해당 수준과 유사한 범위 내에서 기부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임.

〈표 33〉 시나리오별 기부인구 추정 : 충남도 재정유출 시나리오
(충남 거주 타시도 출향민 기준, 2020년)

(단위 : 명, %)

구분	시나리오 1안	시나리오 2안	시나리오 3안	
	충남 거주·타시도 출향주민 중 경제활동 인구	충남거주·타시도 출향주민 중 경제활동인구이면서 근로소득 납세인구(충남 거주·타시도 출향주민 중 경제활동 인구X근로소득 납세자 비율)	충남거주·타시도 출향주민 중 경제활동인구이면서 종합소득 납세인구(충남 거주·타시도 출향주민 중 경제활동 인구X종합소득 납세자 비율)	
충남 거주·타시도 출향주민 수 ^{주1}	935,016			
충남 거주·타시도 출향주민 중 경제활동 인구수 ^{주2}	768,689(전체 충남 거주 타시도 출향주민 대비 82.21%)			
경제활동인구 대비 근로소득 납세자 비율 ^{주3} (전국평균치 활용)	-	32.83%	-	
경제활동인구 대비 종합소득 납세자 비율 ^{주3} (전국평균치 활용)	-		10.73%	
시나리오별 기부인구 적용 비율 및 금액	5%	38,434	12,618	4,124
	10%	76,869	25,236	8,248
	15%	115,303	37,854	12,372
	20%	153,738	50,472	16,496
	25% ^{주4}	192,172	63,090	20,620
	30%	230,607	75,708	24,744
	35%	269,041	88,326	28,868
	40%	307,476	100,944	32,992
	45%	345,910	113,562	37,116
	50%	384,345	126,180	41,240
	100%	768,689	252,361	82,480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국세청(2021)

주1. 2020년 충남주민 총수에서 현재 충남에 거주하는 충남 출생자 수를 뺀 수치임.

주2. 충남 거주·타시도 출향주민 중 경제활동 인구수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20% 표본 및 전수기준표의 자료를 활용함.

주3.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납세자 비율은 모두 결정세액이 있는 사람 중 결정세액이 0원인 사람을 제외한 수치이며, 종합소득 납세자 중 근로소득을 중복하여 납세한 사람은 종합소득 납세자 수에서 제외하여 계산함.

주4. 2021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3세 이상 취업자의 현금기부 비율은 25.6%로 나타났으며, 고향사랑 기부금 역시 현금 기부의 일종인 만큼 해당 수준과 유사한 범위 내에서 기부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임.

두 번째 부분의 기부인원 추정 시나리오에서는 출향민이라는 다소 좁은 범위의 시나리오가 아닌, 보다 완화된 인구가정에서의 시나리오를 도출해보도록 한다. 이 배경에서 충남 거주민을 제외한 전국 경제활동인구, 근로소득 납세인구, 종합소득 납세인구 중 충남에 기부의향이 있는 인구를 기준으로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기부인구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유입 측면에서 시나리오 4안의 기부인구 추정결과를 보면, 충남 제외 전국 경제활동인구 중 충남에 기부하고자 하는 주민수의 1%에서 10%에 해당하는 357,811-3,578,108명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나리오 5안의 경우, 충남 제외 전국 근로소득 납세인구 중 충남에 기부하고자 하는 주민수의 1%에서 10%에 해당하는 117,634-1,176,343명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6안의 경우, 충남 제외 전국 종합소득 납세인구 중 충남에 기부하고자 하는 주민수의 1%에서 10%에 해당하는 46,160-461,601명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자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재정유출의 측면에서 살펴본 시나리오 4-6안의 기부인원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4안의 기부인구 추정결과를 보면, 충남 거주 경제활동인구 중 충남 외 시도에 기부하고자 하는 주민수의 1%에서 10%에 해당하는 15,067-150,666명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나리오 5안의 경우, 충남 거주 근로소득 납세인구 중 충남 외 시도에 기부하고자 하는 주민수의 1%에서 10%에 해당하는 4,764-47,643명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6안의 경우, 충남 거주 종합소득 납세인구 중 충남 외 시도에 기부하고자 하는 주민수의 1%에서 10%에 해당하는 1,749-17,485명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자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나리오 4-6안의 결과를 종합하면, 1-3안과는 달리 각각의 안 모두 재정유입과 관련된 기부인구수가 재정유출과 관련된 기부인구수보다 많게 추정됨을 확인할 수 있다. 4-6안을 활용함으로써 1-3안에 비해 보다 긍정적인 상황을 가정하며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한 충남의 재정유입 효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시나리오 4-6안에 대한 자세한 기부인원 추정규모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4〉 시나리오별 기부인구 추정 : 충남도 재정유입 시나리오
(충남 제외 전국 경제활동인구 중 충남에 기부의향 있는 인구 기준, 2020년)

(단위 : 명, %)

구분	시나리오 4안	시나리오 5안	시나리오 6안	
	충남 제외 전국 경제활동인구 중 충남에 기부하고자 하는 인구	충남 제외 전국 근로소득 납세인구 중 충남에 기부하고자 하는 인구	충남 제외 전국 종합소득 납세인구 중 충남에 기부하고자 하는 인구	
전국 경제활동 인구 (충남 제외)	35,781,076	-	-	
전국 근로소득 납세자 수 ^{주1} (충남 제외)	-	11,763,431	-	
전국 종합소득 납세자 수 ^{주1} (충남 제외)	-	-	4,616,011	
시나리오별 기부인구 적용 비율 및 금액	1%	357,811	117,634	46,160
	2%	715,622	235,269	92,320
	3%	1,073,432	352,903	138,480
	4%	1,431,243	470,537	184,640
	5%	1,789,054	588,172	230,801
	6%	2,146,865	705,806	276,961
	7%	2,504,675	823,440	323,121
	8%	2,862,486	941,074	369,281
	9.1% ^{주2}	3,256,078	1,070,472	420,057
	10%	3,578,108	1,176,343	461,601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국세청(2021), 지방행정연구원(2019)

주1.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납세자 비율은 결정세액이 있는 사람 중 결정세액이 0원인 사람을 제외한 수치이며, 종합소득 납세자 중 근로소득을 중복하여 납세한 사람은 종합소득 납세자 수에서 제외하여 계산함. 단, 종합소득 납세자 수의 경우 자료 구득의 한계로 결정세액이 0원인 사람을 일부 포함하여 계산함.

주2. 국민 1,002명을 표본으로 한 지방행정연구원(2019)의 연구에 따르면, 충남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설문대상자의 비율이 9.1%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해당 수치를 본 분석에 직접 활용함.

〈표 35〉 시나리오별 기부인구 추정 : 충남도 재정유출 시나리오
(충남 거주 경제활동인구 중 충남 외 시도에 기부유향 있는 인구 기준, 2020년)

(단위 : 명, %)

구분	시나리오 4안	시나리오 5안	시나리오 6안	
	충남 거주 경제활동인구 중 충남 외 시도에 기부하고자 하는 인구	충남 거주 근로소득 납세인구 중 충남 외 시도에 기부하고자 하는 인구	충남 거주 종합소득 납세인구 중 충남 외 시도에 기부하고자 하는 인구	
충남 거주 경제활동 인구	1,506,660	-	-	
충남 근로소득 납세자 수 ^{주1}	-	476,432	-	
충남 종합소득 납세자 수 ^{주1}	-	-	174,852	
시나리오별 기부인구 적용 비율 및 금액	1%	15,067	4,764	1,749
	2%	30,133	9,529	3,497
	3%	45,200	14,293	5,246
	4%	60,266	19,057	6,994
	5%	75,333	23,822	8,743
	6%	90,400	28,586	10,491
	7%	105,466	33,350	12,240
	8%	120,533	38,115	13,988
	9.1% ^{주2}	137,106	43,355	15,912
	10%	150,666	47,643	17,485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국세청(2021), 지방행정연구원(2019)

주1.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납세자 비율은 결정세액이 있는 사람 중 결정세액이 0원인 사람을 제외한 수치이며, 종합소득 납세자 중 근로소득을 중복하여 납세한 사람은 종합소득 납세자 수에서 제외하여 계산함. 단, 종합소득 납세자 수의 경우 자료 구득의 한계로 결정세액이 0원인 사람을 일부 포함하여 계산함.

주2. 국민 1,002명을 표본으로 한 지방행정연구원(2019)의 연구에 따르면, 충남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설문대상자의 비율이 9.1%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해당 수치를 본 분석에 직접 활용함.

② 기부금액 추정

개인이 지불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즉 1인당 고향사랑 기부금을 추정함에 있어 현실 적합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안착하는 데 있어 가급적 기부금액의 규모가 큰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만약 해당 금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할 경우 잘못된 기부 규모를 추정하게 되어 오히려 제도의 안착과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만다. 본 분석에서는 임정빈 외(2017), 홍근석·임정빈(2019), 남황우(2017), 행정안전부(2022)에서의 논의를 종합하여 1인당 기부금액을 추정 하도록 한다.

우선, 기부금액을 추정함에 있어 현 제도와 유사제도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안부(2022)에 따르면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에서 기부금 전액이 세액 면제 되고 10만원 이상부터는 초과되는 기부금에 대해 16.5%가 세액 공제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향사랑 기부제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정치자금 기부제도인 정치자금 기탁금 제도가 있다. 정치자금 기탁금 제도 역시 세액공제 혜택을 포함하고 있는데, 10만원까지는 기탁금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그 이상부터 초과금에 대해 차등적으로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다. 임정빈 외(2017)에 따르면 2015년 정치자금 기탁금의 99.8%가 10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사실상 전액 세액 공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기부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분석한 남황우(2017)의 연구 역시 비슷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세액공제의 범위가 다르기는 하나, 기부자가 세액을 중심으로 답례품의 가격까지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손해 보지 않는 범위에서 기부가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홍근석·임정빈(2019)이 설문조사를 통해 유추한 1인당 고향사랑기부금 규모 역시 위의 주장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위 연구가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1,002명을 대상으로 추정한 1인당 고향사랑기부금 규모는 99,146원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 시민들 역시 자신이 기부한 금액이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답례품 등을 감안할 때 경제적으로 최대한 이익인 구간에서 기부금의 규모를 선정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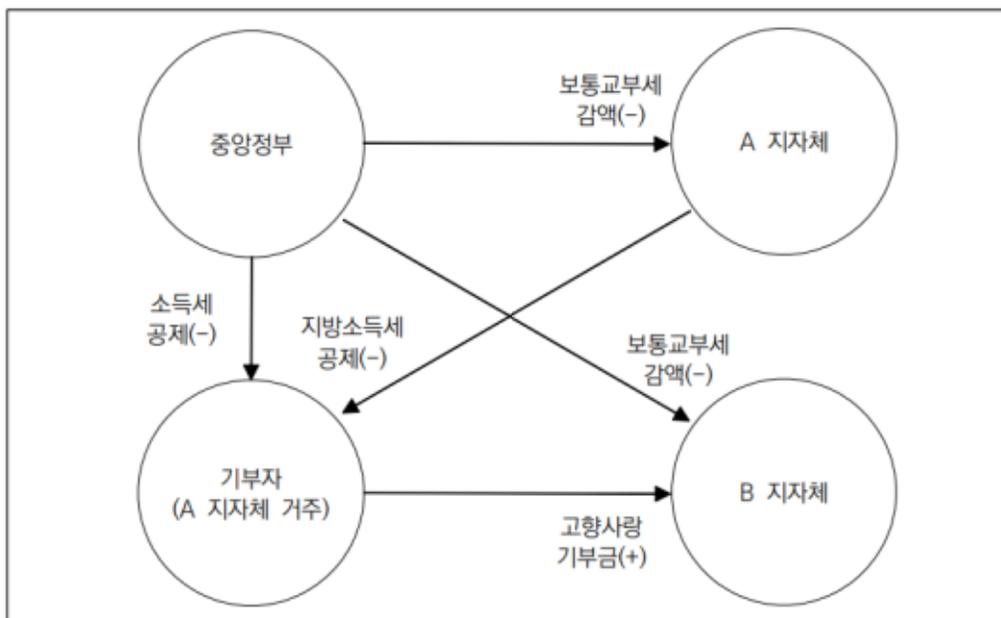
위 사안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홍근석·임정빈(2019)이 제안한 99,146원을 평균적인 1인당 고향사랑기부금액으로 산정하고 충남에 대한 전체 기부금액을 추정해보기로 한다. 현재 행정안전부(2022)에서도 개별 지역의 고향사랑 기부금 규모 추정에 있어 위 금액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해당 금액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통해 충남도의 재원이 얼마나 확충되는 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시나리오별 기부인원과 1인당 기부금액을 곱하여 충남도의 시나리오별 기부금액을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도출한 1-6안의 시나리오별로 1인당 99,146원의 기부금액을 곱하여 충남도에서 확보 가능한 기부금액을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대한 세액공제를 추정해보았다. 현재의 고향사랑기부 제도는 1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해 100%의 세액공제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 중 91%가 중앙정부에 납부하는 소득세, 9%가 현 거주지에 납부하는 지방소득세이다. 우선 소득세 공제액의 경우 충남도가 받게 될 보통교부세를 변화하기 위해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역 상황에 맞게 안분하게 되는데, 주민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함에 따라 내국세에 해당하는 소득세액에 공제되며 결국 지역의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게 되는데 일조하게 된다.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에 따른 충남의 보통교부세 감소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우선 전국을 대상으로 소득세 감소분을 측정하였다. 시나리오 1-3안의 경우 전국의 출향주민 중 경제활동인구, 전국의 출향주민 중 경제활동인구이면서 근로소득을 납세하는 인구, 전국의 출향주민 중 경제활동인구이면서 종합소득을 납세하는 인구의 25.6%(취업자 중 현금기부자 비율)를 대상으로 90,223원(기부금의 91%)의 소득세 공제액을 곱하여 소득세 감소분을 구하였다. 시나리오 4-6안의 경우 전국 경제활동인구 중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를 희망하는 인구, 전국 근로소득 납세 인구 중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를 희망하는 인구, 전국 종합소득 납세인구 중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를 희망하는 인구의 4.59%(지방행정연구원(2019) 설문에서 실시한 17개 시도에 대한 기부의향 조화평균치)를 대상으로 90,223원(기부금의 91%)의 소득세 공제액을 곱하여 소득세 감소분을 구하였다. 이후 각 시나리오에 대해 2020년 내국세 총액에서 소득세 감소분을 뺀 후 19.24%를 곱해 전국 차원의 보통교부세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충남도에 대한 2020년 기준 보통교부세 배분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배분을 실시, 최종적으로 감소된 형태의 보통교부세액을 도출하였다. 지방소득세 공제액의 경우, 기부자의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방소득세가 공제되는 현 구조를 감안하여, 시나리오 1-6안의 재정유출 인원들에 대해 8,923원(고향사랑 기부금의 9%)을 곱하여 구하였다. 이상 기부

재정효과 추정에 사용한 기준들은 행정안전부(2022)에 따른 것이다. 종합해 볼 때, 충남도 입장에서는 시나리오별 기부금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자원 확충이 있을 수 있으나, 충남도에서 타시도로 유출되는 지방소득세와 보통교부세 감소액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통한 자원유입의 효과를 추정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래의 그림을 통해서 이 구조를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다.



자료 : 임정빈 외(2017: 76)

[그림 24]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이후의 자원구조 변화

3. 시나리오별 재정유입 효과 추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충남도를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함에 따라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질적인 재정유입 효과를 분석한다. 즉, 충남도에 유입, 유출되는 고향사랑 기부금(+금액) 및 지방소득세 공제액(-금액), 교부세 감소액(-금액)을 종합하여 충남도 입장에서의 순유입되는 재원이 얼마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시나리오1-3안을 통해 알아본 충남도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재원유입 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기부인원 추정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을 가진 충남 출향주민의 수가 같은 조건을 가진 충남에서 거주하는 타 시도 출향주민의 수보다 작다는 점이 재원유입 효과에 크게 반영되었다. 물론 시나리오 1-3안에서 충남에서 받은 고향사랑기부금액이 충남에서 거주하는 타 시도 출향주민이 타 시도에 기부함에 따라 줄게 되는 지방소득세 공제액보다는 많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전국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나타나는 소득세의 감소현상은 충남도가 받게 되는 보통교부세액의 감소로 연결되며, 이 보통교부세 감소분의 영향을 같이 고려할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의 재원유입 효과는 오히려 부(-)적일 수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한편, 시나리오의 적용 비율을 고려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1-3안 모두 앞서 언급한 일반적인 수준의 현금기부 비율(25.6%) 수준에서 실질적인 재원유입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순유출 효과가 클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나리오 1-3안 모두 기부인구 적용 비율이 40% 수준으로 증가하여야 정(+)의 재정유입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들의 전국 평균 현금기부 비율이 약 25%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출향민을 기준으로 한 시나리오에서 긍정적인 재정유입 효과를 손쉽게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게 보인다.

물론, 1-3안의 시나리오는 충남도에 유입되고 충남도로부터 유출되는 기부인원이 같은 비율로 도출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이러한 유입·유출의 시나리오가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재원유입과 유출에 있어 기부인원이 같은 비율로 적용된다는 가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이 출향민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본적인 인구적 속성은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출향인구수 측면에 있어 타 시도에 비해 다소 불리한 위치에 있는 만큼, 충남도가

실제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함에 있어 전국의 평균적인 수준을 넘어 출향민의 적극적인 기부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시나리오 1-3안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유입 효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6〉 충남도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재원유입 효과(시나리오1-3안)

(단위 : 억원)

구분		시나리오 1안				시나리오 2안				시나리오 3안			
		고향 사랑 기부금	지방 소득세 공제액	교부세 감소액	합계	고향 사랑 기부금	지방소득세 공제액	교부세 감소액	합계	고향 사랑 기부금	지방소득세 공제액	교부세 감소액	합계
시나리오 별 기부인구 적용 비율 및 금액	5%	34.0	3.4	232.1	-201.5	11.2	1.1	76.2	-66.1	3.6	0.4	24.9	-21.7
	10%	68.0	6.9		-171	22.3	2.3		-56.2	7.3	0.7		-18.3
	15%	102.0	10.3		-140.4	33.5	3.4		-46.1	10.9	1.1		-15.1
	20%	136.0	13.7		-109.8	44.7	4.5		-36.0	14.6	1.5		-11.8
	25%	170.0	17.1		-79.2	55.8	5.6		-26.0	18.2	1.8		-8.5
	30%	204.0	20.6		-48.7	67	6.8		-16.0	21.9	2.2		-5.2
	35%	238.0	24		-18.1	78.1	7.9		-6.0	25.5	2.6		-2
	40%	272.0	27.4		12.5	89.3	9		4.1	29.2	2.9		1.4

다음으로 시나리오4-6안을 통해 살펴본 충남도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재원유입 효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 시나리오 4-6안 모두 충남도의 재원유입에 있어 순증효과를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시나리오 4안의 경우, 모든 기부인구 적용 비율구간(1-10%)에서 정(+의 재원유입 효과가 나타났다. 각 비율구간에서 고향사랑기부금액은 약 354.8 -3,547.6억원 규모로 나타났으며, 지방소득세 공제액은 같은 구간에서 1.3-13.4억원 규모로 상당히 미미한 편으로 나타났다. 교부세 감소액은 약 85.8억원 수준이었으며, 앞서 언급한 재원유입·유출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1-10%의 기부인구 적용비율구간

에서 267.7-3,448.4억원의 재원유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한편, 시나리오 5안의 경우 역시 4안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부인구 적용 비율구간(1-10%)에서 정(+의 재원유입 효과가 나타났다. 각 비율구간에서 고향사랑기부금액은 약 116.68-1,166.3억원 규모로 나타났으며, 지방소득세 공제액은 같은 구간에서 0.4-4.3억원 규모로 상당히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교부세 감소액은 약 28.2억원 수준이었으며, 모든 재원유입·유출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1-10%의 기부인구 적용비율구간에서 88.0-1,133.8억원의 재원유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6안의 경우, 앞서 살펴본 4, 5안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부인구 적용 비율구간(1-10%)에서 정(+의 재원유입 효과가 나타났다. 각 기부인구 비율구간에서의 고향사랑기부금액이 약 45.8-457.7억원 규모로 나타났으며, 지방소득세 공제액은 같은 구간에서 0.2-1.6억원 규모로 굉장히 작게 나타났다. 한편, 교부세 감소액은 약 9.2억원 수준이었으며, 모든 재원유입·유출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1-10%의 기부인구 적용비율구간에서 36.4-446.9억원의 재원유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었다.

시나리오 4-6안의 경우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재원유입 효과가 기대되었다. 특히, 충분한 샘플수를 확보하여 설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나, 지방행정연구원(2019)에서 제안한 연구결과가 그대로 적용되어 시나리오별 기부인구 적용비율이 9-10% 수준에 도달할 경우 최소 405.9억원에서 최대 3,448.4억원에 달하는 상당히 큰 재원확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살펴볼 때, 충남도는 일정 수준의 경제력을 갖춘 전국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기부를 독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출향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아예 모색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출향민 역시 상당히 높은 기부 잠재력을 가진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나리오 1-3안과 4-6안을 비교해 볼 때, 4-6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원유입 효과가 훨씬 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충남도가 중점적으로 모색해야 할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홍근석·염명배(2019), 남황우(2017)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출향민들의 고향에 대한 기부의향이 크게 높지는 않으며,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고향에 대한 사랑보다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만족도가 특정 지방자치 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하게 되는 주요 동기라고 설명하고 있다.

〈표 37〉 충남도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재원유입 효과(시나리오4-6안)

(단위 : 억원)

구분		시나리오 4안				시나리오 5안				시나리오 6안			
		고향 사랑 기부금	지방 소득세 공제액	교부세 감소액	합계	고향 사랑 기부금	지방 소득세 공제액	교부세 감소액	합계	고향 사랑 기부금	지방 소득세 공제액	교부세 감소액	합계
시나리오 별 기부인구 적용 비율 및 금액	1%	354.8	1.3	85.8	267.7	116.6	0.4	28.2	88.0	45.8	0.2	9.2	36.4
	2%	709.5	2.7		621.0	233.3	0.9		204.2	91.5	0.3		82.0
	3%	1064.3	4		974.5	349.9	1.3		320.4	137.3	0.5		127.6
	4%	1419	5.4		1,327.8	466.5	1.7		436.6	183.1	0.6		173.3
	5%	1773.8	6.7		1,681.3	583.1	2.1		552.8	228.8	0.8		218.8
	6%	2128.5	8.1		2,034.6	699.8	2.6		669.0	274.6	0.9		264.5
	7%	2483.3	9.4		2,388.1	816.4	3		785.2	320.4	1.1		310.1
	8%	2838	10.8		2,741.4	933	3.4		901.4	366.1	1.2		355.7
	9.1% ^{주1}	3228.3	12.2		3,130.3	1,061.3	3.9		1,029.2	416.5	1.4		405.9
	10%	3547.6	13.4		3,448.4	1,166.3	4.3		1,133.8	457.7	1.6		446.9

주1. 지방행정연구원(2019)에서 제시하는 충남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 설문대상자의 비율이 9.1%이기 때문에 해당 수치를 분석에 직접 활용함.

4. 소결

본 장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부인구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의 총 여섯 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시나리오별 기부인구를 산정하였으며, 면밀한 선행연구를 통해 1인당 고향사랑 기부금액을 추정하였다. 기부인구의 추정에 있어 첫 번째는 다음과 같다. 우선, 출향민들의 애향심이 클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충남의 출향민 수와 국민의 평균적인 현금기부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세 개의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시나리오별 기부인구를 추정하였다. 둘째로 일정 수준의 경제력이 있으며 고향사랑 기부금의 직접적 혜택인 세액공제가 가능한 충남 외 거주 지역민들이, 충남에 얼마나 기부할 의향이 있는지를 근거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시나리오별 기부인구를 추정하였다. 1인당 기부금액 추정에 있어서는 현 고향사랑 기부제도와 유사제도를 비교 검토하고, 지방행정연구원(2019)과 행정안전부(2022)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도출한 금액(99,146원)이 제도 검토 결과와 부합하는 금액 수준임을 확인한 후, 해당 금액을 본 연구의 1인당 고향사랑 기부 금액으로 산정하였다.

한편, 기부인구와 1인당 기부금액을 근거로 하여 두 개 부문 총 여섯 개의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한 결과, 충남의 출향인구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첫 번째 부문의 시나리오 1-3안은 재원유입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향인구수 측면에 있어 충남이 타 시도에 비해 다소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충남도가 실제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함에 있어 전국의 평균적인 수준을 넘어 출향민의 적극적인 기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정 수준의 경제력을 갖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부문의 시나리오 4-6 안의 경우 재원유입 효과가 출향민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보다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향후 충남도는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그 공간적 대상을 확대하여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기부를 독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 분석결과는 출향민들의 고향에 대한 기부의향이 그리 크지 않으며, 고향 사랑 기부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고향에 대한 사랑보다는 세액공제와 답례품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만족도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납부하게 되는 주요 동기라고 설명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하지만 본 기부금액은 충청남도라는 지역에 기부한다는 가정으로 수행된 것이기 때문에 상기 제시된 금액은 충남 및 15개 시군을 모두 합친 금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15개 시군 및 충청남도가 각자 활용할 수 있는 기부금액은 이를 1/16(충남+15개 시군)로 나눈 금액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재정유입에 대한 규모를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기부금 전체의 금액에서 답례품 제공 및 기부제도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이 지역활성화 및 주민복지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실제 정부의 재정으로 유입되어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⁴⁾ 구체적으로 충남을 제외한 전국 근로소득 납세인구 중 기부하고자 하는 인구와 종합소득 납세인구 중 충남에 기부하고자 하는 인구 중에서 기부의사가 있다고 가정한 9.1%이 기부한 금액은 각각 1,029억원과 405억원이다. 이를 충청남도과 소속 15개 시군을 합친 16으로 나누면 64억원과 25억원정도로 산출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도로 인한 정책효과는 기부금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유입의 증대 효과와 함께 답례품 제공으로 인한 지역홍보 및 외부인의 관심과 응원 유도를 통한 관계인구의 증가로 인해 지역 인구문제 대응 및 지역활력 증가와 같은 정책방향에 관심과 주목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4) 이에 대해 신동철(2022)의 연구에서도 경상남도로 기부할 잠재 기부자수를 10%로 가정하여 경남 전체 기부금액을 218억원으로 추정하였으나 19개의 도 및 시군으로 구분하면 11.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제6장 충남의 정책방향과 대응전략

1. 충남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과 운영의 정책방향

1)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

(1) 분석결과의 시사점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일본의 후루사토 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서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이다. 3장에서 살펴본 바처럼, 일본에서 제도도입의 목적처럼 대도시 및 수도권과 지방의 세수 격차를 좁히고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본 제도는 설계된 목적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소멸과 인구감소를 극복하고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단초를 제공하는 제도가 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특히 중앙재원의 지방이전이나 과세 행위를 통한 세수확충이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 기부행위를 촉진하고 기부금을 통한 재원이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방법과는 다른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작용의 우려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선행사례 및 조사연구를 통한 정책방향 정립을 통해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운영의 방향과 방안들을 구축할 필요가 크다. 4장에서 인식조사의 결과처럼 현재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인지도가 낮아서 도민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확산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금활용 사업에 대한 충남 수요의 반영과 함께 지역활성화와의 적극적 연계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의 5장에서도 충청남도의 재정유입효과의 추정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충청남도 외 거주자(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자)가 충청남도에 기부할 기부금의 추정치는 405억원 정도에서 1,029억원 정도의 규모가 가장 근접한 추정치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금액은 충청남도 및 기초 시군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기부금에서 답례품

및 기부제도 운영에 관한 예산을 제외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막대한 재원이라 보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고향납세제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였던 일본 선행사례에 대해서 2010년 이후부터 진행되어 온 지속적인 연구결과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은 일본에서도 제도가 도입되고 6-7년 정도는 미미한 기부행위 및 기부금액의 규모를 보였으며 정체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2) 충남 고향사랑기부제도 정책방향의 제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또한 당장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고향사랑 기부행위의 활성화로 인한 세수증대 및 재원유입의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사회에서 제도를 정착시키고 안정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의 방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본질적 목적인 ‘고향 또는 농어촌 지역을 돕기 위해 내가 스스로 기부한다’는 애향심과 도·농간의 포용적 성장을 위해 기여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본 제도의 초기방향은 기부문화를 독려하는 수준에서 출발한다는 관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제도 도입의 시작부터 너무 많은 정책목표나 높은 정책효과를 달성하겠다는 과도한 욕심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아직 시행되지 않고 기부행위 및 세수유입 추정 등 모두 불확실한 현재의 시각에서 제도의 과도한 기대에 따른 단시간에 성과를 창출하려는 시도는 성급한 정책과 사업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홍근석, 2019).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접근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와 관계인구의 증대 및 답례품으로 인한 지역사회 활력을 도모하며 사회적으로 기부문화의 확산 및 지방에 대한 관심 증대의 중장기적인 관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과 시각에서 본 연구는 내년부터 실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해 충청남도에서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본 과제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할 다음의 4가지 영역을 제시하고자 하며 4가지의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① **운영과 실행기반 구축:** 기부금의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용을 위한 충청남도 전담조직 및 실행주체 구축 등 운영과 답례품 및 기부금 운영 위한 민관 거버넌스 조직 구축 운영
- ② **기부자 확대와 교류사업:** 충남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한 기부자 확대 및 온오프라인 플랫폼과 쌍방향 의사소통의 기회 마련 및 제도 인식확산, 홍보 등을 통한 기부자 및 기부행위의 확대
- ③ **기부금 활용 정책사업:** 기부자 의도에 부합하며 주민 복리 증진의 본래 목적이 부합하도록 충청남도 지역활성화 정책사업 연계와 추진방안의 설정
- ④ **답례품 운영 체계화:** 효과적인 답례품 구성과 조달을 위한 충청남도 운영 시스템 구축 및 답례품 질적 향상을 위한 도 차원의 지원정책 제안



[그림 25] 충남 고향사랑기부제도 정책영역 제시

2) 단계별 정책영역의 사업 제시

이러한 정책영역별로 수행될 세부적인 정책사업은 시기별 운영 방향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충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단기적으로 당장 실행해야 할 사업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의 구분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사업의 시기별 구분은 다음 그림-26과 같으며 사업의 시기별 구분은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종합하여 도출되었다.



[그림 26] 충청남도 고향사랑기부제도 시기별 추진방안

우선 단기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으로는 내년부터 제도 실행을 위한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과 거버넌스의 운영과 함께 기부금의 효과적 관리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기부금의 모금 및 답례품의 공급을 위한 실행조직의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효과적인 기부자들과의 소통 채널 및 기부금 활용의 시범사업들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충청남도민들의 인지도가 낮다는 점에서 인식확산의 방안들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제도도입과 운영의 장기적 관점으로는 충청남도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통해 확충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부자들의 요구와 수요의 충족을 중심으로 지역활성화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기금 활용사업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기부자들의 지속적인 확대방안의 마련과 함께 기부자에서 지역의 관계인구로 발전하여 지역사회의 활력을 창출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이 요구된다.

본 제도의 본질적인 정책목적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세수부족으로 지방소멸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있다. 특히 기부제도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나눔문화 확산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디딤돌을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실현하고자 하며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한 전략방안을 도출함에 있다.

2. 기부금의 운영과 실행기반 구축

1) 충청남도 전담조직 구축 운영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조직을 구성하고 배치하는 것은 준비단계의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제도는 전국적으로 실행되지만 기부금을 접수받고 기금으로 활용하며 답례품을 구성하여 발송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에 따른 효과적인 인력배치가 필수적이다.

우선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업무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행정·운영의 업무와 함께 홍보 마케팅 및 답례품 발굴·선정과 기부금의 지역활성화 사업 활용 등의 전문적 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행정·운영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심의 사무를 의미하는데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조례 제·개정 등의 지원과 함께 기부금의 기금 설치 운영과 이를 위한 위원회설치 운영의 업무를 포함한다. 또한 기부제도라는 점에서 세액공제 제도 운영과 기부금 사용목적의 공시 및 기금활용사업 관련된 정책 연계사업 운영 등의 업무들이 필요하다. 또한 기부금의 모집에 따른 조치와 함께 법률에서 정하는 부정모금 행위 단속 등의 행정적 업무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전문적 업무 영역에서는 행정보다 민간의 전문적 역량이 요구되는 업무 분야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 및 답례품 등의 홍보 및 인식확산과 함께 답례품 고급화와 마케팅을 포함하여 선정과 배송의 과정을 수행하는 전문성 있는 조직과 인력이 요구된다. 특히 일반적인 제도가 아니라 답례품의 선정이나 기부금의 모집은 법률로 제한하고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 추진하기 위한 업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의 업무와 전문영역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구성은 필수적이고 2023년 실행 전에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김홍환(2022) 및 김동영(2022)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부합하는 충청남도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조직 및 인력을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8〉 충청남도 고향사랑기부팀 인력과 업무(안)

구분	주요 업무(안)
팀장	충남 고향사랑기부제도 업무총괄
행정,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 및 개정 - 기부금 모집 활성화 계획 수립 및 기부 목표액 설정 - 기부금 모집과 기부행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계획, 실행 - 충남 기금 및 기금활용사업 관련 위원회 구성과 운영
답례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례품 선정을 위한 프로세스 운영과 생산·제공업체 기준 마련 - 답례품 품목개발과 답례품 운영 관리 - 답례품 선정 관리를 위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과정 관리 운영 - 답례품 공급 연계 체계 구축 및 운영기관 관리·감독
기부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사랑 기부자 관리 운영(감사 서한문 및 기금사용내역 정기보고) - 기부자 대상 명예도민증 및 고약 기부자 별도 관리 운영 -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홍보지 발간 운영 - 기부금 모집 시스템 관리 운영(세액공제, 신용카드 및 현금모금과 영수증 발급 등) - 기부금 부정모금관리 및 기부금 반환 업무
정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운용의 결과 및 보고서 공개 - 고향사랑기부금 활용사업 선정 및 추진(취약계층 및 청소년육성보호, 문화예술 보건,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지지원 등) - 제도 관련 광역 및 기초 연계 네트워크 및 공동활동 추진 - 의회 업무 수행 및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자료 관리

자료: 김홍환(2022), 김동영(2022) 참고하여 작성

고향사랑기부제도 운영을 위한 조직체계는 신규로 발생하는 행정·운영과 전문적 업무량을 고려하면 충청남도의 경우 1개 팀으로 팀장 포함 5명의 인력 및 조직이 구성될 필요가 있다.

팀장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된 업무 총괄의 역할

담당자1은 행정과 홍보 역할로 관련 조례의 제·개정 대응과 기부 모집 및 인식확산과 홍보활동을 수립하는 업무

담당자2는 답례품 관리의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며 답례품 관련된 운영 시스템, 거버넌스의 운영과 함께 답례품 관련 공급 및 관리기관 연계협력의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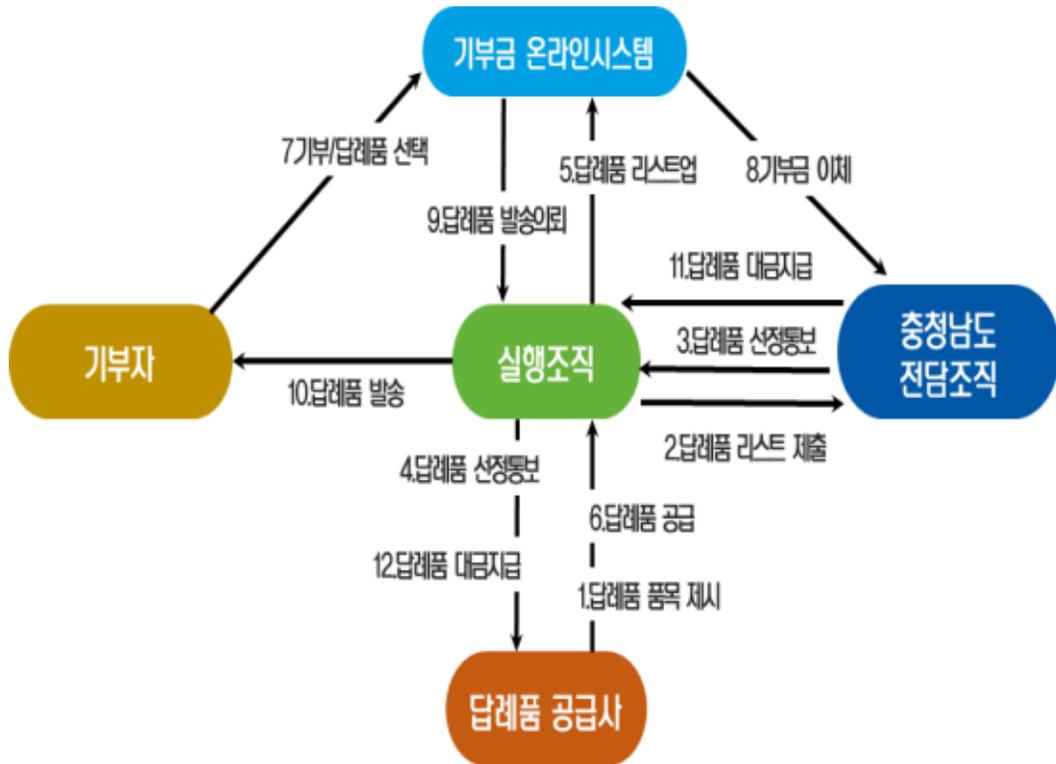
담당자3은 기부금 관리업무를 수행하며 기부자에 대한 지속성을 위한 후속조치와 홍보지 발간과 세액공제 및 환급의 업무

담당자4는 기금 운영결과의 정보와 보고서 공개와 함께 기금 활용사업에 대한 선정과 추진을 담당하며 또한 제도 관련 기초, 광역, 의회 등의 네트워크 활동 업무

이와 같은 행정과 운영 및 홍보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전담조직이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현장에서 기부행위에 따른 답례품의 구성과 배송 및 대금지급과 같은 실행을 위한 전문조직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업무는 민간의 전문성 활용적 측면과 함께 행정조직의 비대화 억제, 고비용 및 저효율의 개선적 측면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높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핵심적 부분인 답례품 공급과 배송, 관리 총괄의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위탁기관은 답례품 공급, 배송, 대금지급 등을 총괄하는 실행조직으로 기부자들에 요구하는 답례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공급망을 관리하고 답례품 발송하는 업무 수행이 요구된다. 또한 공급업체와 충청남도의 중간지원 역할을 통해 답례품 선정, 공급 및 대금지급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러한 답례품 공급과 제공을 위한 현장의 실행역할을 제시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자료: 김동영(2022) 참고하여 재작성

[그림 27] 기부에 의한 답례품 제공 역할과 절차

2) 기부제도 거버넌스 구축 운영

(1) 기부제도의 위원회 구성 운영

지방자치단체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충청남도의 공공조직과 함께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충청남도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답례품 선정과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 활용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에서 조례를 통해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위원의 위촉과 역할 및 권한에 대한 제시가 요구된다.

관련되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의 조례(안)에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지역 특산품 선정이나 상품, 유통, 홍보 등에 전문역량을 갖추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7명 이내의 위원 위촉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위원회 구성을 통해 법률에서 제시하는 답례품의 기준에 부합하는 품목과 공급업체 선정하며 또한 충청남도의 특성에 부합하는 답례품 공급을 위한 별도의 가이드 라인 등을 규정하여 답례품 제공을 희망하는 업체에게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법률은 제11조 4항에서 고향사랑기금 관리 운영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례로 정함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충청남도의 조례(안)에서는 ‘충청남도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회’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에 따라 설치함을 제시하고 있고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주체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이러한 위원회와 함께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조직들과의 연계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선 기부제도에서는 광역과 기초의 구분없이 기부제도 참여를 명시하고 있지만, 일반 주민에게 광역과 기초에 대한 인식의 범주가 다르고 행정과 공공업무에 대한 역할과 기능이 구분된다는 점에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으며 앞서 살펴본 일본사례에서도 기초에 비해 광역에 대한 기부비율이 낮다는 점에서 소속 기초자치단체와 협력의 정책 방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충청남도의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지역활용 사업이나 지역특산물 기반의 답례품은 모두 기초자치단체의 수요 및 자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자치단체와 경쟁관계보다는 이들의 기부금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의 역할을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충청남도 차원의 공동홍보 및 기부금 운영 플랫폼 등의 규모화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광역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가지 답례품보다 다양한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다채로운 답례품의 구성이 기부자에게 매력적이라는 점에서 권역 및 광역차원에서 협력을 통한 답례품 구성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지역활성화 사업 또한 다양한 시군간의 연계협력의 관계를 통해 효과성 극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충청남도 차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효과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해서는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들간의 정기적 네트워크와 교류회의를 통해 상호 정보와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한 場이 요구된다. 특히 제도 도입 초기에 긴밀한 협력관계의 구축이 중요하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주도하는 정기적인 광역-시군 간담회의 개최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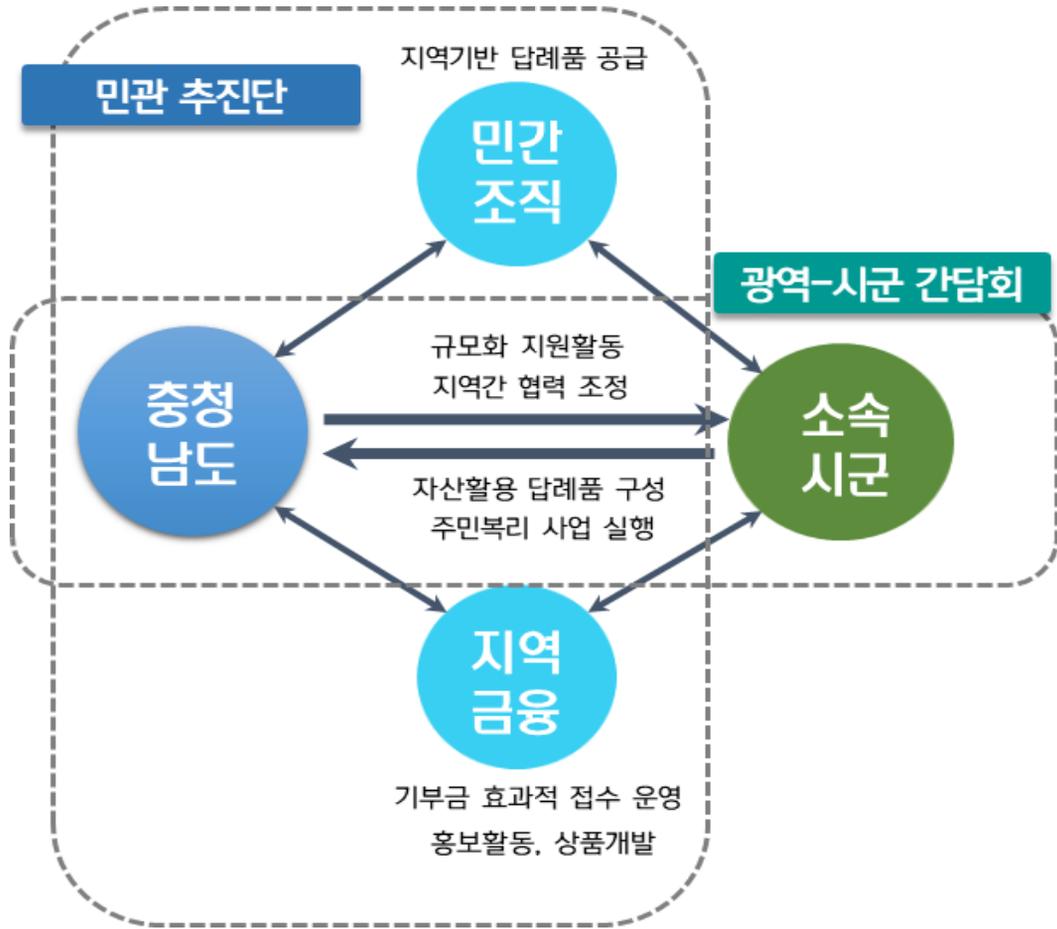
이와 함께 충청남도에서 지역의 주요한 농·수·축산의 유통 및 금융 지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농협 등과도 긴밀한 연계관계가 필요하다. 이미 농협중앙회(NH농협은행)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온라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대면접수기관으로 지정받아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중앙회 차원에서 기부문화 확산, 대국민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도 홍보활동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특히 관련되어 「고향

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지자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농협차원에서 대면접수창구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농어촌에서 디지털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충청남도에서 소재한 농협 지역본부, 지점들을 활용해서 기부금 접수의 창구 운영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협 차원에서도 정부의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홍보계획에 협력하여 활동할 계획으로 충청남도에서도 농협과 협력하여 지역주민 대상의 제도 홍보와 인식확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수협이나 축협, 신협과 같은 지역금융기관들도 함께 연계하여 충남에서 고향 사랑기부제의 참여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지역 생산 및 가공과 유통체계를 갖추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의 협의체들 또한 제도에 적극적 참여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충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의 쇼핑몰인 '따숨몰'을 운영하는 충남 사회적경제 협의회와 충남 6차산업 안테나숍을 운영하는 충남6차산업지원센터 및 당사자 협의체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답례품의 공급과 상품 리스트 확보를 위한 협력적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처럼 민간의 전문역량의 충분한 활용을 위해 충청남도는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답례품 관련 지역 기업협의체들을 대상으로 교류관계를 구축하고 상호협력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거버넌스 조직인 '(가칭)충남 고향사랑기부제 민관추진단'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교류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충남의 고향사랑기부제도 추진을 위한 주체간 협력체계는 제도도입 전에 구축되어 시행과 함께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8] 충남 고향사랑기부제도 주체간 협력체계(안)

3. 기부자 확대와 교류사업

1) 기부자 확대를 위한 홍보와 교육활동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홍보활동은 우선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한 공공적 차원의 홍보와 함께 기부자 확대를 위한 답례품 및 기부금 활용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홍보는 앞서 살펴본 충청남도의 전체적인 제도 인식의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초기부터 집중적인 제도 인식확산의 정책활동이 수행되어야 할 부분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전국적 차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홍보 활동은 행정안전부와 같은 중앙정부 차원의 공익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언론매체나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도 인지도 제고와 함께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제도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은 중앙정부차원의 지속적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함께 충청남도 차원에서도 도내에서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충실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부모님 및 연고가 충청남도에 있거나 한번이라도 충청남도에 방문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는 점에서 충남 및 시군 지역주민들을 활용한 기부제도의 홍보활동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의 주요 랜드마크 및 관광지나 숙박 및 식당들을 중심으로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며 홍보영상 상영과 홍보물 비치 및 배부 등의 실행이 요구된다.

이러한 활동에 대해 강원도 영월군은 다음 그림과 같은 리플렛을 미리 제작하여 관내 주요 시설에 비치하고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충남에서도 관련 리플렛 등의 홍보물을 2023년 시행전에 제작하여 미리 관내 주요 관광지 및 숙박 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비치하고 적극적 사전 홍보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고향사랑 기부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정부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여역의 지체 등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지 등에 사용하고 거주지에서는 사회복지에 기부액의 50%를 지역농산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2021.10.19. 제정하였습니다.
2025년 1월부터 고향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5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취지 및 배경은 뭔가요?

※ 지역소득 환급 (지출산고액의 인구의 수도급 인구에 따른 지방 인구증상 등으로 지역소득 유형을 완화시키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 지방재정 보완 - 지역간 재정격차 조정에 따른 영약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지역 내 주민편익을 위해 시흥 할 수 있는 유형 다면, 지역간 균형, 지역마다의 이태연에 따른 기부, 거주지(대한) 강자 무모함을 방지하고, 기부금의 조조세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부자의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에는 기부 할 수 있습니다.
(예) 한시도 주민 => 영약의 기부가능

8 고향사랑 운영 모형

지역의 지방재정 보완,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 기여

지역소득 환급, 고향사랑 기부금, 주민복지 증진

국가 지자체, 기부금(주민), 지방소득 환급, 지역주민 증진

지역소득 환급, 지방소득 환급, 지역주민 증진

지역소득 환급, 지방소득 환급, 지역주민 증진

지역소득 환급, 지방소득 환급, 지역주민 증진

2025.1월 고향사랑기부제 본격 시행

내 고향 '영약'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득 환급에 놓인 영약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 시스템입니다.

영원론 NHK NHK

1 영약 고향사랑 기부제

아빠 책에 있어요!

아호!

어라? '고향'에서 온 거네 영약 사과 정말 맛있는데

내가 자란 영약을 돌렸다고 삼안님 기부했는데, 삼안님 '세금 공제'도 받고 삼안님 '농산물'도 받았네!

3만원 선물 받았는데 영약 고향사랑기부제 정말 좋아요!

4 기부할 때 제한은 없나요?

※ 지자체의 이해관계에 따른 기부, 거주지(대한) 강제모집을 방지하고, 기부금의 조조세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부자의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에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예) 법인 기부 불가, 개인 가능 (다 주소지)

5 세금 공제도 받고 달래도 받고

※ 세무공제 혜택

기부액	세액공제비율	비고
10만원(이하)	100%	기부충합시스템 내에서 개인별 기부금 총계 집계후 세금 공제
10만원(초과)	16.5%	

※ 달래를 제공
기부금의 총액 100만과 30 이상 농특산물, 지역사랑 상품권

※ 예시
100만원 기부할 때 300,000원 달래품 248,500원 세금공제

총 기부액의 54.8% 548,500원 혜택

6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 취약계층, 보호 및 육성
- 청소년 보호 및 육성
- 지역공동체 활성화
- 문화예술사업 지원

7 영약 고향사랑 기부 방법

※ 기부자 · 기부금 납부, 영약품 산액, 세액공제 원스톱 처리

- 지자체 · 기업권리, 영약품 권역, 세액공제 환보, 기부금 영약품과 공제
- 영약권연보 · 부정모금 방지 및 위변조 방지, 교육 홍보
- 전국농산물 기부금 입주가능
- 영약충합시스템 접속 납부가능

[그림 29] 영약론 고향사랑기부제도 홍보물 사례

이와 같은 충청남도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홍보활동은 지역주민에 의해서도 친인척 방문 시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도민대상의 인식확산도 필수적인 부분이다. 결국 도민들이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활동도 홍보활동의 밑거름으로 초기에 시작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 하겠다. 따라서 충청남도 및 시군에서는 소속 주민자치회, 이통장 협의회, 청년회 및 부녀회등 전통적 공동체 등의 풀뿌리 조직과 함께 충남의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새마을단체, 사회적경제, 공익활동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에 대한 적극적 관련 내용의 교육활동을 기획, 실행할 필요가 있다. 실제 일본에서도 고향납세제도의 실행과 함께 지역 NPO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제도 활동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3섹터와 주민조직 중심으로 기부제도에 대한 인식확산과 교육활동을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도 시행 초기에 충청남도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도민대상의 인식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활동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제도적 홍보 외에도 구체적인 충청남도의 고향사랑기부제도 답례품 및 기부금 활용 등에 대한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이는 우선 단기적으로 출향민을 비롯하여 충청남도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집단을 통한 홍보가 효과적일 수 있으며 점차 일반 수도권 및 대도시권 주민으로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7조는 홍보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개별적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금지하며 호별방문 및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방법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신동철(2022)이 제시한 바처럼 개인적이거나 사적인 관계를 활용한 홍보보다 공공적 장소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에는 옥외광고판 활용, 수도권 버스 및 지하철의 대중교통 활용, 충남 출신의 정치인 연예인을 활용한 매스미디어 홍보와 같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충남 고향사랑기부제도 콘텐츠의 수도권 시민들에 대한 노출 실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통적 방식과 함께 충남에서 생산되는 주요한 생산품에 충남 고향사랑기부제도 독려 및 지역활성화 사업과 대표적인 답례품 내용 및 브랜드를 주요 상품에 부착하여 유통시킬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생수병, 주류, 우유, 포장박스 등에 부착하여 시민들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개인차원의 온라인 미디어가 활성화된 만큼 청년층을 유인

하기 위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를 비롯한 SNS를 통한 홍보활동도 필요하며 홍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페이지 개설을 위한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확산이 시급하다.

이러한 다각적인 충청남도의 고향사랑기부의 홍보방안들은 세대별 구분에 따라 차별화의 시도가 필요할 것이며 다음의 방안들을 예시로 제시할 수 있다.

〈표 39〉 세대별 고향사랑기부제도 홍보 방안 예시

	홍보방식	홍보내용
청년층 (20-3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 등 온라인 미디어 기반 - 온라인 커뮤니티, 인플루언서 등 활용한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에 따른 다양한 답례품 - 기부행위의 세액공제 - 지역간 차별 해소, 사회적 문제해결의 착한소비 가치
중장년층 (40-50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통한 바이럴 홍보 -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활동 통한 홍보 - 지역 공동체, 주민조직 활동 중심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운 지역에 대한 기부문화 확산 - 기부 활용처의 적극 공개로 기부 효능감 확산 - 지역 특산물 기반 답례품 관심 - 부모님 이미지 활용한 지역홍보
고령층 (60대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스미디어 통한 인식확산 - 주요 명소 및 기관의 리플렛 등 홍보물 접근 - 오프라인 중심 대면접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향 이미지와 브랜딩 통한 지역활성화 효과 방안 부각 -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지역상품 및 특산물, 관광상품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세대별 지역 명사 중심의 미디어 홍보 - 대중교통 및 옥외광고판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기반 먹거리 중심 특산물 - 지역 관광지 및 여행상품 - 기부제도로 인한 지역의 변화로 가치 창출

이러한 홍보방안과 함께 충남에서 일정시기만을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충청남도 고향사랑 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지만 충남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원)생, 충남 소재 기업에 근무하면서 수도권에 출퇴근 및 거주하는 직장인, 충남에 부모님, 자녀 등 가족을 둔 수도권 거주민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주민들을 중심으로 각 시군마다 ‘충남사랑 서포터즈(가칭)’을 구성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충남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온·오프라인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면 접촉 및 교류활동이나 온라인 상 카드뉴스 및 블로그, 유튜브 영상 업로드 등을 통한 홍보를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이다.

2) 기부 지속성 위한 기부자와 교류 방안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지역사회에 기부자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부자가 지속적으로 충청남도에 기부하도록 하는 기부자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기부자의 기부행위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부자와 직간접적인 상호교류활동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되어 충남을 비롯한 다양한 인식조사 결과에서 기부자들은 자신이 기부한 기부금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기부행위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에 대한 투명한 내역 공개와 기부금의 구체적인 활용상황까지의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기부금에 대한 투명성 확보 여부와 활용처 정보공개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적시에 기부자들에게 제공해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구축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 차원에서 15개 시군과 공동으로 기부금의 적립내역과 함께 기부금의 활용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중앙정부 플랫폼에서 링크를 통해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나아가 충청남도의 플랫폼은 추후 정부 클라우드 펀딩 서비스와 연계하여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기부자들에게 '00시군 고향사랑소식지'를 분기마다 제작하여 발송을 통해 기부자와 지역사회와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에서도 기부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기부금 활용으로 인한 효능감 강화를 위해 어떻게 기부금이 활용되고 지역사회에 어떠한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사진 및 스토리텔링을 통해 소식지를 구성하여 발송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와 만족도가 높다. 따라서 기초차원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소식지 발송은 기부자와 관계 맺기 위한 기초적이지만 필수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으며 충청남도 차원에서는 별도의 소식지 제공보다 충청남도 차원의 기부금 활용사업과 기부현황의 소식란을 구성하여 모든 15개 시군의 소식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기부자와 지역의 교류활동 지속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소식지 발송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부행위의 감사표시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기부자들의 내적동기를 더욱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적극적 감사표시는 기부행위를 촉진하는 인센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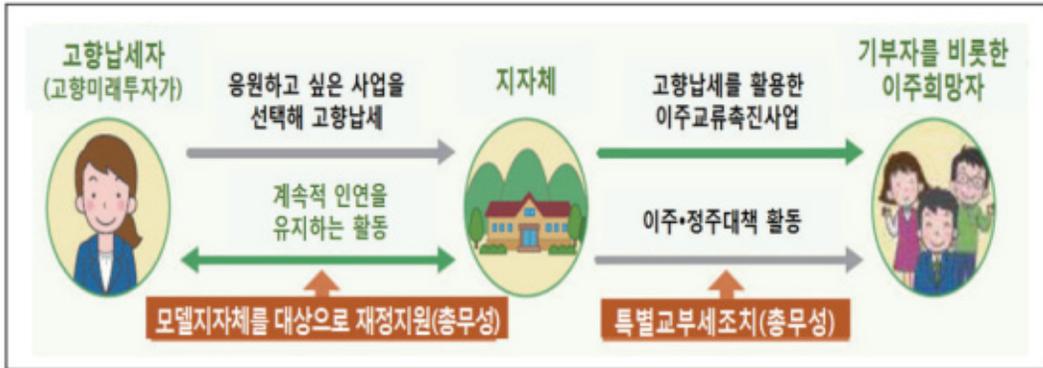
행위로도 제도 확산을 위해 필수적이다. 적극적 감사표시는 대표적으로 지속적인 기부자 대상으로 감사패 발송이나 도청 및 시·군청에 별도의 기부자들에 대한 감사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지역의 랜드마크 및 주요 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공간에 고향사랑의 지속적 기부자들을 위한 명패로 구성된 조형물 등의 건립 등을 통해 기부자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 감사표시를 통해 기부행위를 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3) 기부자 확대와 관계인구 형성 전략

고향사랑기부제도의 효과를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인구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기부자와 지속적인 교류관계를 통해 관계인구, 생활인구 등의 확대를 통한 지방소멸의 효과적인 대안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재정유입이나 답례품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보다도 초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 달성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앞서 분석결과에서도 재정유입의 효과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크지 않다면 기부자들과의 교류관계를 통한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관계인구에 대한 개념은 인구감소를 우리보다 먼저 직면한 일본에서 주민등록상 인구와 같은 정주민구의 실질적 효과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발생하였다. 즉 지역사회 및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에 적을 두고 거주하는 절대적 숫자의 실효성 의문에서 관계인구와 같은 대안적 인구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⁵⁾ 그리고 오다기리 토쿠미에 의하면 관계인구의 핵심은 ‘관심’과 ‘관여’속에서 다양한 관계인구의 층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러한 각 층위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아래 그림과 같은 인구의 지역과의 연결정도에 따른 다양한 층위의 관계인구가 제시될 수 있다(안소현 외, 2022).

5) 특히 타카하시 히로유키는 일회적 성격이 강한 관광인구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지속적 활력을 불어넣기 부족하고, 완전히 이주하여 생활하는 정주민구는 사람들의 심리적 진입장벽이 높다고 판단하여 관광과 정주 사이의 관계인구 발굴을 제언하였다(류영진, 2020).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9), 김동영(2022).

[그림 31] 고향납세자와 지자체의 관계 개념도

구체적으로 일본 지방자치단체는 고향납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을 모아 이주교류사업을 추진하고 기부자를 ‘고향미래투자자’로 생각하여 고향에 대한 관심과 인연을 맺는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부자가 고향납세 지역에 방문하거나 이주를 계획하면 지자체는 이들에게 이주 및 정주를 위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정주민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김동영, 2022).

따라서 충청남도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극적인 귀농·귀촌 정책을 비롯하여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충청남도에 지속적으로 기부하고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당 지역 방문시 적극적인 인센티브 부여 및 기부자 대상으로 지역방문 위한 초청행사 개최 등 가벼운 관계 맺기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관계인구를 대상으로 관계 목적에 따른 유형을 구분하여 보다 심화된 지역활동의 참여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을 통해 기부자들의 최종적으로 정주민구가 될 수도 있지만 정주민구와 함께 지역 사회와 깊은 관계를 맺고 지역 내에서 활동하며 지역의 활력을 확산시킬 수 있는 관계인구로 유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들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부자에서 관계인구의 발전에 대한 정책적 방향은 다음 표로 종합하여 제시할 수 있다.

〈표 40〉 고향사랑기부제도 통한 관계인구 형성전략

	대상자	정책사업	효과
기부자	지역 외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 등 기부행위 참여 유인 - 지역 상품·서비스의 답례품 제공 - 지역문제해결 및 활성화 사업 기부 참여 	지역의 관심, 응원 형성
↓ ↓			
교류인구	지속적인 기부 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방문시 종합정보지, 숙박권, 식사권, 관광바우처 등 인센티브 제공 - 기부자 대상 연1회 지역방문의 날 개최 - 기부자 대상 다양한 지역 체험기회 마련 - 지역 주최 이벤트 및 축제 등 행사와 재난구호의 자원봉사 활동 기회 부여 	지역활동 참여, 빈번한 교류 형성
↓ ↓			
관계인구 체류인구	지속적인 지역 교류 참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달살이 등 중장기간 관광, 휴양거주 등 체류 위한 기반과 프로그램 마련 지원 - 귀농귀촌 관심자 대상 농산어촌의 1달 거주기반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일정기간 지역에 거주하며 업무활동 수행 위한 기반(워케이션, 지역사무소 등) 제공 - 지역사회 다양한 취창업 원하는 사람들에게 지원 프로그램 개발 제공 	지역과 밀접한 관계 활동 추구, 지역생활과 거주 경험 형성
↓ ↓			
정주인구	지역과 충분한 관계 형성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로 이주하여 정주인구 형성 	인구 확대

충청남도 및 시군에서는 단기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운영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자들을 적극활용하여 관계인구로 편입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노력들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 및 시군의 전담부서는 다양한 인구관련 부서들과 협력을 통해 기부자에 대한 다양한 관계맺기의 접근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4. 기부금의 활용 정책사업

1) 기부금의 정책활용 기준과 방향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지역간 재정격차 해소와 양극화 심화의 문제해결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갖는 제도라는 점에서 기부금의 활용방안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복리사업과 같은 공공적 목적에 활용한다는 방향을 내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11조 에서는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기금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4가지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 ①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②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③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④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

이처럼 관련 법률에서 활용사업의 내용은 제한하고 있지만 매우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은 다양한 정책사업에서 창의성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기금 자체가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과 연계하여 운영하기 위해 사용목적은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고향사랑기금은 활용 범위가 넓은 재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의 자치사무 영역을 기금사업화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김홍환, 2022).

따라서 기부금에 대한 정책사업 활용 및 선정에 대한 기준과 함께 기부자에 대한 기부금 활용의사 및 정채수혜자의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적용이 필요하다. 우선 관련 법률 제11조 4항에서는 고향사랑기금 관리 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을 규정하고 있어서 조례의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한 기부금에 대한 활용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정책영역에 투입될 수 있도록 기금 사용목적은 포괄적을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구성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전담 조직에서 지속적인 활용사업의 모니터링을 통한 효과적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충청남도 차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로 인해 유입된 기금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역간 양극화 해소와 지방소멸의 문제 해결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본 제도의 도입과 취지를 살펴보았을 때 다음의 정책 활용 사업의 기준들을 제시할 수 있다.

- ①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며 소외계층 복리 증진 우선사업
- ② 충남 내 초고령화 및 인구소멸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지역에 활용
- ③ 현재 충청남도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활용해 수행되는 정책을 제외한 사업
- ④ 최대한 기금 활용에 대해 지역주민의 효능감과 체감도가 높은 사업
- ⑤ 기금 활용에 대한 성과와 결과가 기부자에게 전달되기 용이한 사업

이와 같은 방향에 기반하여 충청남도 자체적인 기금 활용사업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종합적으로 기금 활용사업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홍근석 외(2019)의 연구에서 제시한 전국적 인식과 앞서 조사한 충남도민들의 기부금 활용사업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1〉 고향사랑기부금의 정책활용 선호도 비교

구분	전국	충남
교육 및 인재육성 사업	5위	1위
건강, 보건, 의료 지원사업	1위	3위
출산, 아동, 육아 지원사업	4위	2위
지역 경제 및 산업 진흥 사업	2위	7위
환경과 위생개선 사업	3위	6위
문화예술, 스포츠 진흥 사업	9위	8위
공동체, 시민활동 지원 사업	8위	9위
관광, 교류, 정주여건 개선 사업	6위	10위
안전, 방재, 재해지원 사업	7위	5위
기타	10위	4위(노인돌봄)

인식을 비교해 보면 공통적으로는 주민들의 건강, 의료 및 보건 관련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높으며 다음으로 출산 및 아동의 보육과 교육 지원사업의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영역의 사업들은 기부자 및 정책수혜자 모두에게 기금활용사업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 및 인재육성 사업은 비록 전국적 인식은 5위로 높지 않지만, 선행사례인 일본에서도 가장 활용도가 높은 사업이며 충청남도에서도 기금활용으로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에 지역경제 및 산업 진흥이나 환경과 위생개선사업은 전국적으로는 필요성이 높지만 충남에서는 낮다고 판단되고 있다. 그리고 공동체 및 시민활동 지원이나 문화예술과 스포츠 진흥사업은 전국과 충남 모두 필요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비교해 보면 충남에서는 우선적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여 건강·의료·보건 지원사업, 출산·아동·육아 지원사업, 교육 및 인재육성사업의 정책 영역의 사업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러한 기부금 활용 정책영역에 대해 2022년 7월 새로 출범한 충청남도 민선8기에서 제시한 도정과제를 도민 대상의 복리증진사업을 중심으로 배치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2〉 충남 민선8기 도정과제의 기부금 활용사업(안)

no.	실국	사업명	구분	해당시군	기부금 활용사업
1	기조실	온라인 교육플랫폼 '드림투게더' 운영	공약	-	교육과 인재양성
2	기조실	중·고교생 인터넷 수강료 지원	공약	-	교육과 인재양성
3	기조실	자녀교육비 지원	공약	-	교육과 인재양성
4	기조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공약	-	교육과 인재양성
5	기조실	충남 평생교육바우처(이용권) 지원	역점	-	교육과 인재양성
6	기조실	충남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역점	-	교육과 인재양성
7	재난실	재해 위험지역정비	공약	-	안전 방재 재해지원
8	저출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논산]	공약	논산	출산 돌봄 육아지원
9	저출산	지역간 어르신 문화교류 체험 프로그램 진행	공약	-	노인돌봄, 복지사업

10	저출산	중증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강화	공약	-	보건의료 지원사업
11	저출산	워킹맘을 위한 초등돌봄체계 확립	공약	-	출산 돌봄 육아지원
12	저출산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공약	공주, 서산	출산 돌봄 육아지원
13	저출산	충남도 학대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공약	미정	노인돌봄, 복지사업
14	저출산	도서지역의 응급의료체계 강화	공약	미정	보건의료 지원사업
15	저출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지원	공약	금산	보건의료 지원사업
16	여성	학교 밖 등 위기 청소년 자기개발 세상소통카드 지원	공약	-	출산 돌봄 육아지원
17	여성	1인가구 생활 안정 강화	역점	-	안전 방재 재해지원
18	여성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역점	-	노인돌봄, 복지사업
19	경제	전통시장 현대화 및 주차장 확충	공약	미정	환경과 위생개선 사업
20	경제	사업실패자에 대한 재도약 기회제공	역점	-	경제 산업 진흥사업
21	경제	중장년 창업교육, 직업교육비 등 지원	역점	-	경제 산업 진흥사업
22	문체국	백제문화 복합단지 및 백제문화 체험마을 조성(100일 중점)	공약	공주, 부여, 청양	문화예술활동 지원
23	문체국	해미국제성지 세계명소화	공약	서산	관광, 정주여건 개선
24	문체국	e-스포츠 메카 조성	공약	천안	문화예술활동 지원
25	문체국	의병기념관 건립	공약	미정	문화예술활동 지원
26	문체국	어르신들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대	공약	15개시군	문화예술활동 지원
27	문체국	아산 서부권 공공도서관(문화시설) 건립	역점	아산	문화예술활동 지원
28	농림국	청년농업인 단계별 영농 정착지원 확대	공약	-	경제 산업 진흥사업
29	기후국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	공약	서천	환경과 위생개선 사업
30	기후국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성질환 힐링센터 조성	역점	보령	환경과 위생개선 사업
31	해수국	태안 해양치유센터 건립	공약 (도지사)	태안	환경과 위생개선 사업
32	자치 경찰	도민 안전을 위한 정신질환자 응급 대응체계 구축	기타 현안	-	안전 방재 재해지원

다음과 같은 민선8기 도정과제 중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관성이 있는 32개 사업을 도출하고 앞서 제시한 건강·의료·보건 지원사업, 출산·아동·육아 지원사업, 교육 및 인재육성사업의 3가지 영역으로 사업들을 한정하면 16개 도정과제들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업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추진할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조사와 발굴의 활동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도정과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기부금과 관계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부금만으로 추진되는 새로운 신규사업의 발굴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보다 면밀한 기부자들의 수요파악을 기반으로 도출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제시된 3가지 선호 영역을 중심으로 신규사업안은 다음과 같은 사업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발굴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및 현장의 수요와 함께 해당 시군의 관련 사업유무, 기부자들의 의사를 종합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건강·의료·보건 지원사업의 경우 면지역 중심으로 고령자 응급의료거점시설 건립이나 체계 구축이나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경우 거점별 응급의료센터 설치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출산·아동·육아 지원사업의 경우 출산 및 산후조리 체계 마련을 위한 공간 및 진료 시스템 개발과 마을별 공동육아 지원체계 구축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및 인재육성사업의 경우 면지역 중심으로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과 면지역 학교들의 특성화 프로그램 설치 운영 등의 사업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도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고향납세 기부금이 대폭 확대된 시점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나 2016년 구마모토현 지진처럼 대형 재난상황으로 이에 대한 기부활동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 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또한 태풍피해 및 2007년 발생한 태안기름유출사태와 같은 대형 재난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이나 구호물자가 집중된다는 점을 보면 충청남도 차원에서도 대형 재난이나 재해의 차원에서 고향사랑기부금 활용처를 개발하여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기부금의 활용사업 확대 방안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기부금은 기초자치단체의 기부금일 경우 해당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으나 충청남도의 기부금이거나, 여러 지역에 동시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활용사업 추진을 위한 광역차원의 연계와 조정을 통해 실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이를테면 위의 사업목록에서도 ‘백제문화복합단지 및 백제문화체험마을 조성사업’은 공주·부여·청양의 다수 기초자치단체가 연계하여 수행하는 정책사업이며 이에 대한 기금 활용적 측면에서는 충청남도의 광역차원에서 조정과 연계의 과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답례품이나 제도 운영과 함께 기금의 지역활용차원의 광역적 논의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위에서 제시한 협의체인 충청남도 광역-시군 간담회에서 협의구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의 지역활용에 대한 효과 극대화를 위해 기부금과 연계된 충남형 지역 클라우드 펀딩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현재의 법률에서는 클라우드 펀딩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제도적으로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일본 사례의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 요인중에서 지역 사업의 클라우드 펀딩과 연계된 활용사업의 도입을 주목할 수 있다. 신동철(2022)에 의하면 일본의 광역 지자체 중에서 구체적인 사업분야를 선택하게 하는 지자체가 35개 곳에 이르며 그중 클라우드 펀딩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광역지자체가 24개이다. 이러한 클라우드 펀딩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있으며 민간 클라우드 펀딩보다 신뢰도가 높아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일본의 정부클라우드펀딩(GCF)는 고향납세제도에 포함되어 답례품과 관계없이 지역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기부하면 기존 고향납세제도와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결국 GCF는 포커스를 지역활성화 측면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취지에 합목적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답례품보다 기부의 활용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제도이다(홍근석, 2019).

일본 고향납세제도 주요 플랫폼중 하나인 ‘후루사토초이스’의 경우 아래 그림처럼 정부 클라우드 펀딩의 페이지를 별도로 구성하여 고향납세와 연계한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다.



정부 크라우드 펀딩 * (GCF*)

모든 기부금은 고령 세금 납부의 대상이되어 국가 정부 (지방 정부)가 실시하는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지방 정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반영 할 수 있습니다.

ふるさと納税を活用した
クラウドファンディング

[정부 크라우드 펀딩*의 기능보기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란 무엇인가? >](#)



[그림 32] 일본 고향납세제도와 연계한 GCF 사례

특히 이러한 지역문제해결 클라우드 펀딩 시스템은 특히 2011 동일본대지진, 2016 구마모토 지진 등 대형 재난사고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모금에도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답례품 중심의 기부가 아니라 기부금에 대한 사용처를 중심으로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정부클라우드펀딩제도는 고행사랑기부의 목적을 더욱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시마네현 운남시의 경우 ‘소멸지역 커뮤니티 간호사의 클라우드 펀딩 프로젝트’처럼 답례품 상품의 안내 중심 기부행위보다 사용처와 결과공유가 함께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이 기부실적이 우수한 점도 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고행납세제도에서 정부 클라우드 펀딩(GCF)이 활발함에 따라 일본에서도 대부분의 온라인플랫폼에는 고행납세제도의 기부 방식에 따라 절차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표 43〉 일본 고행납세제도의 기부자 시각의 절차

답례품 기반 선택	사용처 기반 선택
일반적 고행납세제도	정부클라우드펀딩(GCF) 기반 기부
1. 답례품 선택	1.기부금 사용처(프로젝트) 선택
2. 기금 사용처 선택(지자체 위탁도 가능)	2. 답례품 선택(답례품의 기부 가능)
3. 기부금 기탁	3. 기부금 기탁(기존 고행납세와 동일)
4. 답례품 수령	4. GCF 프로젝트 진행상황 확인, 체크
5. 개인주민세 공제 및 소득세 환급	5. 개인주민세 공제 및 소득세 환급

자료: www.furumaru.jp/gcf/

이러한 방식은 답례품 제공 보다 기부금 활용 목적이라는 내적동기로 인해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매력적인 방법이며, 기부행위의 원인이 답례품보다 기부 목적사업 활용이 보다 높게 나온 충청남도의 인식조사의 결과를 반영해보면 이러한 방식의 도입도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충청남도 또한 답례품 중심의 기부절차 선택과 함께 특정 사업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사업을 위한 기부재원을 모집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본처럼 정부 크라우드 펀딩의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의 기부금 방식에 대한 세액공제의 절차가 포함되어야 하며 고향사랑 기부의 온라인 플랫폼에 기부 뿐만 아니라 정부크라우드펀딩을 위한 별도의 섹션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법률과 중앙정부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지점으로 지속적인 정부에 건의를 통한 변화가 필요하다.

다만 충청남도에서는 중앙정부(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추구한 고향사랑기부제도 플랫폼과는 별도로 충청남도 자체의 공공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소속 시군과 함께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공공 크라우드 플랫폼으로 조성된 재원을 고향사랑 기부제도로 조성된 기금과 연계하여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활용할 수 있게하는 정책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도 지역활성화 사업과 동시에 추진하는 충남 공공크라우드 펀딩의 체계를 중장기적 시각에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 답례품 운영 체계화

1) 충남의 답례품 제공 기준 마련

답례품의 제공은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며 기부행위를 유인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매우 큰 상황이다.

우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은 답례품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이와 함께 답례품으로 제공되어서는 안되는 것도 규정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지역 외에서도 통용되는 상품권이나 유가증권을 규정한다. 이러한 답례품의 제공은 기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제공하는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에 상응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부금액에 따른 답례품을 효과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답례품 제공에 관하여 법률은 매우 포괄적으로만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충청남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답례품 선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조(답례품의 종류)

①도지사는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한 물품을 원칙으로 한다.

③도지사는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다른 전통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증 품목 및 지방자치단체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지역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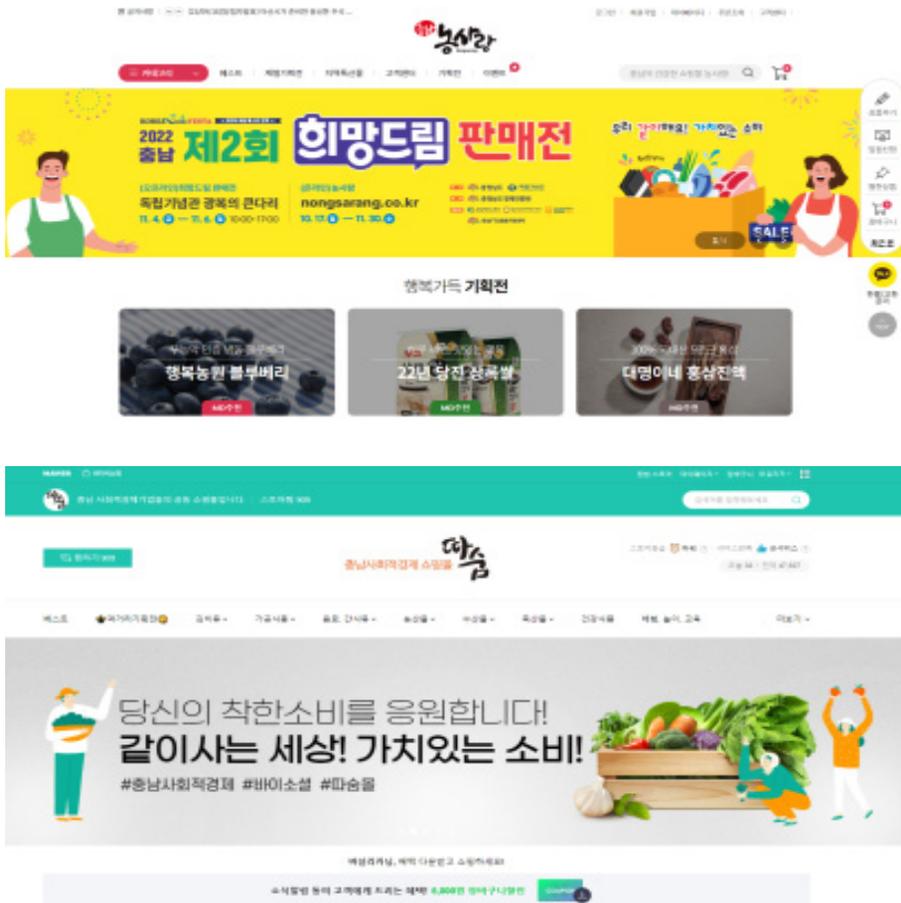
충청남도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입장권 등 충청남도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기타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이러한 답례품에 관한 조례는 법률에 기반하여 지역 내 생산, 제조된 물품이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동브랜드 및 인증기업이 생산한 물품의 우선 선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품목이나 종류 등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에서 답례품의 선정에 대해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선정을 위한 매뉴얼을 구성하여 답례품 관련 실행기관을 통해 답례품으로 공급하려는 기업이나 주민들에게 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역 특산품으로 먹거리 및 음식 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변질 및 위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품질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면 기부자들에게 답례품으로 인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수적이다. 또한 답례품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답례품으로 선정되기 위한 과정에서 다양한 불만이나 잡음과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청남도 및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선정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2023년부터 바로 기부행위가 시작되기 때문에 시급히 마련되어 답례품 관련 실행기관에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우선 현재 충남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 특산 및

생산된 물품들에 대한 유통 판매를 수행하고 있는 농사랑, 사회적경제 ‘따숨물’ 등 플랫폼이나 기관들을 대상으로 현재 상품 등록에 적용되고 있는 기준을 참고할 수 있으며 나아가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답례품 목록으로 올려놓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림 33] 충남 농사랑과 따숨물 온라인 플랫폼

이러한 답례품의 가이드라인 및 선정매뉴얼은 충청남도에서 구축·개발하여 시군에게 공통적으로 전파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답례품선정기준과 함께 충청남도의 전담조직 및 답례품 실행기관은 지속적인 답례품 발굴과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활동을 함께 수행해야 할 것이다.

2) 답례품 고도화 지원

답례품의 제공은 고향사랑 기부제도에 참여하는 기부자들을 유인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제도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따라서 답례품은 기부행위에 대한 답례행위이지만 지속적 기부행위 유인을 위해 수요자 지향적이고 매력적인 품목을 구성하고 품질을 고도화 하는 것이 요구된다.

우선 충청남도 차원에서 답례품의 구성은 대부분 소속 기초자치단체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이거나 서비스라는 차원에서 기초자치단체들과 차별화가 필요한 지점이다. 충청남도의 답례품은 광역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소속 기초자치단체들에서 생산된 답례품들에 대한 패키지를 통한 꾸러미 형식의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제품 뿐만 아니라 관광지 입장권이나 숙박권 및 체험형 상품과 서비스의 경우에도 다수의 지역들을 종합하여 종합화된 체험 및 관광의 패키지 상품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부자들 또한 하나의 지역에 대한 상품 및 체험관광 서비스보다 다양한 상품에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상품 전문MD 등을 답례품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충남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특산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패키지화 하여 상품군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이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관광 서비스 답례품의 경우 관광상품 전문가 등의 의견을 통해 백제문화 및 갯벌체험, 해양체험 등의 테마별로 관광코스를 개발하거나 4계절의 계절별 관광상품을 다수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개발한 상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충남 도민 대상 및 충남의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받고싶은 답례품 공모전’ 등의 이벤트를 개최하여 상품을 구성 하는 것도 홍보와 함께 답례품 구성의 효과적 방안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답례품은 고향사랑기부행위에 대한 답례행위로 고향 및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응원이라는 가치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지역특산물과 차별점을 갖출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답례품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지역의 생산품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특성과 생산자의 철학을 담아 스토리텔링을 통한 가치 부여의 행위가 답례품이라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충청남도 전담조직 및 답례품 실행기관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답례품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스토리 및 문구를 제작하여 배포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품형태의 답례품의 경우 답례품의 공급업체마다 다른 포장시스템을 활용한다면 답례품에 대한 질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충청남도 차원에서 별도의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의 박스 등 포장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답례품 관련 실행기관을 중심으로 상품MD 전문가를 활용하여 답례품에 대한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인한 기금의 예산을 활용하여 답례품의 품질을 고도화 하기 위한 정책지원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7장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본 과제는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도를 충남에서 전략적으로 운영하여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도는 일본의 후루사토 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라 볼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유입과 지역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나아가 지역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 역할과 함께 기부행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을 비롯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함께 내재하고 있다.

재정불균형은 인구감소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며 이는 사회서비스 감소 및 지역의 기초적 생활인프라의 감소로 이어져 지방소멸의 시나리오를 구축하게 된다. 따라서 고향사랑기부제도는 현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와 자원들에 대해 민간차원의 자발적 행위를 통해 일부 비수도권 지역으로 분산시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적 의도가 있다. 이를 위해 기부행위에 대해 10만원 미만으로는 전액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나아가 기부 금액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도 제공하는 조건을 기부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충청남도에서도 이러한 기부제도를 활용하여 충남의 답례품 홍보를 통한 연관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기부금 활용을 통해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속적으로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충남 지역의 관계인구로 성장하여 지역활성화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하는 효과가 보다 궁극적인 목적일 수 있다. 이에 대한 일본사례 분석결과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은 관계인구와 같은 정주하지 않지만 지역사회와 일정정도 관계를 맺고 활동하는 인구의 유입 확대에도 있으며 이러한 관계인구 도입과 활동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함에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기부자들의 기부금에

대해 효과적인 지역사회 활용을 통해 기부자 효능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용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정책활동을 기부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감사표현과 같은 홍보활동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전략들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후루사토납세제도의 사례분석을 통해 예측가능하며 이에 다른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충남에서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본 연구는 충남에서 고행사랑기부제도 도입으로 인한 재정유입효과에 대해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구체적으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 충남의 출향민 대상으로 기부금은 공제액이 더 많이 추정되어 오히려 유출의 규모가 더 컸으나 일정 수준의 경제력을 갖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시나리오의 경우 재원유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근로소득 납세인구 및 종합소득 납세인구를 대상으로 추정한 결과 각각 1,133억원, 447억원 규모이며 이를 충청남도를 비롯한 시군의 16개로 분할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당 재정유입의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다른 충청남도의 전략적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충청남도에서 고행사랑기부제도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을 비롯하여 실행을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실행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특히 주체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성을 제안하였는데, 민간조직과의 민관추진단, 소속시군과의 광역-시군 간담회를 통한 다각적인 협력체계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기부제도의 핵심인 기부자 확대와 기부자와 교류사업을 제시하였다. 우선 충남의 고행사랑기부의 기부자 확대를 위해 타지역 주민 및 충남 도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이고 세대별 맞춤형 홍보와 이를 위한 교육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부 지속성을 위해 충남 자체적인 기부 플랫폼 운영 및 적극적 감사표현의 지원이 요구된다. 나아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기부자를 충남의 관계인구로 유입하기 위해 귀농귀촌 및 문화관광을 비롯하여 부처별로 다각적인 전략 수립을 제안하였다.

셋째, 기부금을 활용한 정책사업에 대해 관련 제도의 범위 안에서 전국 및 충남의 기부활용사업의 수요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를 통해 충남에서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부금 활용의 사업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충남의 민선8기 도정과제와 연관성을 분석하여 기부활용사업의 정책연계방안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기부금 활용사업의 확대를 위해 광역-시군 간담회 구축 운영과 일본의 사례처럼 충청남도 특성의 정부

클라우드 펀딩 시스템의 도입으로 기부자들에 대한 정책기반 기부활동의 다양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고향사랑기부제도가 다른 기부제와 구별되는 특징적 요인은 답례품의 제공이라 할 수 있다. 답례품 제공은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상당 금액 답례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부자는 특산품을 받을 수 있고, 지역사회 기업은 새로운 판로 개척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답례품 제공에 지방자치단체들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인데 무리한 확산과 경쟁은 오히려 답례품 제공으로 인한 사고 및 부작용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충청남도에서는 답례품 기업 및 제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과 함께 답례품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상품MD등의 컨설팅 및 답례품 스토리텔링 과정을 통한 가치화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2. 연구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해 충청남도 차원의 효과적 도입과 추진방안을 전략적으로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과거 법제도 제정 전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제도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개발과 운영의 방안을 다루고 있는 시의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충청남도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고향사랑기부제도 관련 정책의 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정책적 의의가 있다. 그리고 나아가 소속 시군 차원에서도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연계 협력을 비롯한 전략적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장의 실행적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연구의 한계도 존재하며 이를 통해 후속연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제도의 본격적 시행 전에 이루어진 연구로 실제 전국적으로 제도 실행 이후 충남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애로사항 및 한계, 기부규모 등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도시행에 따른 기부제도 현황과 실태에 따른 조사의 후속 연구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충남 및 시군에서 실행된 고향사랑기부제도 및 관련 정책의 면밀한 조사와 실태의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른 기부금 운영, 답례품 개발과 운영, 기부금 정책활용에 대한 방향 제고 등에 대해 디테일한 부분의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경험을 중심으로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과 정책제언을 위한 전략적 연구의 방향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아직 제도화 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반 크라우드 펀딩의 기부제도의 연계방안과 함께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 및 기업들에 대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참여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충남 중심의 조사 연구활동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고액 기부자를 위한 기부상한액 제한 폐지 및 세액공제 범위 확대 등의 제도 운영부분 또한 충남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를 통해 제도개선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Arnett. D., Steve D. AND Shelby H.(2003). The Identity Salience Model of Relationship Marketing Success. *Journal of Marketing*, 67. 89-105.
- Bekkers R., Wiepking P.(2010). Accuracy of Self-reports on Donations to Charitable Organizations. *Quality & Quantity*.
- Bekkers, R.(2007). Generosity and Philanthropy: A Literature Review.
- Cheung. C., Chan, C.M.(2000). Social-cognitive Factors of Donating Money to Charity, with Special Attention to an International Relief Organization.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23. 241-253.
- Karlan, D., List A.(2006). Does Prices Matter in Charitable Giving? Working Paper. Yale Univ.
- Schuyt, T., Smit, J., Bekker, R.(2010). The Philanthropy Scale. Working Paper Department of Philanthropic Studies. VU Univ.
- Shang, J., Rachel C.(2008). Identity Congruency Effects on Donation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45. 351-361.
- e-나라지표 : www.index.go.kr
- 강철희·구지윤·박소현(2011). 기부지역 선택행동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사회복지정책*. 38(3): 221-253.
- 국가통계포털 : <http://kosis.co.kr>
- 국세청(2021), 2020년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 국중호 · 염명배(2018). 일본 고향납세의 기부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23(2): 73-109.
- 국중호 · 염명배(2021). 일본 고향납세 기부제도의 지방재정 형평화 효과. *한국지방재정논집*. 26(2): 69-99.
- 김동영 외 3인(2016), 고향기부제 도입방안 및 지방재정 유입 효과 분석, 전북연구원 ISSUE BRIEFING 제149호, 전북연구원

- 김홍환(2022). 고향사랑 기부금액 전망과 지방의 대응방향. 고향사랑기부금 시도연구원 연합토론회 자료집.
- 남황우(2017). 후루사토납세제도에 있어 기부의 기점과 종점에 대한 연구, 지방재정논집 제22권 제2호, pp. 191-225
- 남황우(2017). 후루사토납세제도에 있어 기부의 기점과 종점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22(2): 191-225.
- 류영진(2020). 일본의 관계인구 개념의 등장과 의미, 그리고 비판적 검토, 지역사회학, 21(1): 5-30.
- 신동철(2022). 경남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시행방안 연구. 경남연구원 연구보고서.
- 신두섭·하혜수(2017). 고향발전기부금 제도의 도입 가능성 연구. 지방정부연구. 21(1): 437-469.
- 신승근(2018). 지역특성을 살린 충남형 고향사랑 기부제도 활용모델 개발. 충남연구원 전략과제 보고서.
- 심재승(2017). 고향사랑기부제도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활성화의 실행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9(3): 111-124.
- 안소연 외(2022). 인구감소시대, 체류인구를 활용한 지역유형별 대응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보고서.
- 염명배(2010). 일본 후루사토납세 제도에 대한 논의와 한국형 고향세 도입 가능성 검토. 한국지방재정논집. 15(3): 71-111.
- 염명배(2017). 우리나라의 고향세제도 법제화 논의와 쟁점사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22(3): 27-77.
- 유학열(2021). 고향사랑기부제 국외사례 연구. 충남연구원 현안과제보고서.
- 이병기 외(2017). 고향사랑 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분석 및 제도화 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현우 외(2020). 자치분권시대의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 임정빈·김성찬·홍근석(2017).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도입효과 분석: 재원확충과 재정격차 완화 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제27권 제4호, pp. 69-101
- 임정빈·김성찬·홍근석(2017).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도입효과 분석. 현대사회와 행정. 27(4): 69-101.

- 조선주(2008). 개인의 자원봉사행위에 관한 분석. 한국비영리연구. 5(1): 73-99.
- 조재욱(2019). 지역균형발전의 정치경제: 고향세 도입의 실효성 시탐과 비판적 검토. 지역산업연구. 42(3): 33-60.
- 통계청(2022), 2021년 사회조사, 통계청
- 행정안전부(2020),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2022), 고향사랑기부제 지자체 시행 준비 설명회 자료, 행정안전부
- 홍근석·염명배(2019), 일본 고향납세제도 현황과 우리나라 적용방안, 지방행정연구원
- 홍근석·염명배·신두섭(2019). 기부자 인식조사에 기반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성공적 도입 방안 연구. 지방행정연구. 33(4): 189-222.
- 홍근석·임정빈(2019), 조건부가치추정법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효과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23권 제3호, pp. 1-31
- 홍근석·임정빈(2019). 조건부가치추정법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효과 분석.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3(3): 1-31

부 록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약칭: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89호, 2021. 10. 19., 제정]

행정안전부(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05

제1조(목적)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부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지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 정보통신망의 이용,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 줄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경우

2. 제7조를 위반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제한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기부의 제한) ① 누구든지 타인의 명이나 가명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업무·고용, 계약이나 처분 등에 의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부·모금 강요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그 직원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매체를 통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할 수 없다.

1. 개별적인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를 말한다)의 이용
2. 호별 방문
3.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인 모임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 하는 방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의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신용카드·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자
3. 제7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자
4.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자
5.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답례품을 제공한 자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 신고 또는 고발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제도의 연구 및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분석, 연구 등을 통하여 기부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및 답례품 제공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결과 공개의무)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과 고향사랑 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하고, 교부된 영수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은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라 모금 주체에서 제외된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
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4.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경우
5. 제7조를 위반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
- 7.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답례품을 제공한 경우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반환하는 기부금은 답례품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지도·감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또는 시정권고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시정권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위반사실 공표)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를 제한받은 경우 해당 사실이 있음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벌칙) 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한 공무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8489호, 2021. 10. 19.>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904호, 2022. 9. 13., 제정]

행정안전부(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05

제1조(목적) 이 영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제한기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제한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용도
 3.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절차 및 방법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홍보매체를 말한다.
- ③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참석·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방법을 말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서식의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받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지 여부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3.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의 연간 고향사랑 기부금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4.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답례품을 제공받을지 여부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 법령에 위반된 사실이 없을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에게 그 기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체계적인 접수·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표준서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입장권

3. 자산가치가 높은 고가의 스포츠용품·전자제품 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4.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 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5
 2.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3
 3.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2
 4.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200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10

제8조(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장은 매년 9월 말일까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년도 운영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제9조(고향사랑 기부금 접수·운용 현황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
2.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내역
3. 답례품의 제공 현황 및 비용 지출
4.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자료에 대해 일반인의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반사실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가 제한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표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표제
 -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 다. 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 라. 모금·접수 제한기간
 - 마.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 제한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표 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 가. 관보 또는 공보
 - 나.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 다. 정보시스템
 -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3. 공표 기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4. 공표 시기: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가 제한된 날부터 30일 이내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업무가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
 3. 법 제9조에 따른 답례품의 제공
 4.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5.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32904호, 2022. 9. 13.>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남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을 위한 도민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에서 출연한 공공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전략연구로 “충남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운영 방안 연구” 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고향사랑기부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정책 방안의 인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설문의 결과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이 유지될 것이며,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아래의 질문에 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결과는 충남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I. 기본 항목

1. 거주하는 지역을 적어주세요

()시·군

2. 귀하의 성별을 적어주세요

① 남성 ② 여성

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대학교 졸업 ④ 대학원 졸업

4.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이상

5.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농업, 임업, 어업 ② 제조 건설업 ③ 도소매 및 서비스업 ④ 관광업
⑤ 운수통신업 ⑥ 전문직 ⑦ 사무직 ⑧ 전업주부 ⑨ 학생
⑩ 교육(교수, 교사) ⑪ 기타

6. 귀하의 월평균 소득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100만원대 미만 ② 200만원대 ③ 300만원대 ④ 400만원대
⑤ 500만원대 ⑥ 600만원대 ⑦ 700만원대 이상

5. 귀하는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되면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실 것입니까?

- ① 충청남도 제외한 타 광역자치단체 ② 충청남도 소속 시·군
- ③ 타 광역자치단체의 소속 시·군

6. 귀하는 제도 시행후 만약 충청남도내 시군에 기부하신다면 어떤 시군에 기부 하시겠습니까?

- ① 공주시 ② 천안시 ③ 아산시 ④ 서산시 ⑤ 논산시 ⑥ 계룡시
- ⑦ 당진시 ⑧ 보령시 ⑨ 금산군 ⑩ 청양군 ⑪ 홍성군 ⑫ 예산군
- ⑬ 부여군 ⑭ 서천군 ⑮ 태안군

※ 본 제도는 귀하가 거주하는(주민등록지) 지역을 제외한 곳에만 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3. 귀하는 기부자들의 지속적 기부참여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핵심 요인	불필요	← 보통 →		매우필요
기부금 내역의 적극 투명 공개	①	②	③	④
기부금의 지역 현안문제 적극 활용	①	②	③	④
기부자 대상 지역 소식지와 정보제공	①	②	③	④
기부자 대상 지역초청과 교류행사	①	②	③	④
기부자 대상 양질의 답례품 제공	①	②	③	④
기부 확대 위한 정부의 적극 홍보	①	②	③	④
기타 ()	①	②	③	④

4. 귀하는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2개 복수 선택)

- ①지역특산품(농어업 생산, 가공품) ②지역특산품(축산업 생산, 가공품)
- ③지역 숙박업체 숙박권 ④지역 축제 및 문화행사, 이벤트 초대권
- ⑤지역 테마파크 및 문화시설 이용권 ⑥지역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
- ⑦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감사장, 감사패 ⑧지역 중심지 시설에 기부자 명패부착
- ⑨기타 ()

5. 충남에서 고향사랑기부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한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집 필 자 ■

연구책임 전지훈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
연구진 임다정 충남연구원 연구원

전략연구 2022-07 · 충남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운영방안

글쓴이 · 전지훈 · 임다정

발행자 · 유동훈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22년 12월 31일 / 발행 · 2022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14-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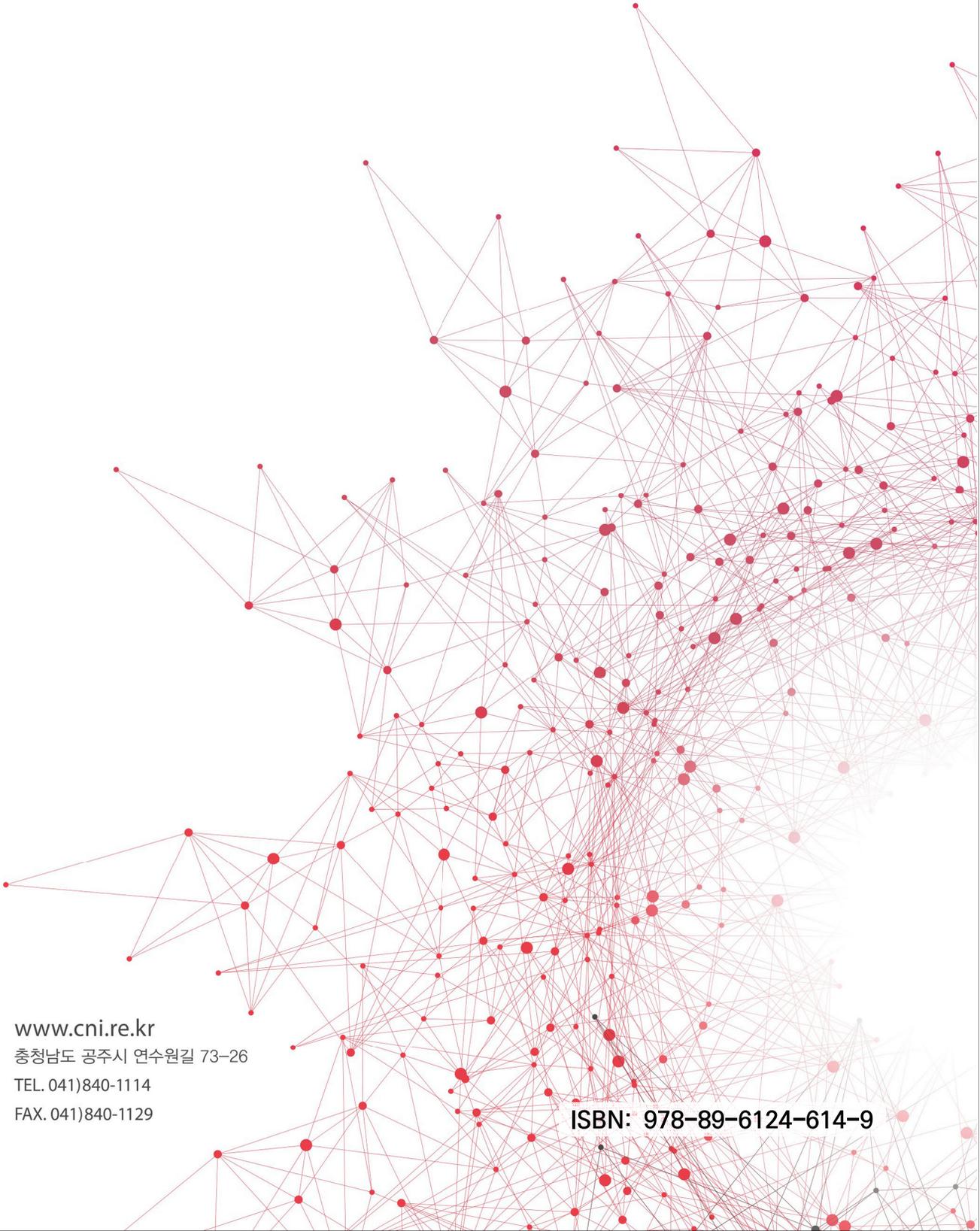
전화 ·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129

ISBN · 978-89-6124-614-9

<http://www.cni.re.kr>

© 2022.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www.cni.re.kr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TEL. 041)840-1114

FAX. 041)840-1129

ISBN: 978-89-6124-614-9